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배윤진·이정림·김아름·이혜민·양성은·장혜림·차유림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저 자

배윤진, 이정림, 김아름, 이혜민, 양성은, 장혜림, 차유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양 성 은 (인하대학교 교수)

위탁연구진

연구책임자 장 혜 림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차 유 림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2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9-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은 부모의 양육 및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우리나라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돌봄이나 교육에 제약이 따르는 재난상황의 경우 자녀 돌봄에 취약한 환경의 가정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돌봄에 취약하거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녀양육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기획된 연속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친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므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조사에 협조해주신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님들과 실무자 분들 그리고 위탁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위해 귀한 의견 주시고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셨던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아동권리보장원, 라온제나(위탁아동모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를 위한 지침서인 ‘위탁부모 힘 키우기’ 개발과 위탁부모 면담자료 분석을 맡아주신 원외 연구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8
4. 연구범위	24
II.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29
1. 가정위탁 지원 사업 및 정책동향	31
2. 가정위탁 현황	44
3. 위탁가정 양육 및 아동발달 특성	63
III.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75
1. 일반적 특성	77
2.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80
3.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90
4.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106
5. 소결	121
IV.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위탁부모의 경험 및 요구 분석	125
1. 실증적 분석을 위한 위탁가정 부모 심층면담 운영	127
2.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132
3. 소결	149

V.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	151
1.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153
2.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및 과정	154
3. 육아지침서 구성	167
V.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173
2.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177
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183
참고문헌	195
Abstract	205
부록	209
부록 1.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영유아기/초등학령기 이상)	209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추가 표	244
부록 3. 위탁부모 면담 질문지	253
부록 4. 정책토론회 초청장	257



표 목차

〈표 Ⅰ-1-1〉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 연도별 연구주제	16
〈표 Ⅰ-3-1〉 위탁부모 설문조사 참여자 수	19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20
〈표 Ⅰ-3-3〉 위탁부모 면담 참여자 수	21
〈표 Ⅰ-3-4〉 위탁부모 대상 FGI 내용(안)	21
〈표 Ⅰ-3-5〉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개요	22
〈표 Ⅰ-3-6〉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내용	22
〈표 Ⅰ-3-7〉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23
〈표 Ⅰ-3-8〉 육아지침서 위탁연구진과의 정기회의 개요	24
〈표 Ⅰ-4-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역량 정의	26
〈표 Ⅱ-1-1〉 가정위탁 지원 사업	32
〈표 Ⅱ-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45
〈표 Ⅱ-2-2〉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47
〈표 Ⅱ-2-3〉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48
〈표 Ⅱ-2-4〉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기간(2021. 12. 31 기준)	50
〈표 Ⅱ-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51
〈표 Ⅱ-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52
〈표 Ⅱ-2-7〉 연도별 위탁아동 수(2021. 12. 31 기준)	53
〈표 Ⅱ-2-8〉 위탁아동 세부 현황(2021. 12. 31 기준)	54
〈표 Ⅱ-2-9〉 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2021. 12. 31 기준)	55
〈표 Ⅱ-2-10〉 위탁아동 장애 여부(2021. 12. 31 기준)	55
〈표 Ⅱ-2-11〉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56
〈표 Ⅱ-2-12〉 위탁 전 학대 경험 여부(2021. 12. 31 기준)	57
〈표 Ⅱ-2-13〉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58
〈표 Ⅱ-2-14〉 위탁부모 직업(2021. 12. 31 기준)	59
〈표 Ⅱ-2-15〉 위탁부모 학력(2021. 12. 31 기준)	60
〈표 Ⅱ-2-16〉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61
〈표 Ⅲ-1-1〉 조사 대상 위탁가정 기본 특성	78
〈표 Ⅲ-1-2〉 조사 대상 위탁가정 부모 기본 특성	79
〈표 Ⅲ-1-3〉 조사 대상 위탁가정 내 전체 자녀 기본 특성	79

〈표 Ⅲ-2-1〉 위탁부모(주양육자)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81
〈표 Ⅲ-2-2〉 위탁부모(주양육자) 주변 도움(사회적 지지)	81
〈표 Ⅲ-2-3〉 위탁부모(주양육자) 현재 건강상태	82
〈표 Ⅲ-2-4〉 위탁아동 발달 정도 1	84
〈표 Ⅲ-2-5〉 위탁아동 발달 정도 2	84
〈표 Ⅲ-2-6〉 위탁아동 건강상태 및 행복감	86
〈표 Ⅲ-2-7〉 위탁아동 적응 어려움	87
〈표 Ⅲ-2-8〉 위탁 이후 적응까지 걸린 기간	87
〈표 Ⅲ-2-9〉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	88
〈표 Ⅲ-2-10〉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	89
〈표 Ⅲ-3-1〉 영유아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91
〈표 Ⅲ-3-2〉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91
〈표 Ⅲ-3-3〉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92
〈표 Ⅲ-3-4〉 위탁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	93
〈표 Ⅲ-3-5〉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전체	94
〈표 Ⅲ-3-6〉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친인척, 비혈연 위탁가정	95
〈표 Ⅲ-3-7〉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	96
〈표 Ⅲ-3-8〉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순위	97
〈표 Ⅲ-3-9〉 위탁아동의 주양육자 및 보조양육자	98
〈표 Ⅲ-3-10〉 위탁아동의 보조양육자	98
〈표 Ⅲ-3-11〉 주중~주말 하루 기준 위탁아동 혼자 있거나 같이 있는 시간	99
〈표 Ⅲ-3-12〉 가족의 응집성 및 유연성	100
〈표 Ⅲ-3-13〉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01
〈표 Ⅲ-3-14〉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02
〈표 Ⅲ-3-15〉 (위탁아동이 친부모 근황에 대해 알고 연락하는 경우)최근 1년간 연락/ 만남 여부	103
〈표 Ⅲ-3-16〉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실제로 만나는 경우)만남 시 하는 일	103
〈표 Ⅲ-3-17〉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남 시 지원 방법	104
〈표 Ⅲ-3-18〉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105
〈표 Ⅲ-4-1〉 부모교육-실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107
〈표 Ⅲ-4-2〉 부모교육-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의 적정 여부	107
〈표 Ⅲ-4-3〉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108
〈표 Ⅲ-4-4〉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108

〈표 Ⅲ-4-5〉 위탁아동 양육 시 도움 받는 곳	110
〈표 Ⅲ-4-6〉 위탁아동 양육 시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 여부	111
〈표 Ⅲ-4-7〉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	114
〈표 Ⅲ-4-8〉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준비 여부	116
〈표 Ⅲ-4-9〉 법정대리인 선임 시 소요 기간	116
〈표 Ⅲ-4-10〉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권한 필요성	117
〈표 Ⅲ-4-11〉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순위	118
〈표 Ⅲ-4-12〉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2순위	119
〈표 Ⅲ-4-13〉 위탁아동 보호 시 입양 고려 유무	120
〈표 Ⅳ-1-1〉 실제 위탁부모 FGI 참여자 명단	128
〈표 Ⅳ-1-2〉 면담 대상 위탁가정의 가구 특성	129
〈표 Ⅳ-1-3〉 면담 대상 위탁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0
〈표 Ⅳ-1-4〉 심층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	131
〈표 Ⅴ-2-1〉 육아지침서에 담긴 주요 개념	158
〈표 Ⅴ-2-2〉 국내 위탁부모교육 내용	158
〈표 Ⅴ-2-3〉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주요 내용	160
〈표 Ⅴ-2-4〉 전문가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 주요 내용	161
〈표 Ⅴ-2-5〉 국외 위탁부모교육 내용	161
〈표 Ⅴ-3-1〉 육아지침서 목차	168
〈표 Ⅵ-3-1〉 위탁부모(가정위탁보호자) 정의규정 및 자격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184
〈표 Ⅵ-3-2〉 위탁부모 교육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86
〈표 Ⅵ-3-3〉 가정위탁 시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9
〈표 Ⅵ-3-4〉 면접교섭 지원방법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91
〈표 Ⅵ-3-5〉 위탁부모의 후견인 권한 강화 관련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192



그림 목차

[그림 I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그림 II -1-1] 가정위탁 유형	33
[그림 II -1-2] 일반가정위탁(조부모·친인척) 절차	37
[그림 II -1-3]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절차	38
[그림 II -2-1]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45
[그림 II -2-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46
[그림 II -2-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47
[그림 II -2-4]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49
[그림 II -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51
[그림 II -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52
[그림 II -2-7] 연도별 위탁아동 수	53
[그림 II -2-8]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57
[그림 II -2-9]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59
[그림 II -2-10]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62
[그림 III -3-1]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 98	
[그림 III -4-1] 부모교육-최근 참여한 교육의 내용	106
[그림 III -4-2]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109
[그림 III -4-3]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110
[그림 III -4-4]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인지 여부	112
[그림 III -4-5]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	112
[그림 III -4-6]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	113
[그림 III -4-7]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에 대한 만족도	114
[그림 III -4-8]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115
[그림 III -4-9]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119
[그림 IV -2-1] 위탁가정 부모의 심층면담 결과	132
[그림 V -2-1] Durrant(2016)의 긍정적 훈육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근거 ...	155
[그림 V -2-2]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166
[그림 V -3-1] 육아지침서 구성	167
[그림 V -3-2] 육아지침서 내용 예시	169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위탁부모-아동 관계별 위탁유형 및 위탁보호 사유 비율	245
〈부록 표 2〉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 양육보조금 지원	245
〈부록 표 3〉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2) 전문아동 보호비	246
〈부록 표 4〉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3) 일시위탁 보호비	246
〈부록 표 5〉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4) 아동용품 구입비	247
〈부록 표 6〉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247
〈부록 표 7〉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48
〈부록 표 8〉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7)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248
〈부록 표 9〉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8)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249
〈부록 표 10〉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9)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250
〈부록 표 11〉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0)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250
〈부록 표 12〉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1) 자립수당	251
〈부록 표 13〉 위탁부모 대상 모임·행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252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지침서 개발을 통해 돌봄 취약·위기가정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는 총 5개년도의 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 2022년도 연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함.
- 위탁아동은 친부모(원가정)로부터의 분리와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양육자에 의한 좀 더 세심한 이해와 양육을 필요로 함.
 - 위탁가정에서의 긍정적 양육환경은 위탁아동의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이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처럼 위탁가정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위탁부모도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임.
- 가정위탁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을 위해 첫째, 위탁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실제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정 지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둘째,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을 기르고 고유한 이슈를 가진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 국내 가정위탁 현황 및 위탁가정 부모와 아동의 특징을 알아봄.
 -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등에서의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과 아동발달 특성을 분석함.
- ☐ 가정위탁 관련 제도 및 법 고찰을 통해 그 제도와 지원 사업의 특징 및 정책동향을 파악함.
- ☐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
 - 양육역량과 관련한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 가족관계, 가구 특성,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등을 분석함.
- ☐ 연령별 양육의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이기에 겪게 되는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여 위탁부모 대상 육아지침서를 개발함.
- ☐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다.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 조사연구
 - 위탁부모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내용: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 가족관계,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등
 - 비혈연 위탁부모 3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 면담 내용: 위탁 결정 과정 및 예비위탁부모교육 경험, 위탁 후 양육 경험, 위탁가정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 ☐ 가정위탁 관계자 간담회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4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음.
 - 위탁(종료)아동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함.

- 육아지침서 검토를 위한 위탁부모 간담회를 개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진과의 정기회의
- 정책토론회
 -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개선 및 위탁가정 지원 방안을 논의함.

라. 연구범위

- 위탁아동 연령 및 위탁유형과 관련된 연구대상 범위
 - 영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함.
 - 2021년 6월 이후의 분류에 따라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 포함),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하며, 조사연구에서는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는 위탁부모를 다수 포함함.
- 4차년도에는 ‘조손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이 연구주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본 연구의 초점은 위탁아동과 양육으로 설정함.
- 양육역량은 ① 위탁아동의 발달특성과 요구, 위탁부모의 역할을 알고, ②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양육행동, 태도를 지니며, ③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기술(의사소통, 훈육방법 등)을 가지고, ④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2.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가. 가정위탁 지원 사업 및 정책동향

-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전문가가정위탁은 자격요건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 혹은 위탁부모 경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원가정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나. 가정위탁 현황

- 2021년도 가정위탁 현황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총 4,521명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가정보호아동 수는 각각 1,254명이었음.
- 2021년도 위탁가정 수는 총 7,830세대이고, 이들 중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은 6,931세대(88.5%), 일반가정위탁은 775세대(9.9%), 전문 66세대(0.8%), 일시 29세대(0.4%), 기타 29세대(0.4%)로 나타남.
- 위탁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68.7%로 위탁부모의 고령화를 보여줌.
- 위탁아동은 총 9,541명이었으며, 전체 위탁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6년 정도임. 위탁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은 351명(3.7%)이며, 형제자매가 같이 의뢰되었지만 분리되어 배치된 경우는 272명(2.9%)이었음.

다. 위탁가정 양육 및 아동발달 특성

- 가정외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위탁아동 성별 및 장애여부에 따른 심리적 적응 및 발달 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위탁유형보다는 주양육자의 양육에 관한 지식 및 양육 기간 등이 위탁아동의 위탁가정 내 적응과 발달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탁가정의 긍정적인 양육환경과 위탁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 등이 아동의 문제행동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함.

3.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가.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 위탁부모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위탁아동 연령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게 보고하였음.
-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애착은 3.77점, 신체발달 및 성장 2.28점, 언어발달 2.27점, 인지발달 2.31, 사회·정서발달 2.30점이었음(이상 4점 척도). 위탁아동의 건강상태는 평균 4.15점으로 대체로 건강이 좋은 편으로 응답하였음(5점 척도).
- 위탁아동이 영아일 때 적응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 연령일수록 위탁가정에 적응이 빨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음.

나.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 영유아 위탁부모의 경우 양육역량은 5점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고하였으나, 양육효능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영유아기 위탁부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유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보고하였음.
-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유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다른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보다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조부모는 다른 위탁부모들에 비해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
-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부모는 ‘위탁보호 종료 후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을,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음.

-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1.6%),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32.5%가 응답하였음.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친부모와 연락을 하는 경우보다 친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음.
- 특히 영아인 경우에는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위탁아동의 친부모 만남 시 지원 방법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24.7%,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23.9%,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7.3% 순이었음.

다.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25.7%),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20.9%), 자녀양육 방법(16.4%),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녀양육 방법(28.3%),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21.0%),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12.1%)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 현행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에 대해 평균 3.66점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4점 척도).
-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3.29점), 심리치료비 지원(3.27점), 아동용품 구입비(3.24점), 상해보험료 지원(3.23점), 생계비 지원(3.21점)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자조모임 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모두 3.1점 이상으로 도움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음(4점 척도).
- 그 중 위탁가정 대상 행사(3.51점), 자녀양육정보 교류 모임(3.46점),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3.45점), 아동상담·심리치료(3.44점) 등의 순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음.
- 현재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9.98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음.

-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79.9%가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권한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45.3%),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33.5%) 등이 있었음.
- 위탁아동 보호 중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음 35.9%,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32.0%,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15.7%,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음 13.9% 순으로 응답하였음.

4.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위탁부모의 경험 및 요구 분석

가. 실증적 분석을 위한 위탁가정 부모 심층면담 운영

- 가정위탁 부모 33명(위탁모 30명, 위탁부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 가정위탁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함.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은 모두 위탁아동과 비혈연 관계이며, 일부는 전문가정위탁 유형에 속함.
- 연구자가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 또는 2~4인의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는 프레임워크분석법(framework analysis method)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음.

나.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 위탁 결정 및 준비과정
 - 위탁 결정의 동기로는 직업, 입양 경험, 아동 관련 사건 등이 있었으며, 위탁부모들은 위탁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및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함.
 -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에서 기존 위탁가정의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됨. 한편 현행 양성교육은 위탁아동의 연령에 맞춘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위탁아동에 대한 개별 정보가 부족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위탁 후 자녀양육

-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주요한 요인은 위탁 시점의 아동 연령임.
- 위탁 후에는 위탁아동 뿐 아니라 위탁가정 구성원들도 상호 적응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점차 안정이 되면 가족원들이 위탁아동을 구심점으로 응집하고,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도 증가하게 됨.
- 위탁아동 원가족과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양가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

□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요구

- 위탁부모의 법적 역할수행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큼.
-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 부모 대부분은 행정 실무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토로 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를 표시함.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나 급여 처리의 비밀관성이나 담당자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였음.
- 양육보조금 및 관련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며, 각 보조금 지급 기준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불안정성이 높은 편임.
-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의 양성교육과 이후 보수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를 구체화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양육 지식 및 기술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특히 위탁시점의 아동 연령에 따라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과 위탁가정이 대비해야 할 준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해야 함.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탁부모를 위한 자조모임의 활성화, 전문적 양육코칭 지원도 요구됨.

5.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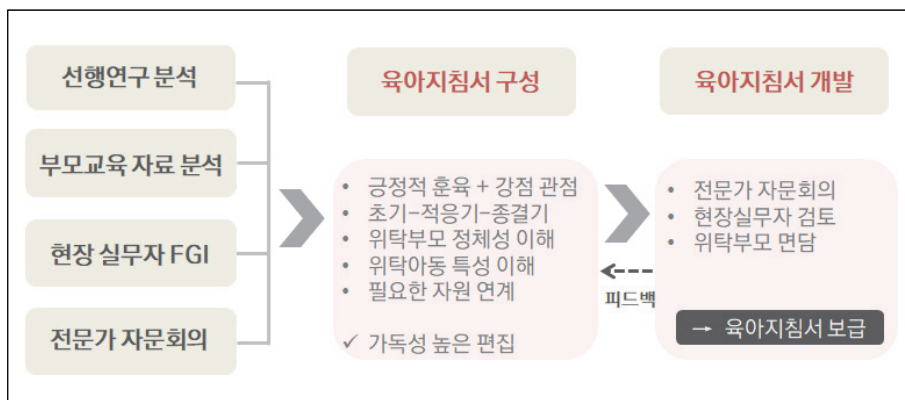
가.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으로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위탁부모 중 1인만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는 규정은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부모의 권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정기 교육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만나고 헤어지는 위탁의 전 과정에서 경험할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위탁부모로서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및 과정

- 육아지침서의 이론적 근거는 긍정적 훈육, 강점 관점에 기초함.
- 육아지침서 개발의 배경이 되는 위탁부모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위탁부모 지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음.
- 육아지침서의 개발은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짐.

[그림 1]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다. 육아지침서 구성

-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 힘 키우기’라는 제목 하에 가정위탁의 과정을 4계절에 비유하여 초기(봄) - 적응기(여름과 가을) - 종결기(겨울)로 구성하였음.
- ‘초기’에는 ‘위탁부모 되어가기’, ‘위탁아동과의 만남’을 다루었음.
- ‘적응기’에는 위탁아동의 특성이나 문제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양육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넘어진 아동과 같이 일어서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면’의 내용으로 구성함.
- ‘종결기’에는 ‘헤어짐을 준비하기’, ‘네가 낳고 싶을 때를 위해’라는 소제목 하에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음.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
 - 사례 관리를 통해 위탁가정을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집단상담, 심리치료, 자조모임, 가족여행(휴가) 등을 지원해야 함. 특히 청소년기 위탁가정, 저소득 가구, 고령의 조부모 위탁가정인 경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함.
-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 위탁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위탁부모-아동 관계나 위탁부모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방법을 다르게 마련한다면 양육역량 강화에 효과적일 것임.
-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 예비위탁부모교육인지, 보수교육인지에 따라,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혈연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달라짐. 필수교육내용과 선택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내용체계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위탁부모의 특성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모임을 형성 하도록 하며, 양육정보를 얻고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동시에 자조모임은 위탁부모가 폐쇄적인 가정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므로 관리감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음.
- 위탁부모뿐만 아니라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조모임도 필요함.

□ 물리적 환경 지원

- 가정환경조사 시 아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한 후 아동용품 구입비로 연결하여 지원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음.

□ 육아지침서 활용

- 위탁부모 보수교육 교재로 활용 가능함. 특히 초기적응팀, 영유아팀, 초등학교팀, 청소년기팀 등으로 집단 구성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루면 효과적임.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마련 시 육아지침서의 목차를 참고할 수 있으며, 위탁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활용도 가능함.
- 추후 영상이나 카드뉴스 등 또 다른 형태로 재보급할 필요가 있음.

나.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육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위탁부모와 아동이 동거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사용이 제한되어 왔음.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 보호대상아동의 친부모와의 분리 경험, 주양육자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아동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줄 수 있음. 위탁아동이면 누구나 심리치료에 접근하고 필요한 만큼 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확대를 제안함.

- ☐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 ☐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력
 - 한부모 등 원가정 회복이 가능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컨트롤타워)와 가족 센터 등의 또 다른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 아동의 위탁이 단기적인 경우 해당 아동의 원가정 지원과 빠른 복귀, 원가정과 의 면접교섭지원이 중요하지만, 장기화 될 예정이라면 이보다는 해당 아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위탁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 위탁아동의 알 권리와 의사도 존중하여야 하며, 종결 시 원가정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다가, 서서히 이동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 관리·감독 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한 가족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 행정적 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 ☐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다.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 ☐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 ☐ 장기 위탁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 동거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육아휴직 대상자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입양절차 간소화도 고려해볼 수 있음.
- ☐ 친부모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 ☐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0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8. 28.).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고, 아동기의 낮은 행복감은 아동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하락시키며 나아가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사회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8. 28.).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은 부모의 양육 및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양육자의 영향력이 크며, 어린 시기의 경험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돌봄이나 교육에 제약이 따르는 재난상황에서는 자녀 돌봄에 취약한 환경의 가정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즉,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이 기관에서 가정 내로 이동하면서 주양육자의 여건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돌봄공백과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서도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에 취약하거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지침서 개발을 통해 돌봄취약·위기가정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는 총 5개년도의 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 2022년도 연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도별 연구주제는 <표 I-1-1>과 같다.

〈표 I-1-1〉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 연도별 연구주제

연도	연구주제
1차년도(2022년도)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2차년도(2023년도)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3차년도(2024년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4차년도(2025년도)	조손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5차년도(2026년도)	한부모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주: 연도별 연구주제는 정책 현황이나 연구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8), 보호대상 아동의 29.9%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 등의 가정보호는 시설보호보다 아동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친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받는 아동들은 분리 전 친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학대, 부모의 부재 등 장기간 문제 상황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우울감,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행동적 어려움을 갖는다(정익중·강현아·장혜림·이화조·신지현, 2019: 43). 또한 위탁아동들은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와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김경민·정익중, 2009). 이처럼 위탁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양육자에 의한 좀 더 세심한 이해와 양육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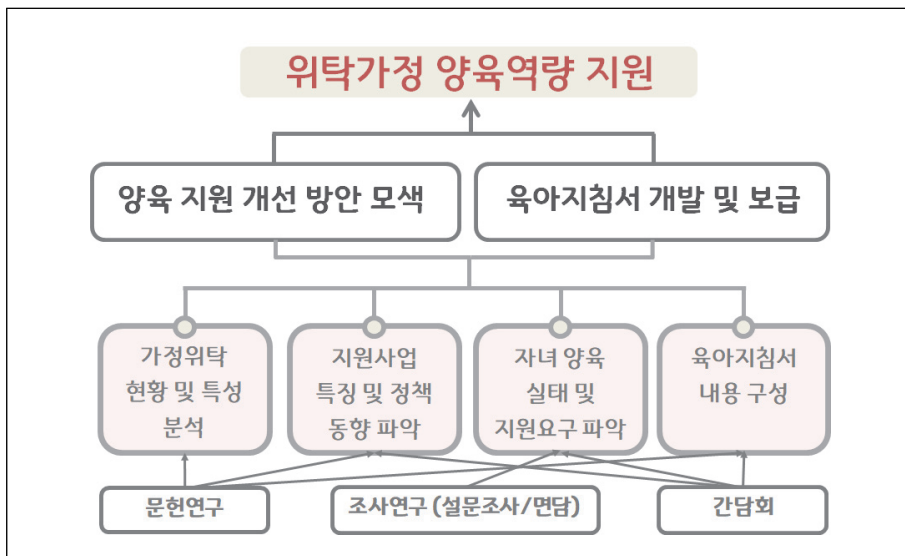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위탁가정에서의 양육환경이 위탁아동의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이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가 위탁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고(최영, 2007), 가정외 보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주양육자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김정화·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우석진, 2014).

이처럼 위탁가정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위탁부모도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김진숙, 2008), 위탁아동의 부적응행

동으로 인해 위탁부모는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다시 위탁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다(박선영·이선희·김태선·김형연·박수연, 2019). 또한 위탁부모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게 될 경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갖게 되며, 이에 일부 위탁부모는 예상 밖의 양육 어려움으로 인해 위탁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 2012). 특히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을 위하여 첫째, 위탁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실제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정 지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을 기르고 고유한 이슈를 가진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탁가정의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I-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내용

첫째, 국내 가정위탁 현황 및 위탁가정 부모와 아동의 특징을 알아본다.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가정위탁 유형별 비율, 위탁보호 사유, 위탁가정 참여 동기, 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선행연구나 관련 자료에서 나타난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과 아동발달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가정위탁 관련 제도 및 법 고찰을 통해 그 제도와 지원 사업의 특징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의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 가족관계, 가구 특성,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등을 분석한다.

넷째, 위탁부모 대상 육아지침서를 개발한다. 지침서에는 연령별 양육의 주요 이슈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이기에 겪게 되는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가정위탁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위탁연구진으로 참여한다.

다섯째,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가정위탁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표한 가정위탁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둘째, 위탁부모의 양육 및 아동의 발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고찰한다.

셋째, 일반가정위탁 및 전문가정위탁의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넷째, 가정위탁 제도와 지원사업의 특징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위탁 지원 제도 및 법령을 고찰한다.

나. 조사연구

1) 위탁부모 설문조사¹⁾

위탁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위탁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대상을 모집한 후, 위탁부모가 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의 담당자가 위탁가정에 방문하였을 때 설문지를 배부·수집하였다.²⁾ 위탁부모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임을 고려하여 서면 질문지를 활용한 지필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녀 연령별 양육경험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위탁부모부터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위탁부모까지 포괄하였다. 가정위탁 현황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60% 이상이 조부모이고 위탁아동 중에서는 중학생 이상의 연령이 과반수이나(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6, 81), 본 연구에서는 표집 시 그 비율을 따르지 않고 <표 I-3-1>과 같이 임의 할당하였다. 위탁가정이나 부모의 유형보다는 아동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비교·분석하고, 전문가정위탁을 포함한 비혈연 위탁부모의 양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다.

<표 I-3-1> 위탁부모 설문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자녀연령 위탁/부모유형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일반 (일시포함)	전문	45	(45)	43	(45)	55	(45)	43	(45)
	비혈연	5	(15)	13	(15)	10	(15)	12	(15)
	친인척	7	(15)	19	(15)	14	(15)	17	(15)
	조부모	57	(75)	75	(75)	79	(75)	72	(75)
합계		57	(75)	75	(75)	79	(75)	72	(75)

주: 1)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되어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영유아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가정위탁의 비혈연 부모와 함께 할당함.

2) 괄호 안은 조사 목표 수임.

조사 내용은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 가족관계,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등이다 (표 I-3-2 참조).

1) 위탁부모 설문조사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음(KICCEIRB-2022-제09호).

2) 조사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센터의 담당자가 위탁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고, 조사기관에서 최종 수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우편으로 회수하기도 하였음.

〈표 I-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인구학적 특성 외	부모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종교 여부, 위탁경험, 위탁유형,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성별, 형제순위, 장애유무, 위탁결정 시 연령(위탁기간), 위탁보호사유, 이용 기관(학교 등), 위탁가정의 가구구성원(자녀 수), 가구소득
부모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등
아동 특성	부모-자녀 애착*, 발달정도, 건강상태, 행복도, 적응 어려움** 및 적응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사유,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
자녀양육	양육역량(상호작용, 효능감, 정서적역량, 인지적역량)***,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부담, 양육에서의 어려움 및 기쁨, 위탁부모 역할, 주양육자, 도움인력, 돌봄시간 등
가족관계	가족상호작용, 친부모와의 관계, 친부모에 대한 위탁 아동의 인지여부, 교류 정도, 면접교섭 애로점,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도움 정도, 원하거나 필요한 교육내용, 예비위탁 부모 교육 시간의 적절도, 자녀양육 정보 얻는 방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만족도, 자조모임, 법정대리인 권한, 입양 의향 등

주: 조사지는 영유아기 부모용과 초등학령기 이상 부모용으로 구분함.

* 부모-자녀 애착: 영유아기 부모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 적응 어려움: 영유아기는 기관 적응, 분리불안, 초등학령기는 학교 적응, 학습부담 관련 질문 포함함.

*** 양육역량: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이상 부모용 질문 내용이 다름.

**** 부모-자녀 의사소통: 초등학령기 이상 부모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위탁부모 면담³⁾

위탁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위탁가정의 자녀양육 경험과 애로사항, 부모교육 및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이며, 양육 중인 위탁아동 연령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 섭외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센터 및 위탁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 또는 2~4인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프레임워크분석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가정위탁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아동 특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면, 면담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라 위탁부모 고유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를 깊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영아, 장애아동 등을 보호양육하면서 양육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전문가정위탁부모를 비롯한 비현연 위탁부모를 중심으로 대상을 모집하였다.⁴⁾

3) 위탁부모 면담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음(KICCEIRB-2022-제09호).

4) 연구대상과 관련된 사항은 I 장 4절 연구의 범위에서도 밝히고 있음.

〈표 I-3-3〉 위탁부모 면담 참여자 수

단위: 명

위탁유형/아동특성	자녀연령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영아 학대피해 장애/경제선지능						
전문+일반 (일시포함)		11	(10)	2	(10)	1	-
일반 (일시포함)	그 외 아동	6	(10)	10	(10)	3	(10)

주: 1) 위탁아동의 특성으로는 전문가정위탁의 범위에 속하나 아직 국비 지원 대상(전문가정위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일반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보다는 위탁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모집하였음.
2) 괄호 안은 면담 목표 수임.

면담 내용은 위탁 결정 과정 및 예비위탁부모교육 경험, 위탁 후 자녀양육경험, 위탁가정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I-3-4〉와 같다.

〈표 I-3-4〉 위탁부모 대상 FGI 내용

구분	내용
위탁 결정과 준비	위탁 동기 및 결정 과정, 부모교육 및 상담 경험 (비혈연) 양육을 위해 아동에 대해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등
위탁 후 자녀양육	적응과정, 양육경험, 위탁 후 가정의 변화, 친부모와의 관계 등
위탁가정 양육 지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인구학적 특성 외 (질문지 기입)	부모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종교 유무, 위탁경험, 위탁유형, 아동과의 관계, 가구구성원(자녀 수),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 성별, 형제순위, 장애유무, 위탁 시 연령(위탁기간), 이용 기관(학교 등)

다. 가정위탁 관계자 간담회

1) 가정위탁센터 종사자 면담

가정위탁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실태와 위탁가정의 양육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별 3~4인이 참석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표 I-3-5 참고).

〈표 I-3-5〉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개요

차수	일자	소속 기관	참석자 직함	차수	일자	소속 기관	참석자 직함
1차	5.31(화), 10시	A지역	사업팀(대리)	3차	6.2(목), 10시	H지역	복지사업2팀(과장)
		B지역	사례지원팀(팀장)			I지역	복지사업팀(팀장)
		C지역	행정지원팀(사무국장)			J지역	관장
2차	5.31(화), 14시	D지역	운영지원팀(부장)	4차	6.2(목), 14시	K지역	복지사업2팀(팀장)
		E지역	관장			L지역	복지사업1팀(팀장)
		F지역	복지사업팀(팀장)			M지역	팀장
		G지역	자립지원팀(팀장)			N지역	관장

FGI 내용은 센터별 가정위탁사업 현황, 위탁가정 지원 요구, 설문조사 및 면담에 대한 자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위탁부모들이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표 I-3-6〉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내용

구분	내용
센터별 가정위탁사업 현황	▶ 위탁가정 지원 현황 - (공통 지원 사업) + 지방이양된 지원 사업 현황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 사례관리(상담) 시 주요 지원
위탁가정 지원 요구	▶ 위탁부모들이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 - 자녀양육에 있어 주요 어려움 - 위탁아동 연령, 위탁부모 연령, 가정위탁 유형 등에 따라 나타나는 어려움 ▶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요구) ▶ 위탁가정을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 시 참고사항
설문조사 및 면담에 대한 자문	▶ 설문조사 방법(안) ▶ 면담 실시(안)

2) 위탁아동대표 ‘라운제나’ 간담회

위탁아동대표 모임이자 가정위탁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는 ‘라운제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2022. 12. 10.), 아동 중심의 정책 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며 정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8명의 위탁(종료)아동과 함께 위탁가정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심리지원, 자조모임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위탁가정 지원의 유용한 점이나 바라는 점 등을 토의하였다.

3) 위탁부모 간담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육아지침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조모임에 참여한 위탁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2022. 12. 12.). 간담회를 통해 육아지침서 초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위탁부모 자조모임 운영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첫째,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내용과 방법,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자문을 듣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가정위탁사업의 현안을 반영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에게 자문하였다.

셋째,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육아지침서의 주요 내용, 개발 형태, 보급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표 I-3-7〉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차수	일자	대상	주제	주요 내용
1차	4.1(금)	학계전문가 2인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 자문 - 육아지침서 방향 및 주요 내용 설정
2차	4.5(화)	학계전문가 3인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 자문 - 육아지침서 방향 및 주요 내용 설정 - 위탁가정 대상 설문 및 면담 관련 자문
3차	4.25(월)	현장전문가 3인	위탁가정 정책동향 및 연구범위	- 위탁가정 관련 정책동향 논의 - 육아지침서 방향 및 주요 내용 설정 - 위탁가정 대상 설문 및 면담 관련 자문
4차	4.27(수)	현장실무자 1인	조사방법	- 위탁가정 관련 세부 특성 논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등 논의 - 위탁가정 대상 설문 및 면담 관련 자문
5차	5.12(목)	학계전문가 1인	질적연구방법 적용	- 위탁가정 대상 면담 및 분석방법 자문
6차	6.30(목)	학계전문가 3인	설문조사 내용	- 설문조사 내용 자문

마.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진과의 정기회의

육아지침서 개발을 위하여 가정위탁 및 부모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진과 위탁연구 계약을 진행하였다. <표 I-3-8>과 같이 위탁연구진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육아지침서 내용 구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 상황을 공유하였다.

<표 I-3-8> 육아지침서 위탁연구진과의 정기회의 개요

차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1차	8.16(화)	육아지침서 개발을 위한 1차 회의	-육아지침서 방향 및 주요 내용 설정
2차	9.16(금)	육아지침서 개발을 위한 2차 회의	-육아지침서 내용 논의 및 진행사항 공유
3차	10.7(월)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의 중간보고	-위탁연구 중간보고 -육아지침서 내용 검토 및 논의
4차	12.15(목)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	-육아지침서 최종본 검토 및 논의

바. 정책토론회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정 국회의원과 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⁵⁾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한 주요 결과와 더불어 양육역량 지원을 위해 개발된 육아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학계·현장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종사자와의 토론을 통해 위탁가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부록 4. 참조).

4. 연구범위

가. 연구대상 범위

1) 위탁아동 연령

본 연구의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영유아기 위탁부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탁부모의 양육경험 전반을 고려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에서 더 확대하여 초등학교령기와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2022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2022. 12. 6.):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특히 아동이 학령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이 시기에 위탁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부모의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과 요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위탁아동이 보호 종료되기까지의 전 연령을 아울러 연구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아동 연령별로 서로 다른 양육의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탁가정의 양육 실재를 균형 있고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육아지침서 개발에 반영하고 위탁가정 양육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가정위탁 유형

과거에는 가정위탁 유형을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해왔으나, 2021년 6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 포함),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유형을 따르며 위탁부모에 따른 구 유형을 강조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가정위탁의 현황 등 개정 이전의 자료를 제시할 때는 구 유형으로 설명한다.

또한 전문가정위탁은 2022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에 그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 등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만큼 양육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는 위탁부모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 4차년도 연구주제와의 차별성

앞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이며, 향후 5차년도까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4차년도에는 ‘조손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이 연구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2020년도 가정위탁 현황에 따르면, 가정위탁의 64%가 대리가정위탁으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81),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즉,

올해 연구대상의 상당수가 조손가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차년도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의 초점을 위탁아동과 양육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위탁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다루기는 하지만 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동 연령, 경험, 발달특성 등의 아동 특성에 초점을 둔다. 즉, 위탁아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가정위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위탁유형의 변화 등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반면 4차년도에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조부모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 연구대상자의 주된 특성, 그리고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육역량 정의

양육역량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역량 정의와 구성요인을 정리하고(표 I-4-1), 본 연구에서의 양육역량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양육역량은 ① 위탁아동의 발달특성과 요구, 위탁부모의 역할을 알고, ②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양육행동, 태도를 지니며, ③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기술(의사소통, 훈육방법 등)을 가지고, ④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표 I-4-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역량 정의

연구자(연구년도)	정의 및 구성요인
권혜잔·전숙영(2015)	- 정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구체적인 양육행동 실천을 의미하는 온정적 행동 - 구성요소: 효능감, 온정적 양육
김경은·한유진(2018)	- 정의: 부모에게 요구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개념 - 구성요소: 상호작용 양육역량(자녀의 의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행동), 인지적 역량(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녀이해 능력), 양육효능감(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있는 정도), 정서적 역량(부모 개인 행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해가는 능력)

연구자(연구년도)	정의 및 구성요인
김경암·황윤세(2020)	- 정의: 자녀 돌봄 능력 외에도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포괄하는 요인 - 구성요소: 부모의 일반적 특성(경제적 지위, 사회인적물리적 네트워크 활용 능력), 부모의 심리적 특성(감정조절능력, 양육자신감 및 양육효능감), 자녀의 발달이해(유아 인지발달, 심리발달, 신체발달 이해), 안정된 물리적 환경(유아 건강관리 유지, 유아 안전제공, 유해자극 차단), 상호작용 및 훈육(문 제행동 수정 및 훈육, 학습지도, 효과적 놀이제공, 생활습관지도)
박성악·도미향(2019)	- 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양육기술과 양육태도 등 다양한 차원이 모두 포함된 개념 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방법, 양육태도, 양육실천 등까지 포함한 개념 - 구성요소: 양육지식(영유아발달, 자녀발달이해 등의 인지적 요인), 양육태도(양육스트레스, 바람직한 양육, 공감적 이해 등 심리적 요인), 양육기술(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율적 행동조절 능력)
이수현·이강아·이재림·김영선·유예진(2018)	- 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 부모의 양육 특성으로 양육 지식과 신념, 행동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 - 구성요소: 자녀의 발달적 특징·육구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 건강한 부모관, 인내심, 긍정적 양육 행동,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적절한 환경 제공
정계숙(2019)	- 정의: 양육과 역량의 합성어로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
정계숙·최은실(2013)	- 정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 및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량을 의미 - 구성요인: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공동체 생활 능력, 자기 성장관리 능력
정미라·차기주·주연진·김민정(2015)	- 정의: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며, 어머니로서의 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지식, 주변 인적·사회적 자원의 적절한 활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양육행동 변인

II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01 가정위탁 지원 사업 및 정책동향

02 가정위탁 현황

03 위탁가정 양육 및 아동발달 특성

II.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1. 가정위탁 지원 사업 및 정책동향

가. 가정위탁 사업의 개요⁶⁾

1) 가정위탁 의미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단,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가 가능하다.

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첫째,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사업이다. 둘째, 일반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사업이다.

2)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아동권리-가정위탁지원: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2&PAGE=2&topTitle=가정위탁지원, 2022. 3. 16. 인출)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a(가정위탁 안내 및 절차: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280&cntntsId=1247>, 2022. 3. 16. 인출)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였음.

양육보조금 지원, 생계비 지원, 보험료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위탁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진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표 II-1-1 참조).

〈표 II-1-1〉 가정위탁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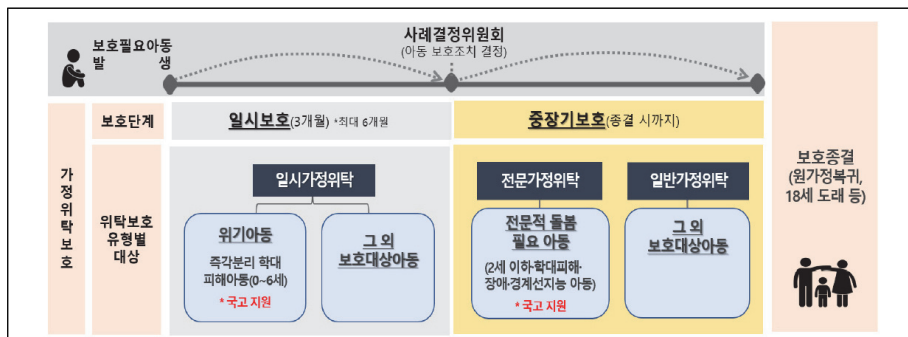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지방이양)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만원 이상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일시위탁보호비(지방이양)	- 일시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으로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최초 1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교통비 월2만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아동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지급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자립수당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원칙/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아동권리-가정위탁지원: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2&PAGE=2&topTitle=가정위탁지원, 2022. 3. 16. 인출); 보건복지부(2022). 아동분야사업 안내[1]. pp. 98-102.

3) 가정위탁의 유형 및 대상아동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전문가정위탁보호, 일반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가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림 II-1-1] 가정위탁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1]. p. 70.

전문가정위탁보호는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제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이 해당한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의 권고를 바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다가 2021년 아동복지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1. 12.).

일반가정위탁보호는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를 의미한다. 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7)

일시가정위탁보호는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를 말하는데, 특히 2021년 3월부터는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7) 가정위탁유형은 일반(비혈연), 대리양육(조부모), 친인척으로 구분해왔으나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 전문, 일반(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모두 포함), 일시가정위탁으로 법제화되었음.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여 일시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②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 66).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6.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자료: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나.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및 관리

1) 위탁가정의 기준

가) 일반가정위탁·일시가정위탁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자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71).

나) 전문가가정위탁

전문위탁가정은 일반위탁가정의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 |
|--|
|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p>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p> <p>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p> |
|--|

자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위의 요건 중 전문위탁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을 말한다. 전문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위탁아동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센터는 전문가가정위탁부모 추천·연계 시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72).

2) 위탁가정 교육⁸⁾⁹⁾

가) 일반/일시가정위탁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선 책정 후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편의적 가정위탁보호 책정은 금지되며,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1명 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위탁부모 교육은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한다.

위탁부모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이 가능하며,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책정 시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의무 및 절차를 안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교육 운영을 관리한다(인원모집, 장소제공 협조 등).

나)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전문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전문(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한다.

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절차¹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절차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의 절차는 [그림 II-1-2]와 같다.

8) 보건복지부(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1]. p. 73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9) 부모교육의 내용은 V장 2절에서 제시하였음.

10)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a). [공무원용]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 pp. 9~18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그림 II-1-2] 일반가정위탁(조부모·친인척) 절차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b,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추진체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8\(2022. 10. 1. 인출\)](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8(2022. 10. 1. 인출)).

보호대상아동의 친인척 외의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 보호 절차는 [그림 II-1-3]과 같다. 친인척의 경우와 달리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에게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II-1-3]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절차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b,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추진체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8>(2022. 10. 1. 인출).

1) 신청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즉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친부모의 자립가능성(가정환경 조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조치 이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가 아동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관할청이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 2022: 75),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과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가정(일반, 전문) 연계를 의뢰해야 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제선지능아동인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79).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공범인 보호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3)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시·군·구에서는 초기상담,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7일 이내에 가정위탁 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를 발송하게 되는데, 관련서류에는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초기상담지,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친부모상황점검표, 아동상황점검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

치 결정 상황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수립결과 등이 포함된다.

4) 사례관리

아동발생소제지 시·군·구는 아동카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위탁부모,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에 관한 사후지도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서비스제공 및 복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계획 수립 동의 과정에서 변경사항,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하고 적절히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양육상황 점검에는 ①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 ② 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③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시·군·구에서는 신규 책정된 일반위탁가정에 대하여 위탁보호 초기(3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조하여야 한다.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시·군·구)과 협조하여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위탁부모 양성·보수교육 실시, 위탁아동·부모 연계, 친가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 위탁가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5) 가정위탁보호 종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목적(친가정 복귀)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정위탁보호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이 제출한 가정복귀 신청서를 확인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양육 상황 점검표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게 되며, 종결 확정 후 그 사실을 가정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결조치 시에는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보호대상아동이 타 시·군·구로 전출하게 되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일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보호를 종결한다.

가정위탁 보호를 종결할 때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은 부모의 양육환경 등의 변화를 조사하고 양육상황점검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 양육환경 조사 결과 등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환경 등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정도, 사후관리 계획 등을 정리한 종결심사서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6)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이에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자는 사후관리 대상 가정별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상담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대상가구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원가정의 안전 및 위험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라. 면접교섭의 지원 및 친권의 제한

1) 면접교섭의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¹¹⁾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접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2) 친권의 제한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친부모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및 제5항).

1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법원은 후견인의 선임 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이라 함)을 적용하는데(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 동법에서는 적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두고 있어(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시설미성년후견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마. 소결

이상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1월부터 전문가정위탁이 시행되었는데, 전문위탁부모 자격에 있어서 위탁부모 경험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전문위탁부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정위탁은 2세 이하 영아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학대피해 아동 등이 포함되는 만큼 자격요건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 혹은 위탁부모 경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일시위탁)과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가정 요건이 동일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2021년 12월 30일 시행),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절차나 내용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위탁부모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

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행 아동복지법상 친권제한이나 후견인 선임은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아동에게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매우 곤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설미성년후견법이 마련되어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제4항). 그러나 동법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전히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원가정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가정위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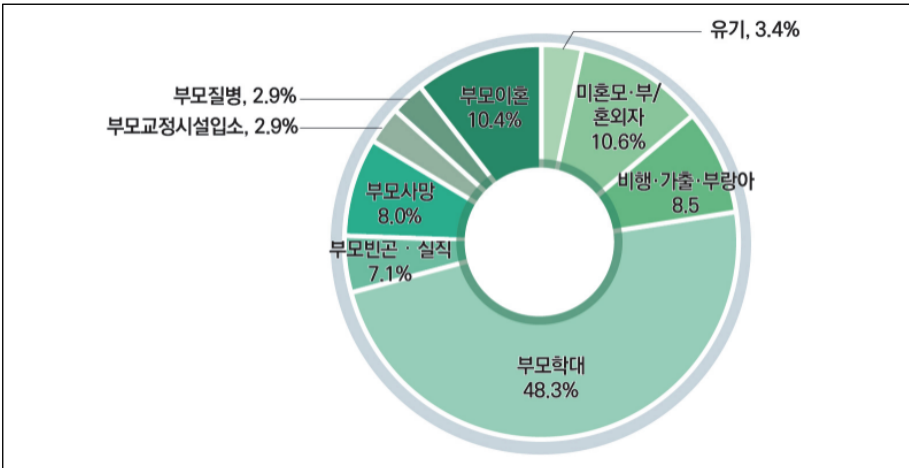
가. 보호대상아동¹²⁾ 현황

1) 발생원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2-1]과 같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학대’로, 전체의 48.3%가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혼모·부/혼외자(10.6%), 부모 이혼(10.4%), 비행·가출·부랑아(8.5%) 순으로 나타났다.

12)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4호)

[그림 II-2-1]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4.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2-1>과 같다. 우선 2021년 기준의 보호조치 아동 수는 3,43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683명이 감소한 결과이며, 2019년 4,047명, 2018년 3,918명, 2017년 4,121명에 비해 최근 5년 간 가장 적은 수치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 중 부모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부모 이혼, 유기, 미혼모·부/혼외자 등의 사유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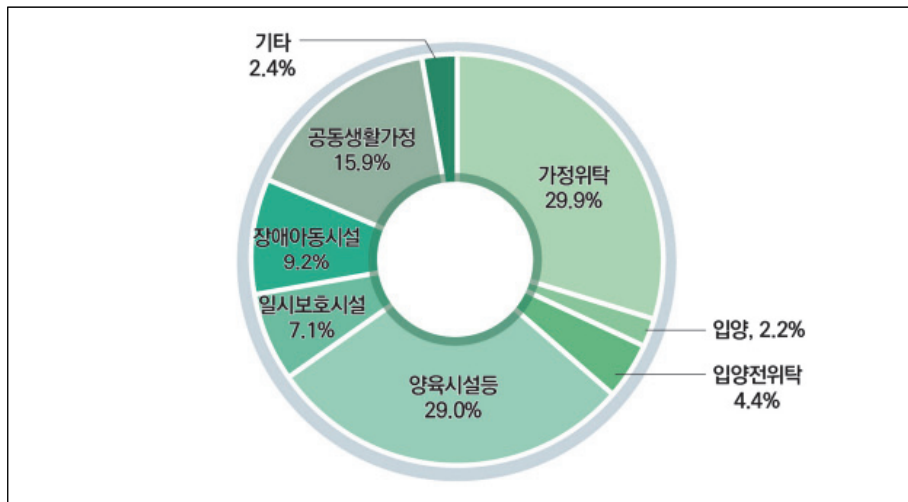
구분	계	유기	미혼모·부/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부모의 빈곤·사망·학대등						
						계	학대	빈곤·실직	사망	교정시설입소	질병	이혼
2021년	3,437	117	366	-	293	2,661	1,660	170	275	99	101	356
	100.0	3.4	10.6	-	8.5	77.4	48.3	4.9	8.0	2.9	2.9	10.4
2020년	4,120	172	463	11	468	3,006	1,767	181	279	166	74	539
	100.0	4.2	11.2	0.3	11.4	73.0	42.9	4.4	6.8	4.0	1.8	13.1
2019년	4,047	237	464	8	473	2,865	1,484	265	297	-	83	736
	100.0	5.9	11.5	0.2	11.7	70.7	36.7	6.5	7.3	-	2.0	18.2
2018년	3,918	320	623	18	231	2,726	1,415	198	284	-	92	737
	100.0	8.2	15.9	0.5	5.9	69.5	36.1	5.1	7.2	-	2.3	18.8
2017년	4,121	261	850	12	229	2,769	1,437	216	276	-	86	754
	100.0	6.3	20.6	0.3	5.6	67.2	34.9	5.2	6.7	-	2.1	18.3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1.

2) 보호조치

다음 [그림 II-2-2]는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정위탁이 2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양육시설 29.0%, 공동생활가정 15.9%, 입양 2.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9.

〈표 II-2-2〉의 경우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나타낸 표이다. 2021년의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총 4,521명 발생했고, 귀가 및 연고자 인도가 1,084건 이루어진 후 앞서 제시한 대로 보호조치아동은 총 3,437명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보호조치 내용 중 가정보호아동과 시설입소아동 수는 각각 1,254명과 2,18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비해 가정보호아동 수와 시설입소아동 수 모두 줄어든 결과이다. 비율로 살펴보면 가정보호아동 비율은 36.5%, 시설입소아동 비율은 63.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시설입소아동 비율은 줄어들었고, 가정보호아동 비율은 늘어난 결과이다(2020년의 경우 가정보호아동 비율: 33.8%, 시설입소아동 비율: 66.2%)(표 II-2-2 참고).

〈표 II-2-2〉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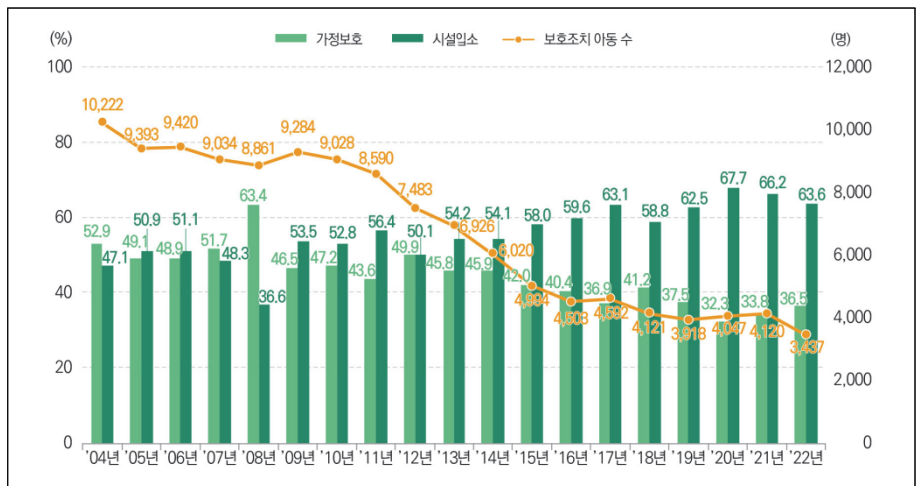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총 발생 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내용									
			계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2021년	4,521	1,084	3,437	1,028	-	75	151	996	243	315	546	83
			100.0	29.9	-	2.2	4.4	29.0	7.1	9.2	15.9	2.4
2020년	5,053	933	4,120	1,068	-	88	237	1,133	343	-	712	539
			100.0	25.9	-	2.1	5.8	27.5	8.3	-	17.3	13.1
2019년	4,612	566	4,047	1,003	5	104	196	1,707	401	6	625	-
			100.0	24.8	0.1	2.6	4.8	42.2	9.9	0.2	15.4	-
2018년	4,538	620	3,918	937	1	174	357	1,300	494	7	648	-
			100.0	23.9	0.0	4.5	9.1	33.2	12.6	0.2	16.5	-
2017년	4,838	725	4,121	990	2	285	423	1,467	310	19	625	-
			100.0	24.0	0.0	6.9	10.3	35.6	7.5	0.5	15.2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6.

[그림 II-2-3]의 경우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수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비율이 가정보호에 비해 훨씬 높으나 최근 3년간은 가정보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II-2-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7.

나. 가정위탁보호 현황

1) 현황

다음 <표 II-2-3>은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을 나타낸 결과이다. 2021년 위탁가정 수는 총 7,830세대로 이전 4개년도(2017~2020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치이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의 위탁가정 7,830세대 중 대리양육¹³⁾ 및 친인척가정위탁¹⁴⁾ 6,931세대(88.5%)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위탁¹⁵⁾이 775세대(9.9%), 전문 66세대(0.8%), 일시¹⁶⁾ 29세대(0.4%), 기타¹⁷⁾ 29세대(0.4%)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은 1.5%p 감소하였고(2020년: 대리양육 64.0%+친인척 26.0%=90.0%), 일반(친인척 외)위탁은 동일하였으며, 신설된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의 경우 각 0.8%, 0.4%이며, 기타는 0.3%p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01).

<표 II-2-3>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단위: 세대,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전문	일시	기타
2021년	7,830	6,931		775	66	29	29
	100.0	88.5		9.9	0.8	0.4	0.4
2020년	7,978	5,103	2,074	793			8
	100.0	64.0	26.0	9.9			0.1
2019년	8,354	5,434	2,171	749			-
	100.0	65.0	26.0	9.0			-
2018년	8,965	5,847	2,354	764			-
	100.0	65.2	26.3	8.5			-
2017년	9,570	6,211	2,591	768			-
	100.0	64.9	27.1	8.0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0.

다음 [그림 II-2-4]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위탁가정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대리양육의 경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

13)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

14)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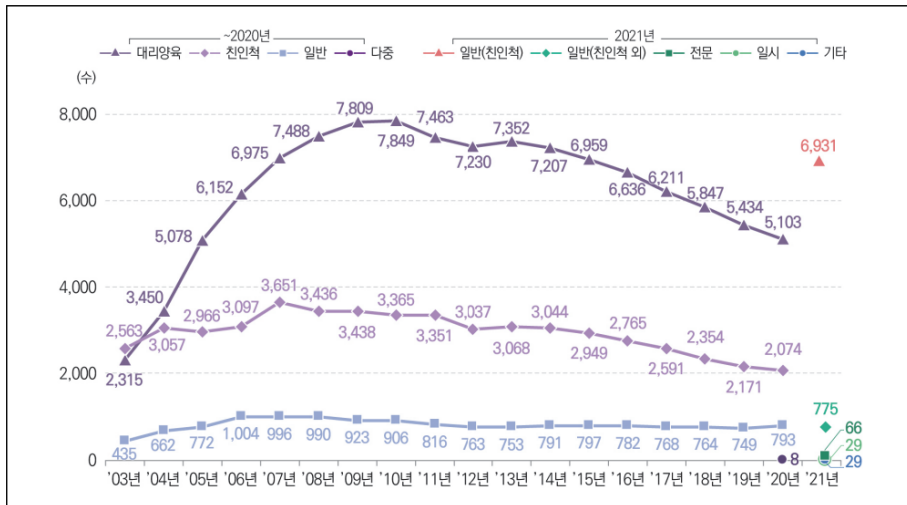
15)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

16)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3)

17) 한 명의 위탁부모가 여러 명의 다른 위탁유형의 위탁 아동을 가정위탁 하는 것(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01)

하였고, 친인척 양육의 경우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추이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1년 일반가정 위탁도 포함하여 분석한 수치).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의 경우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2-4]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1.

2) 위탁기간

다음 <표 II-2-4>는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기간을 나타낸 결과이다. 우선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전체 위탁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6년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위탁기간이 총 6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보호된 아동(6년 이상)은 전체의 44.3%였으며, 1년 미만으로 위탁 보호된 아동은 11.3%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평균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5년 9개월, 일반(친인척 외)위탁 6년 9개월, 전문위탁 2년 5개월로 나타나 일반(친인척 외) 위탁 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아동의 전입 연령이 일반(친인척 외)위탁 아동의 경우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31). 한편 일시위탁의 경우 평균 위탁기간이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기간(2021.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위탁기간										평균 위탁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계	9,541	517	562	996	928	835	727	748	2,380	1,848	6년	
	100.0	5.4	5.9	10.4	9.7	8.8	7.6	7.8	24.9	19.4		
일반 (친인척)	8,452	369	485	877	849	771	675	688	2,163	1,575	5년	
	100.0	4.4	5.7	10.4	10.0	9.1	8.0	8.1	25.6	18.6		
일반 (친인척 외)	947	72	63	95	74	62	50	58	205	268	6년	
	100.0	7.6	6.7	10.0	7.8	6.5	5.3	6.1	21.6	28.3		
전문	99	34	13	24	5	2	2	2	12	5	2년	
	100.0	34.3	13.1	24.2	5.1	2.0	2.0	2.0	12.1	5.1		
일시	43	42	1*	0	0	0	0	0	0	0	2개월	
	100.0	97.7	2.3	0.0	0.0	0.0	0.0	0.0	0.0	0.0		

주: 일시보호유형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일시 위탁하는 유형으로서, 해당 아동의 위탁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31.

3) 위탁보호사유

다음 〈표 II-2-5〉와 [그림 II-2-5]는 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사유를 나타낸 결과이다. 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와 모의 사망(24.2%), 별거나 가출(22.0%)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 2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나 모의 사망 26.3%, 별거/가출이 22.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친인척 외)위탁의 경우 별거/가출이 1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혼 15.6%, 미혼모(부)/혼외출생이 13.5%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학대/방임이 53.5%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마찬가지로 일시위탁의 경우에도 69.8%가 학대/방임으로 인하여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한편 위탁유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사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 값)이 0.05 미만으로 보고되어 위탁유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사유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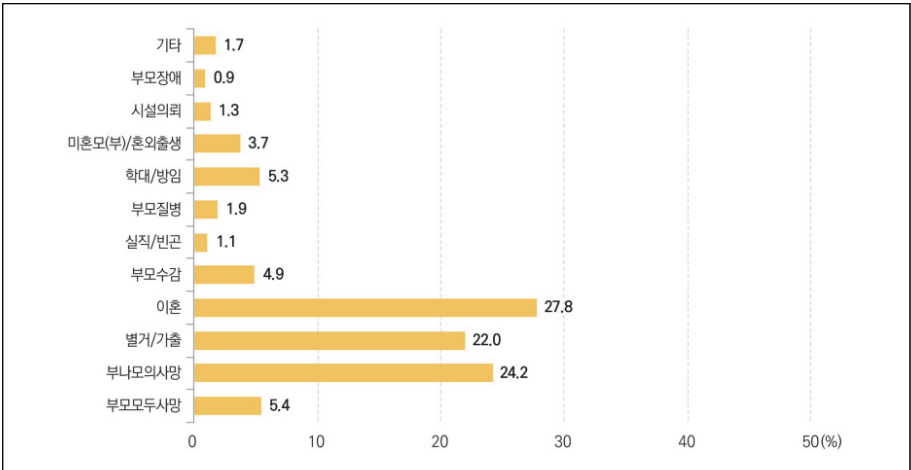
〈표 II-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 빈곤	부모 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부)/혼외 출생	시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9,541	514	2,306	2,095	2,651	464	108	185	501	350	122	85	160
	100.0	5.4	24.2	22.0	27.8	4.9	1.1	1.9	5.3	3.7	1.3	0.9	1.7
일반 (친인척)	8,452	502	2,222	1,907	2,492	432	65	148	300	207	4	63	110
	100.0	5.9	26.3	22.6	29.5	5.1	0.8	1.8	3.5	2.4	0.0	0.7	1.3
일반 (친인척 외)	947	12	82	181	148	29	43	34	118	128	112	20	40
	100.0	1.3	8.7	19.1	15.6	3.1	4.5	3.6	12.5	13.5	11.8	2.1	4.2
전문	99	0	1	6	10	3	0	0	53	14	4	1	7
	100.0	0.0	1.0	6.1	10.1	3.0	0.0	0.0	53.5	14.1	4.0	1.0	7.1
일시	43	0	1	1	1	0	0	3	30	1	2	1	3
	100.0	0.0	2.3	2.3	2.3	0.0	0.0	7.0	69.8	2.3	4.7	2.3	7.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24.

[그림 II-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25.

4) 위탁가정 참여 동기

다음 〈표 II-2-6〉과 [그림 II-2-6]은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나타낸 결과이다. 2021년 7,830세대의 위탁가정 중 혈연관계로 인해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86.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이타심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위탁가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혈연관계로 위탁가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경우가 전체의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친인척 외)가정위탁의 경우 일반(친인척) 가정위탁 유형의 경우보다 다양한 참여 동기를 나타냈는데, 사회적 이타심 실현으로 위탁가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경우가 전체의 5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종교적 이념 실천이 19.4%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입양 전 준비의 일환으로 위탁가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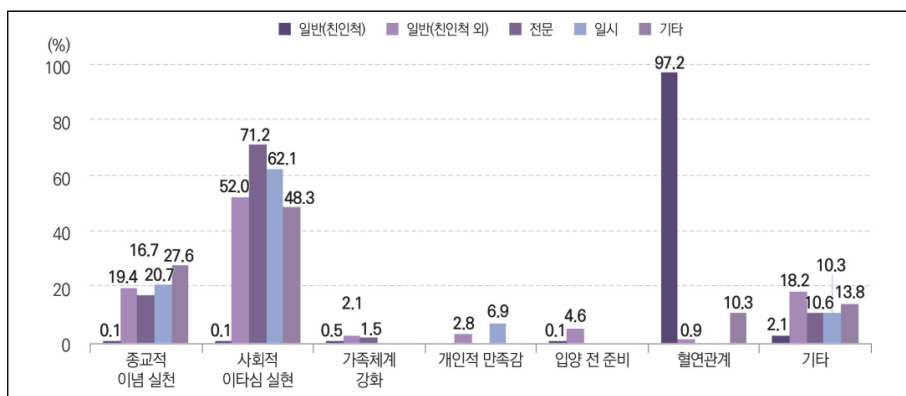
〈표 II-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단위: 세대, %

구분	계	위탁가정 참여 동기						
		종교적 이념 실천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가족 체계 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계	7,830	179	488	52	25	43	6,744	299
	100.0	2.3	6.2	0.7	0.3	0.5	86.1	3.8
일반(친인척)	6,931	4	6	35	1	7	6,734	144
	100.0	0.1	0.1	0.5	0.0	0.1	97.2	2.1
일반(친인척 외)	775	150	403	16	22	36	7	141
	100.0	19.4	52.0	2.1	2.8	4.6	0.9	18.2
전문	66	11	47	1	0	0	0	7
	100.0	16.7	71.2	1.5	0.0	0.0	0.0	10.6
일시	29	6	18	0	2	0	0	3
	100.0	20.7	62.1	0.0	6.9	0.0	0.0	10.3
기타	29	8	14	0	0	0	3	4
	100.0	27.6	48.3	0.0	0.0	0.0	10.3	13.8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14.

〔그림 II-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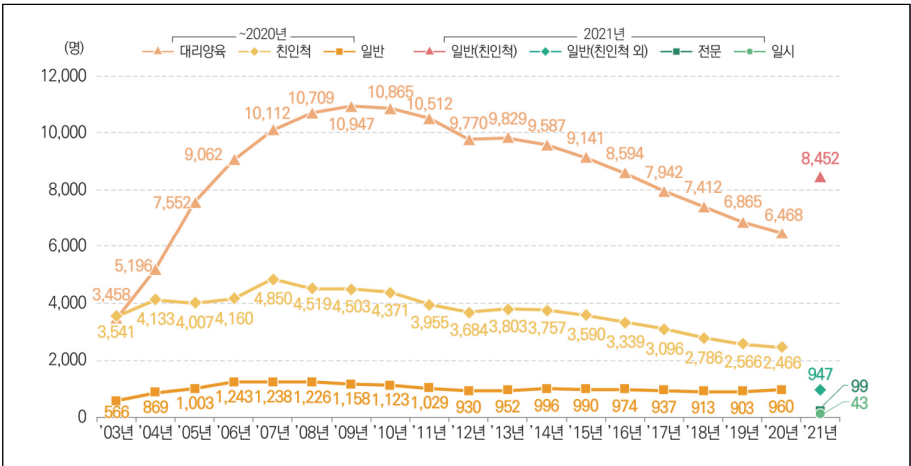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14.

다. 위탁아동 현황

1) 현황

연도별 위탁아동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7>과 같다. 2021년에 위탁 아동 수는 9,541명으로, 2020년 9,894명에 비해 줄어 들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보호필요아동 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아동 역시 2010년부터 줄어 들고 있다. 2021년 위탁아동은 9,541명으로 2020년 9,894명에 비해 353명 감소했고, 2021년 위탁유형 변경(일반(친인척), 일반(친인척 외), 전문, 일시)으로 인해 전문위탁아동과 일시위탁아동의 수가 각 99명과 43명으로 신설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7)(그림 II-2-7 참조).

[그림 II-2-7] 연도별 위탁아동 수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7.

<표 II-2-7> 연도별 위탁아동 수(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친인척)		일반(친인척 외)	전문	일시
2021년	9,541	8,452		947	99	43
	100.0	88.6		9.9	1.0	0.5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전문	일시
2020년	9,894	6,468	2,466	960	-	-
	100.0	65.4	24.9	9.7	-	-
2019년	10,334	6,865	2,566	903	-	-
	100.0	66.4	24.8	8.8	-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전문	일시
2018년	11,111	7,412	2,786	913	-	-
	100.0	66.7	25.1	8.2	-	-
2017년	11,975	7,942	3,096	937	-	-
	100.0	66.3	25.9	7.8	-	-

주: '21.6.30. 위탁유형 변경: (기존) 일반·대리·친인척 → (변경) 일반·전문·일시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6.

2021년 기준 9,541명의 위탁아동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8>과 같은데, 남아의 비율이 51.7%로 여아 48.3%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7-19세가 25.8%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의 경우 23.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7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은 전체 위탁아동의 8.0%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유형별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일반위탁 유형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에서는 주로 어린 나이의 연령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에서는 14세 이상의 아동이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3).

<표 II-2-8> 위탁아동 세부 현황(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총계	9,541	4,930	4,611	201	564	894	1,332	1,856	2,462	2,232	
	100.0	51.7	48.3	2.1	5.9	9.4	14.0	19.5	25.8	23.4	
일반 (친인척)	8,452	4,331	4,121	58	374	736	1,211	1,723	2,268	2,082	
	100.0	51.2	48.8	0.7	4.4	8.7	14.3	20.4	26.8	24.6	
일반 (친인척 외)	947	519	428	66	162	147	108	124	190	150	
	100.0	54.8	45.2	7.0	17.1	15.5	11.4	13.1	20.1	15.8	
전문	99	61	38	45	19	9	13	9	4	0	
	100.0	61.6	38.4	45.5	19.2	9.1	13.1	9.1	4.0	0.0	
일시	43	19	24	32	9	2	0	0	0	0	
	100.0	44.2	55.8	74.4	20.9	4.7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8.

2) 위탁보호 결정 시 현황

<표 II-2-8>이 2021년 기준의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를 나타낸 결과라면, 다음 <표 II-2-9>는 위탁보호 결정 시에 위탁아동 연령대를 나타낸 결과이다. 위탁보호 결정 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은 8-10세가 2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1-13세(22.2%), 4-7세(21.2%) 순서대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8-10세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1-13세가 24.0%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친인척 외)가정위탁의 경우에는 1-3세의 경우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4-7세가 32.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1-3세 때에 위탁결정을 한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고, 일시가정위탁 역시 1-3세 때 가정위탁을 결정한 비율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2-9〉 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9,541	4,930	4,611	783	2,020	2,261	2,121	1,594	752	10	
	100.0	51.7	48.3	8.2	21.2	23.7	22.2	16.7	7.9	0.1	
일반 (친인척)	8,452	4,331	4,121	371	1,687	2,122	2,030	1,521	712	9	
	100.0	51.2	48.8	4.4	20.0	25.1	24.0	18.0	8.4	0.1	
일반 (친인척 외)	947	519	428	319	306	129	83	71	38	1	
	100.0	54.8	45.2	33.7	32.3	13.6	8.8	7.5	4.0	0.1	
전문	99	61	38	61	18	8	8	2	2	0	
	100.0	61.6	38.4	61.6	18.2	8.1	8.1	2.0	2.0	0.0	
일시	43	19	24	32	9	2	0	0	0	0	
	100.0	44.2	55.8	74.4	20.9	4.7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28.

3) 장애 여부

다음 〈표 II-2-10〉은 위탁아동의 장애 여부를 나타낸 결과이다. 전체 위탁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의 비율은 3.7%였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 일반(친인척 외), 일반(친인척) 가정위탁 순으로 장애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10〉 위탁아동 장애 여부(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없음	있음
계	9,541	9,190	351
	100.0	96.3	3.7
일반 (친인척)	8,452	8,175	277
	100.0	96.7	3.3
일반 (친인척 외)	947	883	64
	100.0	93.2	6.8

구분	계	장애	
		없음	있음
전문	99	89	10
	100.0	89.9	10.1
일시	43	43.0	0
	100.0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30.

4) 형제 배치

위탁아동의 형제배치를 살펴보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형제 없이 혼자 가정위탁 보호로 의뢰되어 배치된 경우(아동 단독 배치)는 전체의 57.4%로 나타났고,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같은 가정에 배치된 경우(형제 배치)는 39.7%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가 같이 의뢰 되었지만 분리되어 배치된 경우(형제 분리 배치)는 2.9%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단독으로 배치된 경우가 54.3%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친인척 외)가정위탁은 82.9%,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72.7%,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79.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II-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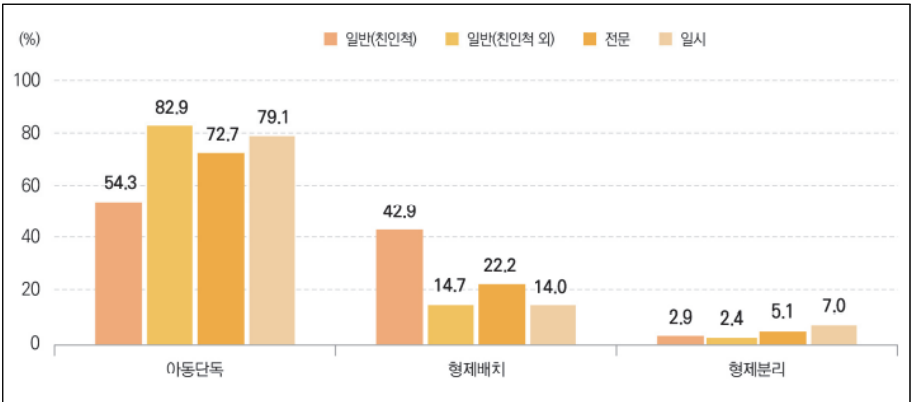
〈표 II-2-11〉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형제배치		
		아동단독	형제배치	형제분리
계	9,541	5,478	3,791	272
	100.0	57.4	39.7	2.9
일반 (친인척)	8,452	4,587	3,624	241
	100.0	54.3	42.9	2.9
일반 (친인척 외)	947	785	139	23
	100.0	82.9	14.7	2.4
전문	99	72	22	5
	100.0	72.7	22.2	5.1
일시	43	34	6	3
	100.0	79.1	14.0	7.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26.

[그림 II-2-8]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26.

5) 위탁 전 학대 경험 여부

가정위탁 보호 전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45.5%,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32.6%, 일반(친인척 외) 가정위탁의 경우 15.8%로 나타났고,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학대 경험 비율이 3.0%로 타 유형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났다(표 II-2-12 참조).

<표 II-2-12> 위탁 전 학대 경험 여부(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학대	
		없음	있음
계	9,541	9,080	461
	100.0	95.2	4.8
일반 (친인척)	8,452	8,200	252
	100.0	97.0	3.0
일반 (친인척 외)	947	797	150
	100.0	84.2	15.8
전문	99	54	45
	100.0	54.5	45.5
일시	43	29	14
	100.0	67.4	32.6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30.

라. 위탁부모 현황

1) 연령

위탁유형별 전체 위탁부모의 연령을 나타낸 결과는 다음 <표 II-2-13>, [그림 II-2-9]와 같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양육자의 연령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04). 전체 위탁부모의 연령은 60~69세 인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70~79세인 경우는 25.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68.7%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부모 연령이 70세가 넘는 경우가 41.2%로, 타 유형보다 고연령의 위탁부모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4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위탁부모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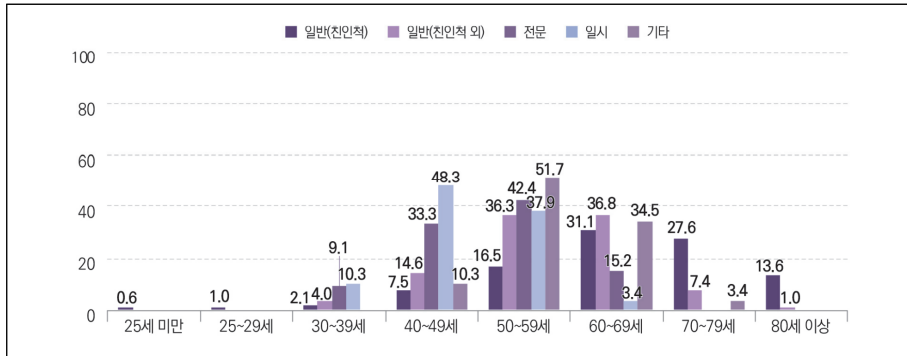
<표 II-2-13>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부모 연령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7,830	42	71	188	669	1,478	2,462	1,968	952
	100.0	0.5	0.9	2.4	8.5	18.9	31.4	25.1	12.2
일반 (친인척)	6,931	42	71	148	517	1,142	2,157	1,910	944
	100.0	0.6	1.0	2.1	7.5	16.5	31.1	27.6	13.6
일반 (친인척 외)	775	0	0	31	113	281	285	57	8
	100.0	0.0	0.0	4.0	14.6	36.3	36.8	7.4	1.0
전문	66	0	0	6	22	28	10	0	0
	100.0	0.0	0.0	9.1	33.3	42.4	15.2	0.0	0.0
일시	29	0	0	3	14	11	1	0	0
	100.0	0.0	0.0	10.3	48.3	37.9	3.4	0.0	0.0
기타	29	0	0	0	3	15	10	1	0
	100.0	0.0	0.0	0.0	10.3	51.7	34.5	3.4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4.

[그림 II-2-9]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4.

2) 직업

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14>와 같다. 위탁부모의 직업은 앞서 살펴본 위탁부모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주 양육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07). 위탁부모의 직업 중 무직이 차지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업주부와 기타가 동일하게 1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6.3%였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임·축산업 종사자가 6.2%, 자영업 5.6%, 서비스직 5.2% 순서대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주 양육자가 무직인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14.6%), 전업주부(11.6%)로 나타났다. 일반(친인척 외)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전업주부 34.1%, 기타 12.8%, 전문직 11.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주양육자가 전업주부인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표 II-2-14 참조).

<표 II-2-14> 위탁부모 직업(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부모 직업																	의원 및 관리 자
		공무 원	군 인	기계 장치 조작 원	농·어· 임·축 산업	단순 노무 직	비정 규직	사무 직	서비 스직	자영 업	전문 직	종교 인	전업 주부	판매 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 안됨	
계	7,830	43	5	20	483	352	225	261	405	440	188	126	1,126	61	40	2,433	1,127	490	5
	100.0	0.5	0.1	0.3	6.2	4.5	2.9	3.3	5.2	5.6	2.4	1.6	14.4	0.8	0.5	31.1	14.4	6.3	0.1
일반	6,931	26	4	18	467	341	216	218	346	364	93	34	807	57	40	2,395	1,013	489	3

구분	계	위탁부모 직업																	의원 및 관리 자
		공무 원	군 인	기계 장치 조작 원	농·어· 임·축 산업	단순 노무 직	비정 규직	사무 직	서비 스직	자영 업	전문 직	종교 인	전업 주부	판매 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 안됨	
(친인척)	100.0	0.4	0.1	0.3	6.7	4.9	3.1	3.1	5.0	5.3	1.3	0.5	11.6	0.8	0.6	34.6	14.6	7.1	0.0
일반	775	14	1	2	15	11	7	38	55	68	88	76	264	2	0	32	99	1	2
(친척 외)	100.0	1.8	0.1	0.3	1.9	1.4	0.9	4.9	7.1	8.8	11.4	9.8	34.1	0.3	0.0	4.1	12.8	0.1	0.3
전문	66	2	0	0	1	0	1	4	4	1	2	5	32	1	0	2	11	0	0
	100.0	3.0	0.0	0.0	1.5	0.0	1.5	6.1	6.1	1.5	3.0	7.6	48.5	1.5	0.0	3.0	16.7	0.0	0.0
일시	29	1	0	0	0	0	1	0	0	4	1	2	15	0	0	3	2	0	0
	100.0	3.4	0.0	0.0	0.0	0.0	3.4	0.0	0.0	13.8	3.4	6.9	51.7	0.0	0.0	10.3	6.9	0.0	0.0
기타	29	0	0	0	0	0	0	1	0	2	4	9	8	1	0	2	2	0	0
	100.0	0.0	0.0	0.0	0.0	0.0	0.0	3.4	0.0	6.9	13.8	31.0	27.6	3.4	0.0	6.9	6.9	0.0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6.

3) 학력

위탁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15>와 같다. 위탁부모의 학력 역시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09). 위탁부모의 학력 중 학력이 파악된 인원인 7,830명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학이 16.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위탁부모 학력을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1.3%로 가장 높았고, 무학 비율이 18.4%, 초등학교 졸업 16.2%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친인척 외)위탁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45.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33.3%, 대학원 이상 10.1%순이었다.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각각 65.2%,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2-15> 위탁부모 학력(2021. 12.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부모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파악 인원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이상	인원	
계	7,830	1,289	12	146	1,136	7	37	915	2	27	2,447	43	15	882	123	749	
	100.0	16.5	0.2	1.9	14.5	0.1	0.5	11.7	0.0	0.3	31.3	0.5	0.2	11.3	1.6	9.6	
일반 (친인척)	6,931	1,272	12	141	1,120	7	33	879	2	26	2,169	39	10	445	31	745	
	100.0	18.4	0.2	2.0	16.2	0.1	0.5	12.7	0.0	0.4	31.3	0.6	0.1	6.4	0.4	10.7	
일반 (친인척 외)	775	17	0	5	16	0	4	35	0	1	258	4	4	352	78	1	
	100.0	2.2	0.0	0.6	2.1	0.0	0.5	4.5	0.0	0.1	33.3	0.5	0.5	45.4	10.1	0.1	

구분	계	위탁부모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전문	66	0	0	0	0	0	0	0	0	0	16	0	0	43	6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2	0.0	0.0	65.2	9.1
일시	29	0	0	0	0	0	0	0	0	0	1	0	1	22	4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	0.0	3.4	75.9	13.8
기타	29	1	0	0	0	0	0	1	0	0	4	0	0	19	4
	100.0	3.4	0.0	0.0	0.0	0.0	0.0	3.4	0.0	0.0	13.8	0.0	0.0	65.5	13.8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08.

4) 소득

한편 위탁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2-16> 및 [그림 II-2-10]과 같다. 해당 위탁가정의 소득은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한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실제 위탁가정의 가구소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111). 위탁가구 중 소득이 파악된 세대는 7,444세대로 전체의 95.1%였으며, 소득 파악 세대 중 월 수입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43.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인 세대가 11.3%, 50~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10.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48.3%로 가장 많았고, 일반(친인척 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기타의 경우 월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II-2-16>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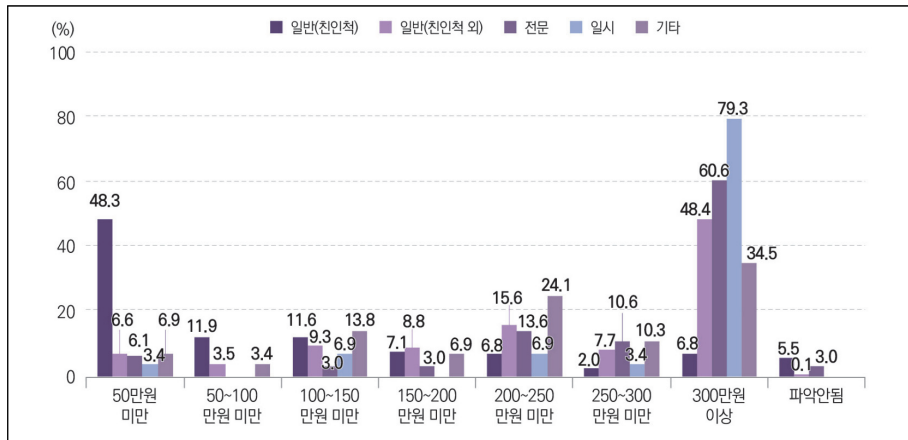
단위: 세대, %

구분	계	위탁부모 소득(월 수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 안됨
계	7,830	3,405	854	881	567	609	210	918	386
	100.0	43.5	10.9	11.3	7.2	7.8	2.7	11.7	4.9
일반 (친인척)	6,931	3,347	826	801	495	470	139	470	383
	100.0	48.3	11.9	11.6	7.1	6.8	2.0	6.8	5.5
일반 (친인척 외)	775	51	27	72	68	121	60	375	1
	100.0	6.6	3.5	9.3	8.8	15.6	7.7	48.4	0.1
전문	66	4	0	2	2	9	7	40	2
	100.0	6.1	0.0	3.0	3.0	13.6	10.6	60.6	3.0
일시	29	1	0	2	0	2	1	23	0
	100.0	3.4	0.0	6.9	0.0	6.9	3.4	79.3	0.0

구분	계	위탁부모 소득(월 수입)							파악 안됨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기타	29 100.0	2 6.9	1 3.4	4 13.8	2 6.9	7 24.1	3 10.3	10 34.5	0 0.0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10.

[그림 II-2-10]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 110.

마. 소결

첫째, 2021년도에 보호대상아동은 총 4,521명 발생하였으며, 귀가 및 연고자 인도가 1,084건 이루어진 후 보호조치된 아동은 총 3,437명이었다. 이들 중 가정 보호아동과 시설입소아동 수는 각각 1,254명과 2,183명이었고, 그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아동은 1,028명으로 보고되었다. 여전히 가정위탁을 비롯한 가정보호보다는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학대(48.3%)이며, 다음으로는 미혼모·부/혼외자(10.6%)로 인함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아동의 보호사유를 살펴보면, 이혼이 27.8%로 가장 많고, 부와 모의 사망(24.2%), 별거나 가출(2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를 살펴보면, 친부모가 한부모가 됨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친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양육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모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21년도 위탁가정 수는 총 7,830세대이고, 이들 중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가정위탁은 6,931세대(88.5%), 일반가정위탁은 775세대(9.9%)로, 비혈연 관계인 일반가정위탁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또한 위탁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68.7%이었다. 이는 위탁부모의 고령화를 보여주며, 위탁부모가 아동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셋째, 2021년도 위탁아동은 총 9,541명으로, 전체 위탁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6년이었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도 19.4%로 보고되었다. 위탁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의 비율은 351명(3.7%), 형제자매가 같이 의뢰 되었지만 분리되어 배치된 경우는 272명(2.9%)이었다. 아동의 적응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3. 위탁가정 양육 및 아동발달 특성

가.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적 경험

전국 305명의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9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강현아·정익중·강향숙·오세현·박성희, 2019)에서는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도와 같은 요인들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언급된 요인들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외, 2019: 85).

강현아 외(2019)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이나 성적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의 휴대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위탁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가정 위탁부모가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인 경우보다 위탁아동에 대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강현아 외, 2019: 85-86).

가정위탁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대전광역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99쌍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김민정(2008)의 연구 결과를 위탁부모 특성과 위탁아동 특성으로 구분하여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위탁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위탁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8: 154). 즉, 위탁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거나 위탁부모의 연령이 70대 이상이었을 때 위탁아동의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을 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위탁을 하였을 때보다 위탁아동과 혈연관계여서 위탁을 하였을 때 아동이 더 긍정적인 세계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8: 149). 위탁부모의 총 위탁 경험 기간이 6~10년 사이인 경우가 5년 이하나 11년 이상보다 위탁아동의 자아만족감이 가장 높았으며, 보다 긍정적인 세계관인 경향이 있었다(김민정, 2008: 154).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이 남아인 경우가 여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위탁가정에 배치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가 24개월 미만인 경우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위탁가정에 형제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가 형제가 없는 경우나 형제가 분리되어 위탁된 경우보다 위탁아동의 자아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8: 155).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으로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의 위탁아동을 둔 전국 위탁부모 769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위탁형태별 특성, 위탁아동의 적응 등을 면접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양심영(2003)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리양육가정위탁부모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연령이 훨씬 높았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심영, 2003: 137). 이러한 특성으로 주택소유, 주거지 양육 적합성 등 아동의 물리적 환경이 일반가정 위탁환경보다 대리가정에서 미흡하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부재 시 대리보호자,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 위탁교육 유무, 구성원들의 위탁수용 여부에서도 대리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심영, 2003: 137-138).

동 연구에서 위탁가정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특성으로는 성별과 위탁보호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적응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위탁보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이 새로운 위탁환경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양심영, 2003: 140-141).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노충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2008)의 연구결과,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발달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위탁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 외, 2008: 257).

위탁가정 유형별에 따른 아동특성, 위탁가정 특성 및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가정위탁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최영(2007)의 연구결과, 위탁가정 유형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우울 및 공격성에 있어서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양육, 일반위탁가정의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친구지지 및 가족지지와 같은 요인들이 위탁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 2007: 83).

한편 가정위탁패널연구 아동의 아동-양육자 애착, 우울·불안, 공격성, 학교적응 등 아동의 발달 전반을 주제로 삼아 일반가정위탁과 친족가정위탁 간의 차이를 비교한 강현아·정익중·양경해(2015)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환경과 발달특성 모두 배치 시점에서부터 일반가정 위탁아동이 친족위탁아동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강현아 외, 2015: 16). 일반가정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육자 애착, 학교적응, 공격성 측면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친족위탁아동의 발달 수준보다 더 긍정적으로 역전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하였다(강현아 외, 2015: 17-18).

네덜란드에서 419명의 위탁아동의 위탁가정 내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 결과, 가정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 맡겨지기 전의 문제들, 특히 애착 장애 및 재배치 경험 등이 위탁가정 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ijker & Knorth, 2009: 426). 이에 위탁가정 부모들이 위탁아동이 이 가정에 위탁되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가정위탁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논점이라 제안하였다(Strijker & Knorth, 2009: 427).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김선숙·박호준(2020)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가정위탁 아동에 비해 동네 경험과 같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김선숙·박호준(2020)은 가정 외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적응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김선숙·박호준, 2020: 13).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애착표상 검사(MSSB)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회피/위축’ 및 ‘비조절된 공격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이정림·최정원·최윤경, 2019: 208). 반면,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애착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뿐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9: 193). 이정림 외(2019) 연구는 사례 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보다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발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탁가정 유형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고, 또한 네덜란드의 위탁아동 연구의 사례처럼 위탁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아동의 특성, 위탁부모의 학력, 연령, 양육역량 및 위탁 기간 등과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형제가 함께 배치된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 경험 결과는 상이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던바, 이에 관한 지속적인 탐색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정 유형별에 따른 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조부모가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대리양육이 상대적으로 양육환경이 불리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와 불리한 환경임에도 양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응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 등이 혼재되어 있지만, 주양육자의 양육에 관한 지식 및 양육 기간 등이 위탁 아동의 위탁가정 내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이 일반가정 위탁부모가 친인척 위탁이나 조부모 위탁보다 양육태도 등에서 좀 더 긍정적임을 보고하고 있지만, 위탁가정 유형別に 따른 아동의 심리적 적응 등에서 차이가 없고 아동의 발달단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기에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도 고려해야 한다.

나. 위탁가정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가정외보호 여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 자료와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병합하여 살펴본 안은미·이정애·정익중(2019)의 연구 결과,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영향력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외보호 청소년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실천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안은미 외, 2019: 221).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2012)의 연구 결과,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 부모 가출과 같은 친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강현아 외, 2012: 212).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한 주양육자의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과 불안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외, 2012: 213-214).

최근에 수행되었던 김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부모 사망, 이혼 및 별거 등/왕따 경험 및 폭력 피해 경험 등)은 이후 청소년 시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경험은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리양육자(위탁부모 등)와의 관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김혜원, 2022: 77-78). 이상

의 연구결과를 통해 김혜원(2022)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대리양육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김혜원, 2022: 85).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을 다룬 배인경(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부정적 사건을 많이 경험한 가정외보호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인경, 2019: 48). 하지만 부정적 사건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보호요인으로, 우울·불안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및 이를 통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배인경, 2019: 52).

양은별·김태우·박은혜·이소연·정익중(2015)은 일반청소년과 가정외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연구 결과, 일반청소년의 우울·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양육자의 지지적 태도와 관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은별 외, 2015: 323). 한편,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및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생활만족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청소년과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위한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접근은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였다(양은별 외, 2015: 323-325).

김형태·이수천(2019)은 가정외보호 아동의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양육자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육자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이 진로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위탁가정의 경우 대리양육자(위탁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을 거쳐서 진로 성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보고하였다(김형태·이수천, 2019: 65).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허남순(2008)의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거나 부모가 문제행동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허남순, 2008: 226). 반면, 김정화·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우석진(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양육자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애정, 자율, 성취, 합리)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정화 외, 2014: 327).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이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양심영, 2009; 최은희·윤혜미, 2014)을 살펴보면, 위탁가정 내에서의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희·윤혜미, 2014: 159-160). 또한 친족위탁가정에서 친족부모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의 적응성이 낮아지면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심영, 2009: 211-212).

위탁가정 내 경험이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낙인감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안은미·정익중(201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3학년 기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낙인감은 이후 중학교 3학년 때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안은미·정익중, 2019: 238). 한편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성장하면서 청소년의 낙인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낙인감이 빠르게 감소할수록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미·정익중, 2019: 23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친가족과의 분리 이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위탁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친가족과의 분리 이전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으로 인하여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위탁부모와 그 가정의 심리적 건강과 바람직한 양육환경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같은 내적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수행되었던 김혜원(2022)의 연구는 위탁부모와 그 가정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다.

다. 위탁부모의 위탁아동 양육

김민정(2010)은 99명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양육과 관련 있는 변인들에 따른 위탁부모의 위탁 양육유지 의사를 살펴보았다. 위탁부모의 위탁 양육유지 의사는 위탁부모가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 이전의 위탁경험이 없는 경우, 아동의 조부모인 경우, 가족이 협조적인 경우 등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0: 149). 위탁부모가 위탁양육 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탁아동 특성보다는 위탁부모 개인 및 위탁가정 개별특성 또는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라고 밝힘으로써 위탁부모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민정, 2010: 149).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이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민정(2009)은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위탁아동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위탁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민정, 2009: 105). 동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위탁부모의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이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위탁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안정감의 높은 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9: 105).

권지성·정익중(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위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가정위탁 현상을 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질적 사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위탁부모 대상 질적 사례분석 결과, 먼저 위탁부모인 조부모의 경험에는 ‘부모가 됨’, ‘잃어버린 자식’, ‘부모 노릇은 힘들어’, ‘낮은 발판’, ‘높은 벽’,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포함되었다(권지성·정익중, 2013: 49). 다음으로 위탁부모인 친인척의 경험에는 ‘피차 어려운 형편’, ‘조카의 부모가 된다는 것’, ‘거드는 손’, ‘2% 부족한 도움’ 등의 범주가 포함되었다(권지성·정익중, 2013: 52). 마지막으로 일반가정위탁 부모들의 경험은 ‘위탁하게 된 계기(아동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음, 키울 만한 형편, 이전의 양육 경험)’, ‘돕는 손길’, ‘가족으로 성장하기’, ‘아이가 돌아갈 곳’, ‘마땅치 않은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권지성·정익중, 2013: 56).

조수민·김정화·노충래(2015)는 가정외보호아동의 친부모와의 애착이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수행하였던 결과, 가정외보호아동이 친부모와의 애착 수준과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수민 외, 2015: 208). 또한 현재 위탁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는 친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가정외보호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민 외, 2015: 208).

배나래·박충선(2013)은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세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조부모 대리양육가정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조부모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대리양육가정의 조손가족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아 손자녀 양육에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나래·박충선, 2013: 347). 다음으로,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들은 신체적, 심리적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험했으며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나래·박충선, 2013: 348). 한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 가치관 혼란 등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희망, 보람, 생의 의욕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배나래·박충선, 2013: 348).

박선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위탁의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령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6명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하여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였고, 친자녀와 동일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학습지도 및 다양한 생활면에서의 지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였다고 분석하였다(박선영 외, 2019: 129-131). 또한, 일반가정 위탁부모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위탁부모는 실질적 친권자가 아님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인 문제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동기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선영 외, 2019: 132-133). 다음으로, 일반가정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학교 부적응 및 또래관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위탁가정 지원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박선영 외, 2019: 133-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아동의 발달을 지켜보는 것과 자신을 향한 아동의 작은 애정표현이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위탁아동으로부터 받은 긍정적 반응과 행복한 감정은 재위탁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선순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박선영 외, 2019: 137).

최근 국외에서 이루어진 위탁부모의 적응과 부모양육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Mancinelli, Dell'Arciprete와

Salcuni(2021)의 문헌 분석 연구 결과,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위탁부모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아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위탁부모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ncinelli, Dell'Arciprete & Salcun, 2021). 위탁부모의 부부협력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양육태도는 위탁아동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위탁아동에 대한 비난 및 거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ncinelli, Dell'Arciprete & Salcun, 2021). 이를 통하여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 협력이 위탁아동 양육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위탁아동 특성보다는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역량이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여서인지 위탁부모로서 조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위탁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 결과를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적 경험 관련 연구, 위탁가정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관련 연구 및 위탁부모의 위탁아동 양육 관련 연구로 크게 구분하여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외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 형태보다는 가정위탁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탁가정에 한정하여 위탁아동의 적응과 발달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위탁아동의 성,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아동 특성, 위탁부모의 학력, 연령, 양육역량 및 위탁기간 등과 같은 부모 특성 외, 위탁가정 유형,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형제가 함께 배치된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인 등이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남아가 더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 결과를 보였다는 경우와 반대로 여아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어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성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방안의 차별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위탁가정 유형별에 따른 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일반 가정위탁부모가 친인척 위탁이나 조부모 위탁보다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위탁가정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적응이 차이가 없으며 아동의 발달단계가 아동의 적응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서 위탁가정 유형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절대적인 요인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마찬가지로, 조부모 대리양육 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의 경우 양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 연구와 불리한 환경임에도 양육 기간이 경과되면서 아동이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주양육자의 양육에 관한 지식 및 양육 기간 등이 위탁아동의 위탁가정 내 적응과 발달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아동에 비해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점을 잘 고려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위탁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위탁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원가족과의 분리 전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으로 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가족과의 분리 이후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의 심리적 건강 정도가 높거나 긍정적인 양육환경과 같은 위탁가정 요인과 위탁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 등이 아동의 문제행동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부모 및 위탁부모와의 애착 및 위탁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우울·불안 및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위탁가정 아동이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부정적인 행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탁아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 양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위탁부모의 위탁아동 양육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위탁아동의 특성에 비해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역량과 같은 특성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탁부모 대상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가정 위탁부모의 경우 조부모이고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다소 선택의 여지가 적은 상태로 위탁아동을 돌보게 된 경우보다 위탁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일반가정 위탁부모는 실질적인 친권자가 아님으로 인해 받는 제도적인 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아동 문제행동이나 발달에 따른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일반가정 위탁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일반가정 위탁부모를 위한 제도적 및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가정 내 적응 경험, 발달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가정위탁부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위탁부모 대상 연구는 다수의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보다는 개별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향후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III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 01 일반적 특성
- 02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 03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 04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 05 소결

Ⅲ.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이 장에서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그 대상은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조부모, 친인척 포함), 일시가정위탁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탁부모 중 조부모의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집 시 비혈연 위탁부모를 더 많이 모집하였기 때문에,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의 상황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위탁아동 연령(영아/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 위탁부모-아동 관계(조부모/친인척/비혈연 관계), 가구소득(200만원 미만/200~400만원 미만/400~600만원 미만/600만원 이상)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특성 및 양육특성의 경우 위탁아동의 성별(남/여)도 추가로 다루었다.

이 외에도 위탁유형(전문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일시가정위탁), 위탁부모의 위탁경험(2년 미만/2~4년 미만/4~10년 미만/10년 이상), 위탁보호 사유(자원해서/혈연관계 혹은 동거 후 지원 시작)에 따라 분석하였으나, 위탁유형과 보호사유는 위탁부모-아동 관계의 분포와 유사한 등 분석변인 간 관련성이 높아서(부록 표 1 참조) 부모교육 등 필요한 경우에만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자녀 연령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괄하므로, 일부 문항은 영유아와 학령기 이상 아동의 부모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위탁가정은 총 283가정이었으며, 이중 비혈연 위탁가정이 전체의 65.7%로 과반 이상이었고, 조부모 위탁가정은 20.1%, 친인척 위탁가정은 14.1%이었다. 위탁유형상 일반가정위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1%로 나타났고, 전문가정위탁은 24.7%로 전체의 1/4 정도로 나타났다. 그 외 세부적인 가구 특성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조사 대상 위탁가정 기본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위탁가정 전체	100.0 (283)	총 위탁 기간	
위탁아동과의 관계		2년 미만	22.6 (64)
위탁부	14.5 (41)	2~4년 미만	21.9 (62)
위탁모	85.5 (242)	4~10년 미만	26.1 (74)
위탁아동과의 관계		10년 이상	29.3 (83)
조부모	20.1 (57)	현재 자녀 수	
친인척	14.1 (40)	1명	10.6 (30)
비혈연	65.7 (186)	2명	17.7 (50)
위탁유형		3명	41.3 (117)
전문가정위탁	24.7 (70)	4명 이상	30.4 (86)
일반가정위탁	73.1 (207)	자녀 중 위탁아동 수	
일시가정위탁	2.1 (6)	1명	77.0 (218)
위탁부모 결혼상태		2명 이상	23.0 (65)
배우자 있음	81.3 (230)	가구원 수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15.5 (44)	2명	10.6 (30)
미혼	3.2 (9)	3명	30.4 (86)
월 가구소득		4명	25.1 (71)
200만원 미만	22.6 (64)	5명 이상	33.9 (96)
200~400만원 미만	32.9 (93)	위탁아동 외 가구구성원*	
400~600만원 미만	30.0 (85)	위탁부+위탁모	36.7 (104)
600만원 이상	14.5 (41)	위탁부+위탁모+친자녀	43.5 (123)
위탁경험 횟수		위탁모	14.1 (40)
1회	74.6 (211)	위탁모+친자녀	3.5 (10)
2회	14.1 (40)	위탁부	1.4 (4)
3회 이상	11.3 (32)	위탁부+친자녀	0.7 (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기타 친인척이 동거하는 사례도 있으나 분류기준으로 삼지는 않음.

위탁가정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위탁부는 60세 이상인 경우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모는 50~59세인 경우가 36%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위탁부의 경우 81%, 위탁모의 경우 약 42%로 나타났다. 위탁부와 모 모두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0% 이상이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Ⅲ-1-2〉와 같다.

〈표 III-1-2〉 조사 대상 위탁가정 부모 기본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위탁부 전체	100.0 (234)	위탁모 전체	100.0 (277)
위탁부 연령		위탁모 연령	
30세 미만	0.4 (1)	30세 미만	0.7 (2)
30~39세	4.3 (10)	30~39세	6.0 (17)
40~49세	17.9 (42)	40~49세	23.3 (66)
50~59세	37.6 (88)	50~59세	36.0 (102)
60세 이상	39.7 (93)	60세 이상	31.8 (90)
위탁부 교육 수준		위탁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6 (20)	중졸 이하	12.7 (35)
고졸	27.5 (64)	고졸	29.7 (82)
대졸(전문대 포함)	39.5 (92)	대졸(전문대 포함)	50.0 (138)
대학원 이상	24.5 (57)	대학원 이상	7.6 (21)
위탁부 취업상태		위탁모 취업상태	
취업 중	81.0 (188)	취업 중	41.8 (115)
휴직 중	4.7 (11)	휴직 중	9.1 (25)
학업 중	-	학업 중	1.5 (4)
퇴직했음	10.3 (24)	퇴직했음	11.6 (32)
미취업(주부 포함)	3.9 (9)	미취업(주부 포함)	36.0 (99)
위탁부 종교 유무		위탁모 종교 유무	
있음	72.0 (167)	있음	73.2 (202)
없음	28.0 (65)	없음	26.8 (7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설문에 참여한 위탁가정(283가구)에서 위탁부 234명, 위탁모 277명의 기본 특성임.

위탁가정 내 전체 자녀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인 위탁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영아 14.8%, 유아 19.2%였으며, 초등 저학년 14.0%, 15세 이상 24.5% 등으로 나타났다. 중증, 경증, 경계성 지능을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비율은 5.6%이었으며, 위탁기간의 경우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조사 대상 위탁가정 내 전체 자녀 기본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위탁가정 내 아동 전체	100.0 (833)	성별	
전체 아동 연령		남	53.4 (445)
영아(36개월 미만)	7.4 (62)	여	46.6 (388)
유아(3~5세)	9.4 (78)	위탁여부	
6~8세	7.7 (64)	위탁아동	43.7 (364)
9~11세	7.8 (65)	친자녀	56.3 (469)

구분	계(수)	구분	계(수)
12~14세	8.9 (74)	장애/경계선지능 여부	
15~17세	9.5 (79)	중증	1.6 (13)
18세 이상	49.3 (411)	경증	1.0 (8)
친자녀 연령		경계선지능	3.1 (26)
영아(36개월 미만)	1.7 (8)	해당없음	94.4 (786)
유아(3~5세)	1.7 (8)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기간	
6~8세	2.8 (13)	1년 내외	8.2 (30)
9~11세	3.6 (17)	1~3년 미만	32.1 (117)
12~14세	4.7 (22)	3~5년 미만	14.3 (52)
15~17세	4.7 (22)	5년 이상	45.3 (165)
18세 이상	80.8 (379)	아동 현재 다니는 기관	
위탁아동 연령		유치원	4.1 (34)
영아(36개월 미만)	14.8 (54)	어린이집	12.0 (100)
유아(3~5세)	19.2 (70)	초등학교	15.0 (125)
6~8세	14.0 (51)	중학교	8.0 (67)
9~11세	13.2 (48)	고등학교	9.8 (82)
12~14세	14.3 (52)	대안학교	0.7 (6)
15세 이상	24.5 (89)	홈스쿨링	1.4 (12)
		기타	48.9 (407)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가. 위탁부모 특성

위탁부모의 특성으로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 어느 정도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지지 정도, 그리고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위탁부모의 행복감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5.76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평균 3.20점이었고, 우울은 4점 척도로 평균 1.39점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탁아동 연령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2-1〉 위탁부모(주양육자)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단위: 점(명)

구분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6	0.94	3.20	0.39	1.39	0.42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6.04 _a	0.84	3.31 _a	0.32	1.24 _b	0.30	(57)
유아	5.79 _{ab}	0.92	3.20 _{ab}	0.43	1.41 _{ab}	0.46	(75)
초등학생	5.82 _{ab}	0.90	3.19 _{ab}	0.38	1.40 _{ab}	0.44	(79)
중·고등	5.45 _b	1.02	3.11 _b	0.38	1.48 _a	0.40	(72)
F	4.49**		3.01*		3.62*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5.07 _c	1.10	2.98 _b	0.42	1.62 _a	0.51	(57)
친인척	5.49 _b	0.98	3.11 _b	0.42	1.43 _b	0.48	(40)
비혈연	6.03 _a	0.74	3.28 _a	0.34	1.31 _b	0.34	(186)
F	29.71***		16.54***		13.0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04 _b	1.12	2.98 _b	0.45	1.66 _a	0.53	(64)
200-400만원 미만	6.01 _a	0.81	3.23 _a	0.35	1.32 _b	0.33	(93)
400-600만원 미만	5.93 _a	0.72	3.27 _a	0.34	1.32 _b	0.36	(85)
600만원 이상	5.98 _a	0.76	3.30 _a	0.33	1.30 _b	0.31	(41)
F	19.51***		10.24***		13.0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행복감은 7점 척도, 자아존중감 4점 척도, 우울은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위탁부모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2.78점, 의논, 푸념 상대 등의 정서적 도움은 2.62점, 가사, 육아, 간병 등의 생활의 도움은 2.18 점,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은 1.79점의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의 경우 경제적 도움 정도는 1.97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좀 더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I-2-2〉 위탁부모(주양육자) 주변 도움(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정보 제공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79	0.97	(283)	2.62	0.91	(282)	2.18	1.04	(282)	2.78	0.82	(282)
위탁아동 연령												
영아	1.58	0.89	(57)	2.72	0.73	(57)	2.30	0.96	(57)	2.79	0.70	(57)
유아	1.69	0.96	(75)	2.53	1.01	(74)	2.26	1.03	(74)	2.80	0.86	(74)
초등학생	1.84	0.99	(79)	2.65	0.97	(79)	2.18	1.07	(79)	2.82	0.86	(79)

구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정보 제공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중·고등 <i>F</i>	2.00 2.35	1.01	(72)	2.63 0.51	0.85	(72)	2.00 1.10	1.06	(72)	2.72 0.20	0.83	(72)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1.88	0.87	(57)	2.44	0.98	(57)	2.00	1.09	(57)	2.61	1.00	(57)
친인척	2.03	1.05	(40)	2.87	0.80	(39)	2.23	1.01	(39)	2.85	0.74	(39)
비혈연	1.71	0.98	(186)	2.63	0.89	(186)	2.22	1.03	(186)	2.82	0.77	(186)
<i>F</i>	2.04			2.69			1.04			1.5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7 _a	0.93	(64)	2.51 _a	0.91	(63)	2.10	1.07	(63)	2.67	0.93	(63)
200~400만원 미만	1.85 _{ab}	0.99	(93)	2.49 _a	0.96	(93)	2.19	1.02	(93)	2.83	0.80	(93)
400~600만원 미만	1.78 _{ab}	1.03	(85)	2.85 _a	0.88	(85)	2.20	1.06	(85)	2.79	0.83	(85)
600만원 이상	1.39 _b	0.80	(41)	2.63 _a	0.73	(41)	2.22	1.01	(41)	2.85	0.61	(41)
<i>F</i>	3.22*			2.75*			0.17			0.62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5$.

위탁부모의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58점으로,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44.5%)과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13.1%)이 합쳐서 과반수이었다. 하지만 위탁부모인 조부모는 3.07점, 친인척은 3.25점으로 비혈연 위탁부모보다 낮게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14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보고하였다.

〈표 III-2-3〉 위탁부모(주양육자) 현재 건강상태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5점 평균	계(수)
전체	1.4	9.5	31.4	44.5	13.1	3.58	100.0(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0.0	3.5	29.8	56.1	10.5	3.74	100.0(57)
유아	1.3	12.0	37.3	33.3	16.0	3.51	100.0(75)
초등학생	3.8	7.6	24.1	54.4	10.1	3.59	100.0(79)
중·고등	0.0	13.9	34.7	36.1	15.3	3.53	100.0(72)
$\chi^2(df)/F$			20.18(12)			0.8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3	24.6	36.8	24.6	8.8	3.07 _b	100.0(57)
친인척	2.5	15.0	45.0	30.0	7.5	3.25 _b	100.0(40)
비혈연	0.0	3.8	26.9	53.8	15.6	3.81 _a	100.0(186)
$\chi^2(df)/F$			46.24(8)***			21.31***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5점 평균	계(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7	21.9	35.9	29.7	7.8	3.14 _b	100.0(64)
200~400만원 미만	1.1	7.5	25.8	48.4	17.2	3.73 _a	100.0(93)
400~600만원 미만	0.0	5.9	30.6	47.1	16.5	3.74 _a	100.0(85)
600만원 이상	0.0	2.4	39.0	53.7	4.9	3.61 _a	100.0(41)
$\chi^2(df)/F$			32.00(12)**			7.6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위탁아동 특성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과의 애착에 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77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애착은 좋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탁아동의 연령, 성별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애착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신체발달 및 성장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신체발달 및 성장 정도는 평균 2.28점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 및 성장 점수는 평균 2점대 초반으로 신체발달 및 성장이 보통이거나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의 연령, 성별 및 가구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언어 발달은 평균 2.27점으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 점수는 평균 2점대 초반으로 언어 발달이 보통이거나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언어발달 점수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위탁아동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위탁아동의 언어발달 점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위탁아동의 언어 점수가 영아 자녀의 언어 점수보다 높았고, 위탁가구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가구가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가구보다 위탁아동의 언어발달 점수를 낮게 보고하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집단에 어느 연령대의 아동이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사유로 보호받게 되었는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Ⅲ-2-4〉 위탁아동 발달 정도 1

단위: 점(명)

구분	애착			신체발달 및 성장			언어발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7	0.44	(129)	2.28	0.67	(280)	2.27	0.73	(278)
위탁아동 연령									
영아	3.81	0.47	(56)	2.42	0.65	(57)	2.04 _b	0.72	(55)
유아	3.73	0.40	(73)	2.21	0.74	(75)	2.19 _{ab}	0.85	(75)
초등학생	-	-	-	2.29	0.67	(76)	2.43 _a	0.62	(76)
중·고등	-	-	-	2.24	0.59	(72)	2.35 _{ab}	0.65	(72)
F	1.06			1.20			3.90**		
위탁아동 성별									
남	3.78	0.38	(61)	2.32	0.67	(149)	2.28	0.68	(148)
여	3.75	0.48	(68)	2.24	0.67	(131)	2.25	0.78	(130)
t	0.38			0.89			0.4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5	0.43	(24)	2.41	0.58	(64)	2.47 _b	0.62	(64)
200~400만원 미만	3.73	0.39	(39)	2.20	0.70	(92)	2.29 _{ab}	0.72	(90)
400~600만원 미만	3.81	0.52	(40)	2.28	0.69	(83)	2.18 _{ab}	0.78	(83)
600만원 이상	3.78	0.38	(26)	2.29	0.68	(41)	2.07 _a	0.72	(41)
F	0.21			1.26			3.1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위탁부모가 응답하였으며,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인지발달 정도 및 사회·정서발달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각각 평균 2.31점, 2.30점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에서 모두 위탁아동이 어릴수록 점수를 더 높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위탁부모의 주관적인 응답으로 아동이 성장할수록 학교공부, 또래관계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표 Ⅲ-2-5〉 위탁아동 발달 정도 2

단위: 점(명)

구분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1	0.70	(275)	2.30	0.71	(279)
위탁아동 연령						
영아	2.56 _a	0.60	(54)	2.50 _a	0.60	(56)
유아	2.35 _{ab}	0.67	(74)	2.40 _a	0.70	(75)
초등학생	2.26 _{ab}	0.70	(76)	2.20 _a	0.77	(76)
중·고등	2.13 _b	0.75	(71)	2.17 _a	0.71	(72)
F	4.16**			3.41*		

구분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위탁아동 성별						
남	2.31	0.68	(146)	2.27	0.72	(148)
여	2.31	0.73	(129)	2.34	0.70	(131)
t	-0.02			-0.8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49	0.59	(63)	2.42	0.59	(64)
200~400만원 미만	2.24	0.71	(89)	2.24	0.74	(91)
400~600만원 미만	2.24	0.75	(82)	2.23	0.75	(83)
600만원 이상	2.32	0.72	(41)	2.41	0.74	(41)
F	2.01			1.46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위탁부모가 응답하였으며,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위탁아동의 건강상태는 평균 4.15점으로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위탁아동의 건강상태 정도를 위탁아동의 연령, 성별, 위탁부모와 아동의 관계 및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 중·고등학생인 경우보다 건강상태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행복감에 관하여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위탁아동의 행복감은 평균 5.84점이었으며,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탁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보다 행복감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위탁부모가 친인척이거나 비혈연인 경우가 조부모인 경우보다 위탁아동의 행복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위탁아동의 행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강현아 외, 2019: 85)에서는 아동이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고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발달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주관적 응답이며,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위탁아동의 행복감 등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상태나 발달 정도를 어린 연령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표 Ⅲ-2-6〉 위탁아동 건강상태 및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건강상태	행복감	(수)
전체	4.15	5.84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4.33 _a	6.30 _a	(57)
유아	4.15 _{ab}	6.04 _{ab}	(75)
초등학생	4.23 _{ab}	5.81 _b	(79)
중·고등	3.92 _b	5.31 _c	(72)
F	3.31*	15.46***	
위탁아동 성별			
남	4.18	5.91	(151)
여	4.11	5.77	(132)
t	0.68	1.27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25	5.46 _b	(57)
친인척	4.18	5.90 _a	(40)
비혈연	4.11	5.95 _a	(186)
F	0.61	6.2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28	5.48 _c	(64)
200~400만원 미만	4.08	5.75 _{bc}	(93)
400~600만원 미만	4.09	6.02 _{ab}	(85)
600만원 이상	4.22	6.22 _a	(41)
F	1.07	7.0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위탁부모가 응답하였으며, 건강상태는 5점척도, 행복감은 7점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지와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기관 적응의 어려움과 또래관계 어려움 정도는 각 평균 1.85점, 1.84점이었다. 위탁아동의 기관적응 및 또래관계 어려움 정도는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영아에 비해 학령기 아동인 경우에 기관(학교) 적응 및 또래관계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주양육자)와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은 2.11점, 학령기 위탁아동의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은 2.34점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였다.

〈표 III-2-7〉 위탁아동 적응 어려움

단위: 점(명)

구분	기관적응 어려움	(수)	도래관계 어려움	(수)	주양육자 분리불안	(수)	학교공부 부담	(수)
전체	1.85	(278)	1.84	(277)	2.11	(130)	2.34	
위탁아동 연령								
영아	1.41 _b	(56)	1.49 _b	(55)	2.09	(56)	-	
유아	1.80 _{ab}	(74)	1.73 _{ab}	(74)	2.12	(74)	-	
초등학교	1.97 _a	(78)	2.00 _a	(78)	-		2.15	(79)
중·고등	2.13 _a	(70)	2.07 _a	(70)	-		2.55	(71)
F/t	7.63***		5.70***		-0.19		-2.72**	
위탁아동 성별								
남	1.86	(148)	1.81	(148)	2.14	(63)	2.28	(86)
여	1.85	(130)	1.88	(129)	2.07	(67)	2.42	(64)
t	0.11		-0.67		0.40		-0.95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0	(56)	1.82	(56)	2.00	(25)	2.29	(31)
친인척	1.82	(39)	1.77	(39)	1.94	(17)	2.36	(22)
비혈연	1.87	(183)	1.87	(182)	2.17	(88)	2.35	(97)
F	0.16		0.21		0.60		0.0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	(64)	1.78	(64)	2.00	(24)	2.33 _b	(40)
200~400만원 미만	1.92	(91)	1.89	(91)	1.95	(38)	2.39 _{ab}	(54)
400~600만원 미만	1.77	(83)	1.79	(82)	2.21	(42)	2.07 _b	(42)
600만원 이상	1.90	(40)	1.95	(40)	2.27	(26)	3.00 _a	(14)
F	0.45		0.45		0.87		3.9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1$, *** $p < .001$.

위탁이후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3개월 미만인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6개월 미만 18.4%, 1년 이상 17.0%, 6~12개월 미만 9.9%, 아직도 적응 중 4.3%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연령, 성별,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위탁아동이 영아일 때 적응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성별이나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8〉 위탁 이후 적응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아직 적응 중	계(수)
전체	50.4	18.4	9.9	17.0	4.3	100.0(282)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아직 적응 중	계(수)
위탁아동 연령						
영아	66.7	17.5	10.5	1.8	3.5	100.0(57)
유아	48.6	23.0	13.5	13.5	1.4	100.0(74)
초등학생	41.8	13.9	11.4	27.8	5.1	100.0(79)
중·고등	48.6	19.4	4.2	20.8	6.9	100.0(72)
$\chi^2(df)$	26.85(12)**					
위탁아동 성별						
남	53.6	15.2	8.6	18.5	4.0	100.0(151)
여	46.6	22.1	11.5	15.3	4.6	100.0(131)
$\chi^2(df)$	3.58(4)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63.2	17.5	1.8	10.5	7.0	100.0(57)
친인척	53.8	20.5	7.7	15.4	2.6	100.0(39)
비혈연	45.7	18.3	12.9	19.4	3.8	100.0(186)
$\chi^2(df)$	13.87(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위탁아동이 현재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부모의 학대/방임이 1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19.1%, 미혼모부/혼외출생 17.0%, 부나 모의 사망 9.9%, 부모의 별거/가출 및 시설 의뢰가 동일하게 7.8%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연령, 성별,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먼저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방임과 미혼모부/혼외출생으로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보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위탁부모가 조부모이거나 친인척인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현재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혈연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방임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Ⅲ-2-9〉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전체	7.8	19.1	9.9	1.4	4.6	2.1	3.2	19.4	17.0	2.8	7.8	4.2	0.7	100.0(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3.5	8.8	1.8	0.0	5.3	0.0	7.0	36.8	22.8	5.3	5.3	1.8	1.8	100.0(57)
유아	8.0	21.3	5.3	0.0	5.3	2.7	2.7	20.0	20.0	2.7	6.7	5.3	0.0	100.0(75)
초등학생	7.6	16.5	11.4	1.3	3.8	1.3	2.5	15.2	16.5	2.5	15.2	6.3	0.0	100.0(79)
중·고등	11.1	27.8	19.4	4.2	4.2	4.2	1.4	9.7	9.7	1.4	2.8	2.8	1.4	100.0(7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chi^2(df)$	65.48(36)**													
위탁아동 성별														
남	7.3	18.5	13.9	2.0	2.6	2.0	3.3	16.6	19.2	2.6	6.6	4.6	0.7	100.0(151)
여	8.3	19.7	5.3	0.8	6.8	2.3	3.0	22.7	14.4	3.0	9.1	3.8	0.8	100.0(132)
$\chi^2(df)$	12.33(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2.3	35.1	10.5	5.3	8.8	1.8	3.5	5.3	12.3	0.0	1.8	1.8	1.8	100.0(57)
친인척	12.5	25.0	27.5	0.0	7.5	0.0	5.0	12.5	5.0	2.5	0.0	2.5	0.0	100.0(40)
비혈연	5.4	12.9	5.9	0.5	2.7	2.7	25.3	21.0	3.8	11.3	5.4	0.5		100.0(186)
$\chi^2(df)$	78.42(2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① 부모의 별거/가출, ② 부모의 이혼, ③ 부나 모의 사망, ④ 부모 모두 사망, ⑤ 부모 수감, ⑥ 부모 실직/빈곤, ⑦ 부모 질병, ⑧ 부모의 학대/방임, ⑨ 미혼모·부·혼외출생, ⑩ 부모 장애, ⑪ 시설 의뢰, ⑫ 기타, ⑬ 모름

** $p < .01$, *** $p < .001$.

현재의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위탁가정이 되려고 지원하여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으나 혈연관계인 아동의 사정에 의해서가 23.0%, 아동 사정을 알고 자원하여서 19.8%, 아동이 함께 살다가 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됨 16.3%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위탁아동이 초등학생 이하 연령인 경우에는 위탁가정이 되려고 자원한 경우가 많았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아동과 함께 살다가 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부모와 친인척인 경우에는 아동과 함께 살다가 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된 것이 두 번째로 많은 이유로 나타났고, 비혈연인 경우에도 12.9% 정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혈연관계인 아동의 사정의 의해서가 가장 많은 이유였고, 그 외 소득 집단에서는 위탁가정이 되려고 자원한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I-2-10〉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

단위: %(명)

구분	위탁가정이 아동 사정을 준비되지 않았으나 아동과 함께 살다가 되려고 알고 혈연관계인 아동의 사정에 의해서					기타	계(수)
	자원하여서	자원하여서	사정에 의해서	받게됨			
전체	41.0	19.8	23.0	16.3	-		100.0(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66.7	12.3	17.5	3.5	-		100.0(57)

구분	위탁가정이 아동 사정을 준비되지 않았으나 아동과 함께 살다가 되려고 자원하여서	알고 자원하여서	혈연관계인 아동의 사정에 의해서	가정위탁지원 받게됨	기타	계(수)
유아	40.0	16.0	32.0	12.0	-	100.0(75)
초등학생	41.8	24.1	16.5	17.7	-	100.0(79)
중·고등	20.8	25.0	25.0	29.2	-	100.0(72)
$\chi^2(df)$			39.22(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3	5.3	64.9	24.6	-	100.0(57)
친인척	2.5	7.5	67.5	22.5	-	100.0(40)
비혈연	60.2	26.9	-	12.9	-	100.0(186)
$\chi^2(df)$			190.17(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8	7.8	56.3	28.1	-	100.0(64)
200~400만원 미만	43.0	19.4	20.4	17.2	-	100.0(93)
400~600만원 미만	56.5	28.2	4.7	10.6	-	100.0(85)
600만원 이상	56.1	22.0	14.6	7.3	-	100.0(41)
$\chi^2(df)$			92.31(9)***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3.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가.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

1)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영유아 위탁부모와 학령기 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서로 다른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영유아 위탁부모의 경우 상호작용 역량 4.38점, 인지적 역량 4.18점, 정서적 역량 4.07점, 양육효능감 3.75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위탁 부모보다 영아 위탁부모가 인지적 역량과 양육효능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남아를 보호양육 중인 위탁부모의 점수가 여아를 보호양육 중인 위탁부모보다 높았다. 또한 인지적 역량은 비혈연 위탁부모일 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I-3-1〉 영유아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단위: 점(명)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38	0.48	4.18	0.60	3.75	0.61	4.07	0.46	(132)
위탁아동 연령									
영아	4.41	0.44	4.36	0.50	3.87	0.55	4.09	0.46	(57)
유아	4.35	0.51	4.05	0.63	3.65	0.64	4.05	0.47	(75)
<i>t</i>	0.75		3.03**		2.13*		0.55		
위탁아동 성별									
남	4.47	0.47	4.30	0.54	3.92	0.63	4.19	0.48	(64)
여	4.29	0.48	4.07	0.63	3.58	0.55	3.95	0.42	(68)
<i>t</i>	2.11*		2.26*		3.36**		3.09**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4.31	0.51	3.91 _a	0.83	3.63	0.76	3.99	0.55	(26)
친인척	4.38	0.47	4.08 _a	0.74	3.64	0.77	4.17	0.45	(18)
비혈연	4.40	0.48	4.29 _a	0.44	3.80	0.52	4.07	0.44	(88)
<i>F</i>	0.31		4.59*		1.10		0.7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33	0.53	3.93 _a	0.78	3.59	0.82	4.01	0.56	(24)
200~400만원 미만	4.32	0.49	4.08 _a	0.62	3.70	0.54	4.08	0.45	(39)
400~600만원 미만	4.39	0.49	4.33 _a	0.45	3.84	0.55	4.07	0.46	(42)
600만원 이상	4.47	0.41	4.32 _a	0.48	3.80	0.56	4.10	0.42	(27)
<i>F</i>	0.59		3.31*		0.98		0.1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5점 척도임.

* $p < .05$, ** $p < .01$.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상호작용 역량 4.08점, 인지적 역량 4.04점, 정서적 역량 3.90점, 양육효능감 3.58점으로 영유아기 위탁부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의 경우 비혈연 위탁부 모일수록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표 III-3-2〉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단위: 점(명)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8	0.57	4.04	0.53	3.58	0.61	3.90	0.51	(151)
위탁아동 연령									
초등학교	4.14	0.56	4.11	0.44	3.56	0.59	3.92	0.50	(79)
중·고등	4.00	0.56	3.97	0.61	3.60	0.63	3.88	0.53	(72)
<i>t</i>	1.53		1.54		-0.35		0.50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위탁아동 성별									
남	4.09	0.55	4.04	0.55	3.60	0.56	3.95	0.50	(87)
여	4.06	0.59	4.05	0.51	3.56	0.67	3.83	0.52	(64)
<i>t</i>	0.35		-0.14		0.42		1.37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4.07	0.68	3.87 _a	0.64	3.44	0.84	3.77 _a	0.62	(31)
친인척	3.76	0.52	3.85 _a	0.59	3.43	0.54	3.70 _a	0.47	(22)
비혈연	4.15	0.52	4.14 _a	0.46	3.66	0.53	3.98 _a	0.47	(98)
<i>F</i>	4.36*		4.86**		2.27		3.8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98	0.66	3.87	0.67	3.49	0.79	3.82	0.62	(40)
200~400만원 미만	4.15	0.47	4.11	0.47	3.65	0.52	3.96	0.44	(54)
400~600만원 미만	4.13	0.57	4.13	0.39	3.66	0.55	3.90	0.51	(43)
600만원 이상	3.93	0.59	4.00	0.65	3.35	0.50	3.87	0.47	(14)
<i>F</i>	0.03		0.78		0.87		0.75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일부 분석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따라 사후검정(Scheffe)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다음으로 학령기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높을수록 그리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낮을수록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함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 3.76점, 문제형 의사소통 2.03점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3〉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단위: 점(명)

구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6	0.50	2.03	0.63	(150)
위탁아동 연령					
초등학교	3.79	0.53	1.96	0.59	(79)
중·고등	3.71	0.46	2.10	0.66	(71)
<i>t</i>	1.00		-1.34		
위탁아동 성별					
남	3.77	0.49	2.06	0.64	(86)
여	3.74	0.52	1.98	0.61	(64)
<i>t</i>	0.33		0.79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3.71	0.57	2.23	0.73	(31)

구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인척	3.70	0.56	2.14	0.61	(22)
비혈연	3.78	0.47	1.94	0.58	(97)
<i>F</i>	0.44		3.0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4	0.60	2.17	0.72	(40)
200~400만원 미만	3.77	0.46	2.00	0.61	(54)
400~600만원 미만	3.74	0.52	2.00	0.59	(42)
600만원 이상	3.78	0.32	1.82	0.45	(14)
<i>F</i>	0.06		1.25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양육 어려움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양육부담에 대해 위탁부모는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신체적 부담은 2.18점, 정서적 부담은 2.12점, 사회적 고립은 1.79점, 경제적 부담은 2.22점, 가족관계 어려움은 1.76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다. 위탁아동이 현재 유아인 경우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의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3-4〉 위탁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

단위: 점(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8	0.79	2.12	0.75	1.79	0.68	2.22	0.84	1.76	0.67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2.28 _{ab}	0.73	1.98	0.77	1.70	0.57	1.86 _c	0.61	1.63	0.62	(57)
유아	2.39 _a	0.82	2.16	0.77	1.83	0.76	2.00 _{bc}	0.84	1.89	0.76	(75)
초등학생	2.14 _{ab}	0.76	2.09	0.72	1.77	0.66	2.35 _{ab}	0.89	1.68	0.59	(79)
중·고등	1.93 _b	0.76	2.21	0.73	1.85	0.69	2.51 _a	0.82	1.82	0.66	(72)
<i>F</i>	4.72 ^{**}		1.10		0.59		8.72 ^{***}		2.27		
위탁아동 성별											
남	2.12	0.74	2.07	0.72	1.74	0.64	2.15	0.82	1.75	0.70	(151)
여	2.25	0.83	2.17	0.78	1.85	0.71	2.29	0.86	1.78	0.62	(132)
<i>t</i>	-1.40		-1.22		-1.32		-1.35		-0.40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2.04	0.94	2.07	0.86	1.88	0.83	2.74 _a	0.92	1.86	0.74	(57)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인척 비혈연 <i>F</i>	2.25 2.21 1.27	0.74 0.74	2.25 2.10 0.78	0.67 0.72	1.85 1.75 0.91	0.74 0.61	2.25 _b 2.05 _b 16.21***	0.90 0.74	1.90 1.70 2.19	0.67 0.64	(40) (18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4 _b	0.85	2.05	0.76	1.84	0.76	2.77 _a	0.85	1.81	0.75	(64)
200~400만원 미만	2.17 _{ab}	0.75	2.12	0.69	1.82	0.71	2.13 _a	0.70	1.73	0.57	(93)
400~600만원 미만	2.34 _a	0.76	2.19	0.79	1.73	0.64	2.04 _a	0.85	1.76	0.67	(85)
600만원 이상 <i>F</i>	2.24 _{ab} 3.41*	0.73	2.07 0.49	0.75	1.78 0.41	0.52	1.93 _b 14.06***	0.75	1.76 0.19	0.73	(41)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2.53점, '위탁보호 종료 후 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2.44점,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2.19점,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2.15점 등으로 응답하였다.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은 위탁아동이 유아인 경우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은 위탁아동이 학령기인 경우 더욱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위탁아동이 여아인 경우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은 조부모가 다른 위탁부모들에 비해 더욱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표 Ⅲ-3-5〉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전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1.79	1.95	2.15	2.44	2.53	2.01	2.19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1.71	1.70 _b	1.95	2.09 _b	2.45	1.89	2.27	(57)
유아	1.87	2.16 _a	2.33	2.33 _{ab}	2.53	2.07	2.11	(75)
초등학생	1.71	1.96 _{ab}	2.10	2.57 _a	2.63	2.00	2.35	(79)
중·고등	1.86	1.90 _{ab}	2.18	2.68 _a	2.50	2.07	2.04	(72)
<i>F</i>	0.92	3.62*	1.92	4.94**	0.43	0.57	1.8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위탁아동 성별								
남	1.72	1.90	2.05	2.42	2.41	1.92	2.13	(151)
여	1.87	2.00	2.27	2.47	2.68	2.12	2.26	(132)
t	-1.61	-1.02	-2.04*	-0.42	-2.38*	-1.97*	-1.1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68	2.00	2.34 _a	2.71	2.61	2.21	2.04	(57)
친인척	1.80	1.75	1.80 _b	2.35	2.35	1.85	2.03	(40)
비혈연	1.82	1.97	2.17 _{ab}	2.38	2.55	1.99	2.27	(186)
F	0.75	1.37	4.01*	2.88	0.91	2.34	2.3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3	2.00	2.36	2.78 _a	2.67	2.08	2.02	(64)
200~400만원 미만	1.78	1.86	2.04	2.32 _a	2.36	1.92	2.15	(93)
400~600만원 미만	1.82	1.93	2.16	2.38 _a	2.52	2.02	2.25	(85)
600만원 이상	1.83	2.10	2.05	2.32 _a	2.73	2.10	2.43	(41)
F	0.20	0.92	1.61	3.63*	2.04	0.58	1.9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① OO의 문제행동이 위탁 때문인 것 같아 걱정, ② OO와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③ OO와 OO의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④ 위탁보호 종료 후 OO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⑤ 위탁가정이나가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⑥ 주변 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⑦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3)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를 제외한 위탁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2.48점, '위탁아동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 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2.24점, '위탁아동이 위탁사실로 비뚤어질까봐 두려움' 2.17점 등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이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가족들이 위탁아동과 가까워지지 못함'은 위탁아동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위탁아동이 위탁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고민이나 두려움은 위탁아동이 유아기인 경우 더 높게 보고하였다. 또한 비혈연 위탁부모인 경우 친인척에 비해서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표 III-3-6〉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친인척, 비혈연 위탁가정

단위: 점(명)

구분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수)
전체	1.37	1.31	1.36	1.36	1.73	1.28	2.48	2.24	2.17	(177)
위탁아동 연령 영아	1.14 _b	1.14 _b	1.14 _a	1.35	1.73	1.10 _a	2.63	2.51 _{ab}	2.41 _{ab}	(49)

구분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수)
유아	1.37 _{ab}	1.34 _{ab}	1.43 _a	1.33	1.63	1.33 _a	2.43	2.57 _a	2.53 _a	(47)
초등학생	1.43 _{ab}	1.30 _{ab}	1.41 _a	1.38	1.76	1.37 _a	2.52	1.93 _{bc}	1.86 _{bc}	(44)
중·고등	1.49 _a	1.44 _a	1.44 _a	1.39	1.78	1.30 _a	2.37	1.84 _c	1.76 _c	(37)
<i>F</i>	3.30*	2.73*	3.14*	0.11	0.32	2.78*	0.58	5.78***	6.67***	
위탁아동 성별										
남	1.32	1.27	1.34	1.30	1.65	1.27	2.36	2.27	2.13	(98)
여	1.42	1.36	1.39	1.44	1.83	1.30	2.64	2.22	2.22	(79)
<i>t</i>	-1.27	-1.19	-0.74	-1.67	-1.52	-0.36	-1.90	0.30	-0.53	
위탁아동 관계										
친인척	1.42	1.32	1.45	1.29	1.58	1.32	2.00	1.90	1.90	(31)
비혈연	1.36	1.31	1.34	1.38	1.76	1.27	2.59	2.32	2.23	(146)
<i>t</i>	0.37	0.04	-1.01	-0.7	-1.34	-0.2	9.45**	-3.72	-2.5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5	1.41	1.50	1.32	1.59	1.32	2.36	2.21	2.05	(19)
200~400만원 미만	1.40	1.31	1.35	1.40	1.71	1.31	2.39	2.10	2.06	(62)
400~600만원 미만	1.31	1.27	1.37	1.34	1.69	1.25	2.62	2.19	2.19	(68)
600만원 이상	1.37	1.34	1.29	1.37	1.94	1.26	2.45	2.71	2.43	(28)
<i>F</i>	0.42	0.49	0.65	0.19	0.96	0.24	0.74	2.22	0.8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⑧ OO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⑨ 가족들이 OO와 가까워지지 못함, ⑩ OO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⑪ 친자녀와 OO를 (역)차별하게 됨, ⑫ OO를 신경쓰느라 친자녀에게 미안함, ⑬ 친자녀와 OO이 사이가 좋지 않음, ⑭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⑮ OO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⑯ OO가 위탁사실로 베풀어질까봐 두려움

3)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위탁아동 양육 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 부모는 위탁보호 종료 후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II-3-7>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수)
전체	3.2	2.1	8.8	17.3	15.2	2.1	9.2	-	-	1.8	0.7	3.2	-	4.2	8.5	4.2	100.0(28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	1.8	8.8	26.3	19.3	5.3	1.8	-	-	0.0	0.0	1.8	-	0.0	5.3	7.0	100.0(57)
친인척	5.0	5.0	2.5	40.1	2.5	2.5	10.0	-	-	0.0	0.0	5.0	-	0.0	5.0	5.0	100.0(40)
비혈연	3.2	1.6	10.2	9.7	14.5	1.1	11.3	-	-	2.7	1.1	3.2	-	6.5	10.2	3.2	100.0(186)
$\chi^2(df)$	60.20(3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2) ① ○○의 문제행동이 위탁 때문인 것 같아 걱정이 됨, ② ○○와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미안함, 어색함 등), ③ ○○와 ○○의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④ 위탁보호 종료 후 ○○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⑤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⑥ 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⑦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⑧ ○○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⑨ 가족들이 ○○와 가까워지지 못함, ⑩ ○○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⑪ 친자녀와 ○○을 (역)차별하게 됨, ⑫ ○○을 신경 쓰느라 친자녀에게 미안함, ⑬ 친자녀와 ○○이 사이가 좋지 않음, ⑭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⑮ (○○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⑯ (○○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위탁사실로 베풀어질까봐 두려움

*** $p < .001$.

3) 위탁부모 역할

위탁부모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1.6%),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32.5%가 응답하였다. 조부모 혹은 친인척 위탁부모는 비혈연 위탁부모에 비해 ‘위탁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기관 적응, 또래관계 등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와 유사하게 ‘위탁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기관 적응, 또래관계 등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많은 편이었다.

〈표 III-3-8〉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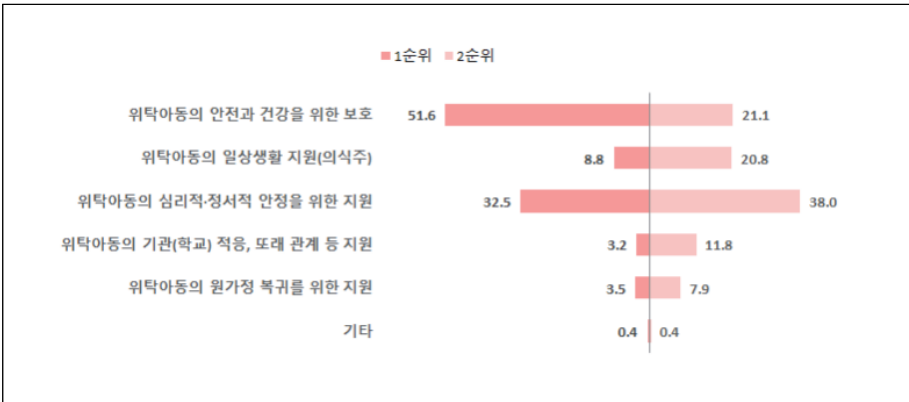
구분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	위탁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위탁아동의 기관(학교) 적응, 또래 관계 등 지원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기타	계(수)
전체	51.6	8.8	32.5	3.2	3.5	0.4	100.0(28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0.9	14.0	22.8	8.8	3.5	0.0	100.0(57)
친인척	50.0	15.0	22.5	7.5	5.0	0.0	100.0(40)
비혈연	52.2	5.9	37.6	0.5	3.2	0.5	100.0(186)
$\chi^2(df)$			22.47(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0.0	14.1	21.9	10.9	3.1	0.0	100.0(64)
200~400만원 미만	49.5	7.5	38.7	0.0	4.3	0.0	100.0(93)
400~600만원 미만	47.1	9.4	38.8	2.4	1.2	1.2	100.0(85)
600만원 이상	68.3	2.4	22.0	0.0	7.3	0.0	100.0(41)
$\chi^2(df)$			34.91(15)**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그림 Ⅲ-3-1]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4) 양육 실제

위탁아동의 주양육자는 위탁모가 95.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탁아동의 보조 양육자로는 위탁부가 60.9%로 가장 많았고, 위탁부모의 친자녀가 17.2%로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인 경우 위탁아동 양육을 또 다른 친인척이 도와주거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비현연 위탁부모보다 많은 편이었다. 반면 비현연 위탁부모는 보조양육자로 위탁부를 응답한 비율이 71.8%로 대부분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탁부모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9〉 위탁아동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위탁모	위탁부	위탁아동의 손위형제자매	위탁부모의 친자녀	친인척	기타	계(수)
주 양육자 전체	95.1	3.9	-	0.4	0.4	0.4	100.0(28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Ⅲ-3-10〉 위탁아동의 보조양육자

단위: %(명)

구분	위탁모	위탁부	위탁아동의 손위형제자매	위탁부모의 친자녀	친인척	기타	양육 도와주는 사람 없음	계(수)
전체	2.9	60.9	2.2	17.2	7.7	3.6	5.5	100.0(274)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6	40.0	5.5	16.4	14.5	1.8	18.2	100.0(55)
친인척	2.6	39.5	2.6	18.4	18.4	7.9	10.5	100.0(38)

구분	위탁모	위탁부	위탁아동의 손위형제자매	위탁부모의 친자녀	친인척	기타	양육 도와주는 사람 없음	계(수)
비월연 $\chi^2(df)$	2.8	71.8	1.1	17.1	3.3	3.3	0.6	100.0(181)
				53.60(1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일 6.47시간, 주말 11.01시간이었고, 위탁아동이 어른 없이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은 평일 0.45시간, 주말 0.8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볼 수 있겠다.

〈표 III-3-11〉 주중-주말 하루 기준 위탁아동 혼자 있거나 같이 있는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위탁아동과 함께 지낸 시간				위탁아동 혼자 있는 시간			
	평일	(수)	주말	(수)	평일	(수)	주말	(수)
전체	6.47	(283)	11.01	(282)	0.45	(280)	0.80	(280)
위탁아동 연령								
영아	10.10 _a	(57)	13.44 _a	(57)	0.03 _b	(56)	0.05 _b	(57)
유아	6.87 _b	(75)	12.57 _a	(74)	0.08 _b	(75)	0.20 _b	(75)
초등학생	5.68 _b	(79)	10.66 _b	(79)	0.63 _{ab}	(79)	0.97 _{ab}	(79)
중·고등	4.06 _c	(72)	7.85 _c	(72)	0.99 _a	(70)	1.86 _a	(69)
F	37.08***		28.23***		7.92***		11.87***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79 _a	(57)	10.90	(57)	0.39	(56)	0.86	(56)
친인척	5.50 _a	(40)	10.06	(40)	0.48	(40)	0.78	(40)
비월연	6.89 _a	(186)	11.24	(185)	0.46	(184)	0.78	(184)
F	3.23*		1.23		0.06		0.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84	(64)	10.34	(64)	0.48	(63)	0.90	(63)
200~400만원 미만	6.46	(93)	10.77	(93)	0.45	(92)	0.91	(92)
400~600만원 미만	6.77	(85)	11.36	(85)	0.40	(84)	0.61	(84)
600만원 이상	6.88	(41)	11.86	(40)	0.52	(41)	0.76	(41)
F	0.88		1.28		0.09		0.38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일부 분석에서 F 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따라 사후검정(Scheffe)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3)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p < .05$, *** $p < .001$.

나. 가족관계

1) 위탁가정 가족관계

위탁가정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과 같은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의 응집성 및 유연성에 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가정의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은 각각 평균 4.18, 3.90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가족의 유연성은 응집성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위탁아동의 경우에 비해 가족의 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위탁부모가 비혈연인 경우가 조부모나 친인척인 경우에 비해 가족 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유연성도 비혈연의 경우가 조부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족의 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0만원 미만의 경우보다 가족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2〉 가족의 응집성 및 유연성

단위: 점(명)

구분	응집성		유연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8	0.54	3.90	0.58	(282)
위탁아동 연령					
영아	4.34 _a	0.48	4.02	0.49	(57)
유아	4.18 _{ab}	0.59	3.89	0.64	(75)
초등학교	4.16 _{ab}	0.52	3.91	0.59	(79)
중·고등	4.07 _b	0.52	3.81	0.55	(71)
F	2.90*		1.40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3.90 _b	0.65	3.62 _b	0.72	(57)
친인척	4.02 _b	0.52	3.82 _{ab}	0.56	(40)
비혈연	4.30 _a	0.46	4.01 _a	0.49	(185)
F	15.15***		11.29***		

구분	응집성		유연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90 _b	0.65	3.65 _b	0.71	(64)
200~400만원 미만	4.22 _a	0.47	3.97 _a	0.54	(92)
400~600만원 미만	4.33 _a	0.45	4.02 _a	0.46	(85)
600만원 이상	4.23 _a	0.50	3.91 _{ab}	0.54	(41)
F	9.07***		5.97***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2) 친부모와의 관계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30.4%,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위탁아동의 연령이나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없이 전반적으로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친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위탁 아동 패널연구(강현아·정익중·강현주·이화조·오세현, 2020: 91)에서도 원가정 만 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25.0%에 불과하였다.

〈표 III-3-13〉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단위: %(명)

구분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기타 (사망 등)	계(수)
전체	30.0	30.4	37.8	1.8	100.0(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19.3	36.8	42.1	1.8	100.0(57)
유아	34.7	26.7	38.7	0.0	100.0(75)
초등학생	32.9	30.4	34.2	2.5	100.0(79)
중·고등	30.6	29.2	37.5	2.8	100.0(72)
$\chi^2(df)$		6.68(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0.4	19.3	38.6	1.8	100.0(57)
친인척	45.0	30.0	25.0	0.0	100.0(40)
비혈연	23.7	33.9	40.3	2.2	100.0(186)
$\chi^2(df)$		4.15(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파악한 결과, 위탁아동이 친부모의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28.8%,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23.0%,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연령과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에는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아 이상인 경우에는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는 경우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위탁부모가 조부모와 친인척인 경우에는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비혈연인 경우에는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II-3-14〉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단위: %(명)

구분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계(수)
전체	28.8	13.9	34.3	23.0	100.0(274)
위탁아동 연령					
영아	16.1	5.4	23.2	55.4	100.0(56)
유아	28.8	12.3	31.5	27.4	100.0(73)
초등학생	33.8	15.6	40.3	10.4	100.0(77)
중·고등	33.8	20.6	39.7	5.9	100.0(68)
$\chi^2(df)$	53.48(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0.0	14.5	34.5	10.9	100.0(55)
친인척	35.9	25.6	25.6	12.8	100.0(39)
비혈연	23.9	11.1	36.1	28.9	100.0(180)
$\chi^2(df)$	18.61(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위탁아동이 친부모의 근황에 대해 알고 연락한다고 응답하였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위탁아동이 최근 1년간 친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실제로 만나고 있는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락만 주고받음 21.8%, 위탁부모를 통해 정보만 들음 6.9%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영유아인 경우에는 실제로 친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83% 이상으로 많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는 경우는

54.2%로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고 연락만 주고받는 경우는 41.7%로 다른 연령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15〉 (위탁아동이 친부모 근황에 대해 알고 연락하는 경우)최근 1년간 연락/만남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락만 주고받음	실제 만남	위탁부모를 통해 정보만 들음	계(수)
전체	21.8	71.3	6.9	100.0(87)
위탁아동 연령				
영아	-	83.3	16.7	100.0(12)
유아	13.0	87.0	-	100.0(23)
초등학생	21.4	67.9	10.7	100.0(28)
중·고등	41.7	54.2	4.2	100.0(24)
$\chi^2(df)$		13.93(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20.8	75.0	4.2	100.0(24)
친인척	26.7	66.7	6.7	100.0(15)
비혈연	20.8	70.8	8.3	100.0(48)
$\chi^2(df)$		0.71(4)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실제 만남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만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남 시 주로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가활동을 함께 함 32.8%, 친부모의 집에 다녀옴 29.9%, 잠시 대화만 나눔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6〉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실제로 만나는 경우)만남 시 하는 일

단위: %(명)

구분	잠시 대화만 나눔	함께 식사를 함	여가활동을 함께 함	친부모의 집에 다녀옴	기타	(수)
전체	19.4	49.3	32.8	29.9	11.9	(67)
위탁아동 연령						
영아	30.0	30.0	20.0	0.0	40.0	(10)
유아	21.1	57.9	42.1	26.3	15.8	(19)
초등학생	20.8	50.0	29.2	41.7	4.2	(24)
중·고등	7.1	50.0	35.7	35.7	0.0	(14)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0.5	57.9	36.8	26.3	10.5	(19)
친인척	18.2	54.5	45.5	36.4	9.1	(11)
비혈연	24.3	43.2	27.0	29.7	13.5	(3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2가지 중복응답임.

위탁아동의 친부모 만남 시 지원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24.7%,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23.9%,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7.3%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영유아에 비해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해서 친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친부모를 만나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 살펴보면, 위탁부모가 조부모와 친인척인 경우에는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친부모와 만나는 비율이 비혈연인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비율도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가 비혈연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 비혈연인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비율이 43.0%로 조부모나 친인척인 경우 각 6.1%, 3.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남 시 지원 방법

단위: %(명)

구분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가정위탁지원 센터에서 주선	별도의 노력 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23.9	7.3	30.4	24.7	13.8	100.0(247)
위탁아동 연령						
영아	16.7	0.0	44.4	18.5	20.4	100.0(54)
유아	31.3	1.6	40.6	17.2	9.4	100.0(64)
초등학생	19.4	11.9	26.9	31.3	10.4	100.0(67)
중·고등	27.4	14.5	11.3	30.6	16.1	100.0(62)
$\chi^2(df)$	37.99(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8.8	10.2	6.1	32.7	12.2	100.0(49)
친인척	36.4	15.2	3.0	39.4	6.1	100.0(33)
비혈연	17.0	4.8	43.0	19.4	15.8	100.0(165)
$\chi^2(df)$	56.76(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친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평균 2.15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다음으로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그리워 한다는 어려움이 평균 1.93점,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원망함 1.62점, 친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함 1.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2점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탁아동의 연령과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려움의 내용이 다소 상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에 비해 유아 이상의 연령에서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정도가 높았고,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교이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친부모를 원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위탁부모가 조부모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비혈연인 경우에 비해서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III-3-18〉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점(명)

구분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원망함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그리워함		친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됨		친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함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62	(252)	1.93	(251)	2.15	(247)	1.39	(245)
위탁아동 연령								
영아	1.15 _b	(47)	1.45 _b	(47)	1.89	(47)	1.24	(46)
유아	1.41 _b	(69)	1.93 _a	(69)	2.06	(69)	1.32	(68)
초등학교	1.81 _a	(69)	2.23 _a	(70)	2.34	(67)	1.45	(67)
중·고등	1.99 _a	(67)	1.97 _a	(65)	2.25	(64)	1.50	(64)
F	15.44***		7.81***		1.77		1.75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3	(54)	2.26 _a	(54)	2.43	(54)	1.43	(54)
친인척	1.64	(36)	2.11 _{ab}	(35)	2.15	(34)	1.41	(34)
비혈연	1.55	(162)	1.78 _b	(162)	2.06	(159)	1.37	(157)
F	2.62		6.87**		2.07		0.1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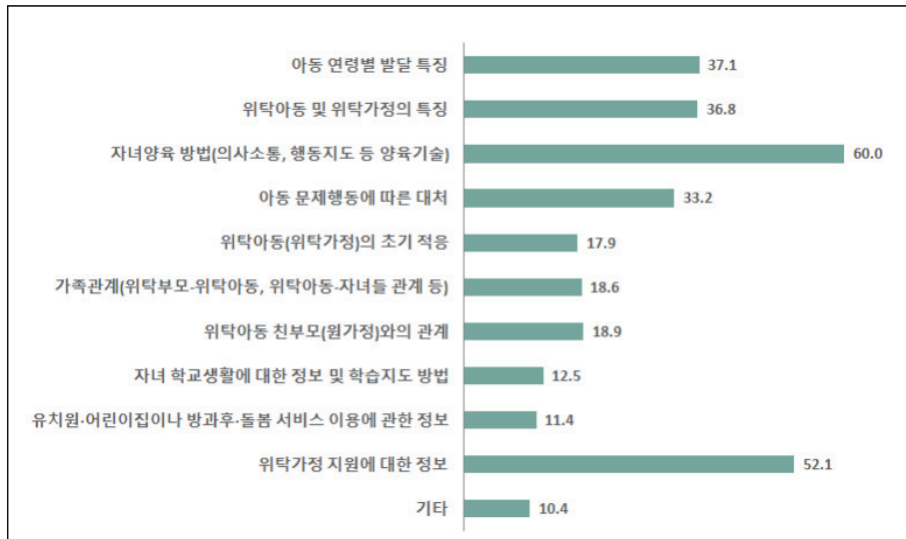
4.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가. 부모교육

위탁부모들이 가장 최근 참여한 예비위탁부모교육 혹은 보수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녀양육방법(60.0%),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52.1%),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37.1%),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36.8%),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33.2%) 등이 있었다.

[그림 Ⅲ-4-1] 부모교육-최근 참여한 교육의 내용

단위: %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중복응답임.

이상의 부모교육이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8%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4.7%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부분 부모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1〉 부모교육-실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됨	대체로 도움이 안됨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4점 평균	계(수)
전체	1.8	4.7	58.8	34.7	3.26	100.0(277)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일반가정위탁의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응답은 68.8%이었고, 길다는 응답은 21.1%, 짧다는 응답은 10.0%이었다. 비혈연 부모이거나 전문가정위탁부모인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 가정위탁부모에 비해서 현행 부모교육시간이 적정하거나 짧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4-2〉 부모교육-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의 적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짧다	적정하다	길다	계(수)
전체	10.0	68.8	21.1	100.0(27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	61.4	36.8	100.0(57)
친인척	2.5	67.5	30.0	100.0(40)
비혈연	14.3	71.4	14.3	100.0(182)
$\chi^2(df)$	24.07(4)***			
위탁유형				
전문가정위탁	17.4	72.5	10.1	100.0(69)
일반가정위탁	7.8	68.1	24.0	100.0(204)
일시가정위탁	0.0	50.0	50.0	100.0(6)
$\chi^2(df)$	13.16(4)*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위탁부모들은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25.7%),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20.9%), 자녀양육 방법(16.4%),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12.3%)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위탁아동의 연령이 영아인 경우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 방법'이나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인 경우 비혈연 위탁부모에 비해 '자녀양육 방법'이나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이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정위탁의 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Ⅲ-4-3〉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20.9	25.7	16.4	5.6	12.3	2.6	0.7	3.4	1.5	9.3	1.5	100.0(268)
위탁아동 연령												
영아	21.1	40.4	8.8	1.8	22.8	3.5	0.0	0.0	0.0	1.8	0.0	100.0(57)
유아	23.3	21.9	15.1	8.2	8.2	0.0	1.4	4.1	4.1	9.6	4.1	100.0(73)
초등학생	18.9	29.7	17.6	2.7	8.1	4.1	1.4	4.1	1.4	12.2	0.0	100.0(74)
중·고등	20.3	12.5	23.4	9.4	12.5	3.1	0.0	4.7	0.0	12.5	1.6	100.0(64)
$\chi^2(df)$	48.87(30)*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9.2	11.5	23.1	7.7	1.9	0.0	0.0	13.5	3.8	17.3	1.9	100.0(52)
친인척	18.9	10.8	32.4	2.7	16.2	2.7	0.0	2.7	0.0	13.5	0.0	100.0(37)
비혈연	21.8	33.0	11.2	5.6	14.5	3.4	1.1	0.6	1.1	6.1	1.7	100.0(179)
$\chi^2(df)$	60.71(20)***											
위탁유형												
전문가정위탁	20.3	39.1	11.6	4.3	13.0	5.8	1.4	0.0	0.0	4.3	0.0	100.0(69)
일반가정위탁	20.2	21.2	17.6	6.2	12.4	1.6	0.5	4.7	2.1	11.4	2.1	100.0(193)
일시가정위탁	50.0	1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6)
$\chi^2(df)$	31.61(20)*											

주: 1)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등), ⑦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⑪ 기타

2)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또한 위탁부모들은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녀양육 방법(28.3%),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21.0%),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12.1%)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는 이 외에도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비혈연 위탁부모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다.

〈표 Ⅲ-4-4〉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12.1	3.7	28.3	21.0	3.7	2.9	6.6	8.5	2.2	9.9	1.1	100.0(272)
위탁아동 연령												

III.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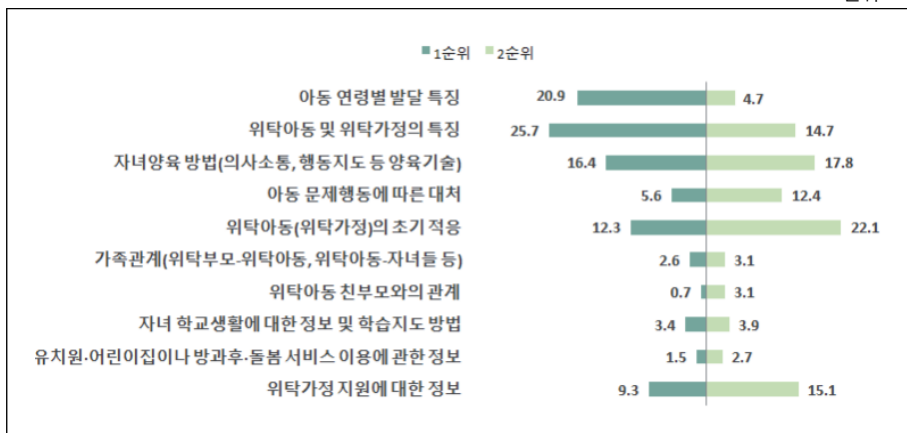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영아	21.1	1.8	24.6	22.8	7.0	3.5	7.0	3.5	1.8	5.3	1.8	100.0(57)
유아	13.5	6.8	21.6	23.0	2.7	4.1	9.5	6.8	4.1	6.8	1.4	100.0(74)
초등학생	10.4	2.6	36.4	24.7	2.6	1.3	5.2	5.2	1.3	10.4	0.0	100.0(77)
중·고등	4.7	3.1	29.7	12.5	3.1	3.1	4.7	18.8	1.6	17.2	1.6	100.0(64)
$\chi^2(df)$	39.90(30)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5	1.9	22.6	17.0	0.0	5.7	9.4	15.1	3.8	17.0	0.0	100.0(53)
친인척	13.2	5.3	21.1	18.4	2.6	0.0	5.3	15.8	0.0	18.4	0.0	100.0(38)
비혈연	13.3	3.9	31.5	22.7	5.0	2.8	6.1	5.0	2.2	6.1	1.7	100.0(181)
$\chi^2(df)$	33.09(20)*											
위탁유형												
전문가정위탁	11.4	2.9	34.3	31.4	1.4	4.3	5.7	4.3	1.4	2.9	0.0	100.0(70)
일반가정위탁	12.8	4.1	27.0	16.8	3.1	2.6	7.1	10.2	2.6	12.2	1.5	100.0(196)
일시가정위탁	0.0	0.0	0.0	33.3	50.0	0.0	0.0	0.0	0.0	16.7	0.0	100.0(6)
$\chi^2(df)$	37.29(20)*											

주: 1)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등), ⑦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⑪ 기타
2)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예비위탁부모교육 및 보수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그림 III-4-2], [그림 III-4-3]과 같다.

[그림 III-4-2]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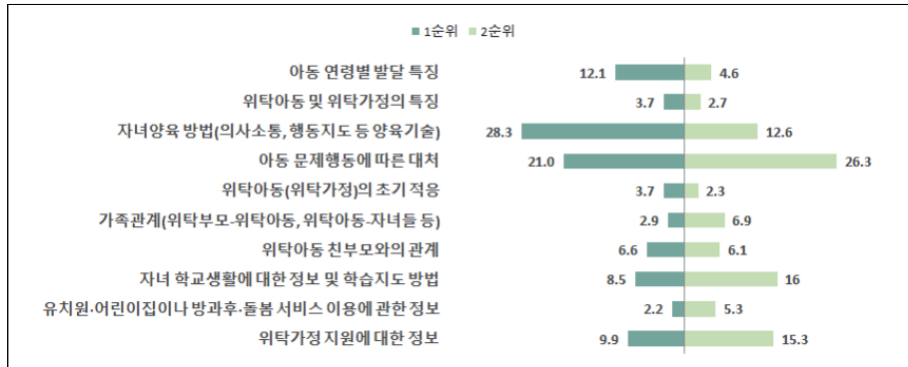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Ⅲ-4-3]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위탁아동 양육 지원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육아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43.4%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위탁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는 비혈연 부모에 비해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혈연 위탁부모는 자조모임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표 Ⅲ-4-5> 위탁아동 양육 시 도움 받는 곳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이나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동료, 이웃 등 가까운 지인	육아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가정위탁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 센터, 가족센터	주변 위탁가정, 자조모임	기타	계(수)
전체	11.0	19.6	12.5	43.4	2.1	6.8	4.6	100.0(281)
위탁아동 연령								
영아	12.3	17.5	24.6	36.8	3.5	3.5	1.8	100.0(57)
유아	10.7	26.7	9.3	38.7	0.0	8.0	6.7	100.0(75)
초등학생	11.4	19.0	10.1	44.3	3.8	7.6	3.8	100.0(79)
중·고등	10.0	14.3	8.6	52.9	1.4	7.1	5.7	100.0(70)
$\chi^2(df)$				20.56(18)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4.0	22.8	10.5	38.6	3.5	0.0	10.5	100.0(57)
친인척	17.5	25.0	5.0	40.0	2.5	0.0	10.0	100.0(40)
비혈연	8.7	17.4	14.7	45.7	1.6	10.3	1.6	100.0(184)
$\chi^2(df)$				34.37(1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위탁아동 양육 시 관련 지원 정책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지원 정책 인지 정도는 평균 2.79점, 활용 정도는 평균 2.83점이었다. 위탁부모의 위탁경험 기간이 길수록 인지 정도가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4-6〉 위탁아동 양육 시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점(명)

구분	지원정책 인지 정도	(수)	지원 정책 활용 정도	(수)
전체	2.79	(282)	2.83	(281)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2.74	(57)	2.93	(57)
친인척	2.68	(40)	2.75	(40)
비혈연	2.83	(185)	2.81	(184)
F	1.42		1.18	
위탁기간				
1년~2년 미만	2.79 _{ab}	(63)	2.75	(63)
2년~4년 미만	2.66 _b	(62)	2.73	(62)
4년~10년 미만	2.69 _b	(74)	2.86	(73)
10년 이상	2.96 _a	(83)	2.93	(83)
F	4.47 ^{**}		1.75	

주: 1) 4점 척도임.

2)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다음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위탁가정 지원제도 각각에 대한 위탁부모의 인지 여부, 제도의 필요성, 지원 받은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첫째, 지원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계비 지원(98.6%), 양육보조금 지원(98.2%), 상해보험료 지원(88.3%), 심리치료비 지원(85.9%), 자립정착금 지원(84.4%)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알고 있었으며,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전문아동 보호비, 일시위탁 보호비는 각각 58.8%, 47.3%만이 알고 있었다.

[그림 Ⅲ-4-4]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인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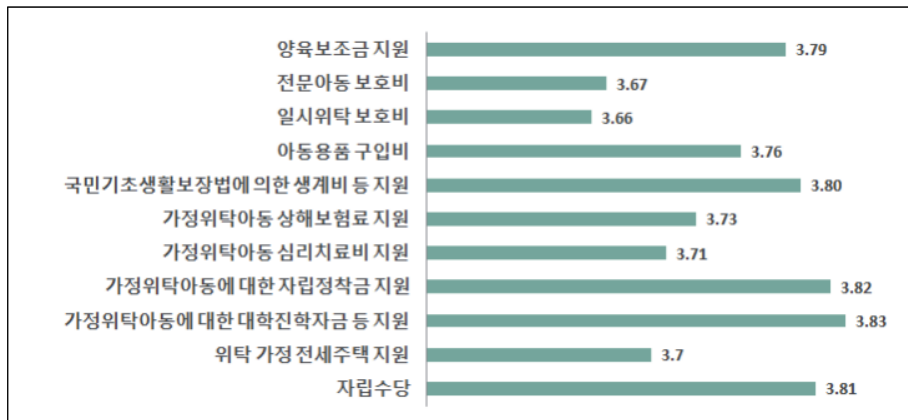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둘째,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에 대해 평균 3.66점 이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3.83점), 자립정착금 지원(3.82점), 자립수당(3.81점), 생계비 지원(3.80점), 양육보조금 지원(3.79점), 아동용품 구입비(3.76점) 등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Ⅲ-4-5]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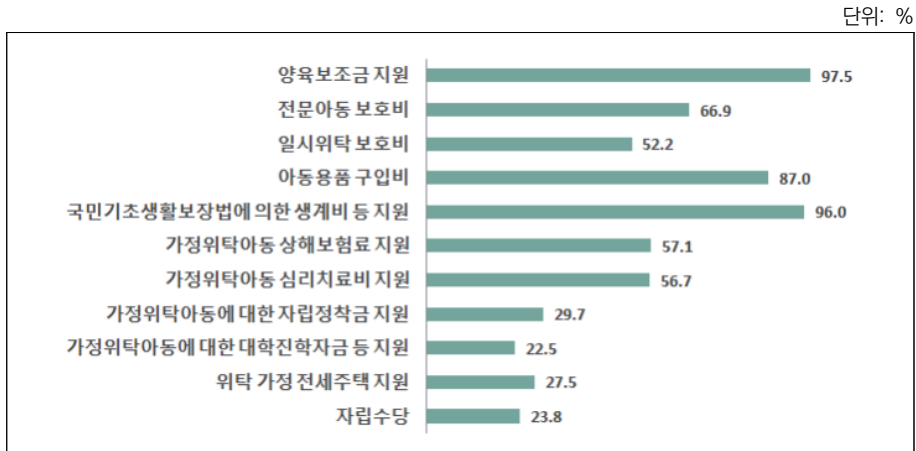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점 척도임.

셋째, 위탁가정 지원제도에 대해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각각의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양육보조금 지원 97.5%, 생계비 지원 96.0%, 아동용품 구입비 87.0% 등의 순으로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4-6]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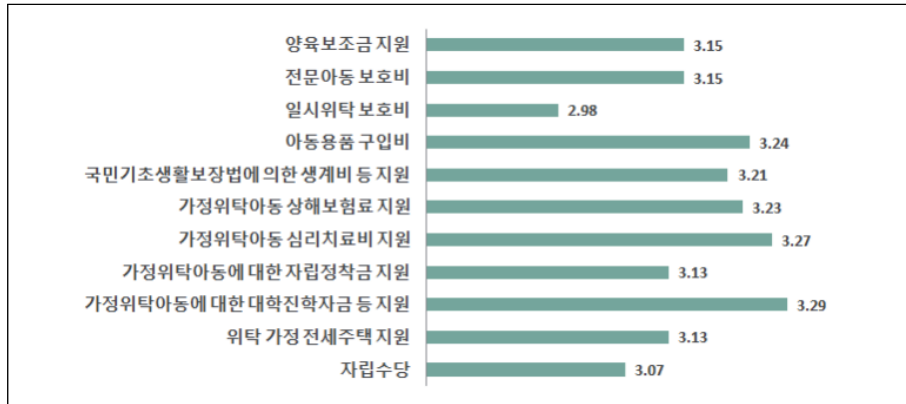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넷째,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이 3.29점, 심리치료비 지원 3.27점, 아동용품 구입비 3.24점, 상해보험료 지원 3.23점, 생계비 지원 3.21점 등으로 4점 척도에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양육보조금 지원 및 아동용품 구입비는 조부모(3.34점, 3.62점)나 친인척 위탁부모(3.59점, 3.47점)가 비혈연 위탁부모(2.99점, 3.14점)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부록 표 2, 부록 표 5 참조),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도 비혈연 위탁부모(3.08점)는 다른 위탁부모 집단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부록 표 6 참조).

[그림 Ⅲ-4-7]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점 척도임.

다음으로 위탁부모와 아동 대상의 모임이나 행사,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에 참여한 비율이 54.4%, 위탁가정 대상 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52.5%로 과반수이었고, 친목도모 모임 45.2%, 아동상담·심리치료 41.7%,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3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4점 척도에서 모두 3.1점 이상으로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위탁가정 대상 행사(3.51점), 자녀양육정보 교류 모임(3.46점),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3.45점), 아동상담·심리치료(3.44점) 등의 순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위탁부모의 위탁경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3.73점)를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부록 표 13 참조).

<표 Ⅲ-4-7>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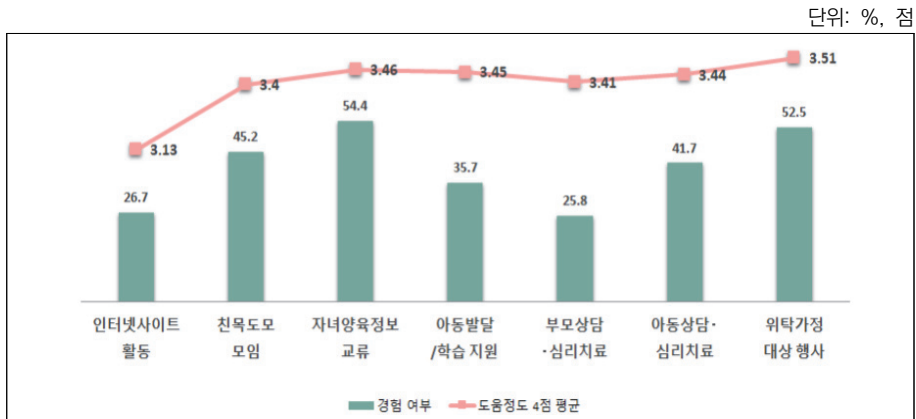
단위: %, 점(명)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계(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4점 평균	
인터넷사이트 활동	26.7	2.6	13.2	52.6	31.6	3.13	100.0(76)
친목도모 모임	45.2	-	5.6	48.4	46.0	3.40	100.0(126)
자녀양육정보 교류	54.4	1.3	0.7	48.4	49.7	3.46	100.0(153)
아동발달·학습 지원	35.7	2.0	2.0	44.4	51.5	3.45	100.0(99)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계(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4점 평균	
부모상담·심리치료	25.8	4.1	4.1	38.4	53.4	3.41	100.0(73)
아동상담·심리치료	41.7	-	7.7	40.2	52.1	3.44	100.0(117)
위탁가정 대상 행사	52.5	0.7	2.7	41.8	54.8	3.51	100.0(14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8]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 법정대리인 권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으로 준비 중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 법정대리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19.9%, 법정대리인 준비 중인 경우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아동이 영유아인 경우에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준비 중인 경우가 초·고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아에 비해 유아 이상인 경우가 현재 법정대리인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탁부모가 친인척인 경우가 조부모나 비혈연인 경우에 비해 현재 법정대리인을 준비 중인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에 35.1%로 친인척과 비혈연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준비 여부

단위: %(명)

구분	법정대리인임	현재 준비 중임	해당하지 않음	계(수)
전체	19.9	10.0	70.1	100.0(281)
위탁아동 연령				
영아	5.4	17.9	76.8	100.0(56)
유아	17.6	17.6	64.9	100.0(74)
초등학생	30.4	2.5	67.1	100.0(79)
중·고등	22.2	4.2	73.6	100.0(72)
$\chi^2(df)$		26.17(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5.1	7.0	57.9	100.0(57)
친인척	17.9	20.5	61.5	100.0(39)
비혈연	15.7	8.6	75.7	100.0(185)
$\chi^2(df)$		13.97(4)**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현재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되는데 소요된 기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평균 9.98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간은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위탁부모가 비혈연인 경우에는 12.71개월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조부모나 친인척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Ⅲ-4-9〉 법정대리인 선임 시 소요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98	8.52	(5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6.94 _a	3.01	(17)
친인척	6.43 _a	6.21	(7)
비혈연	12.71 _a	10.32	(28)
F		3.4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법정대리인 권한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79.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부모가 비혈연인 경우가 조부모와 친인척인 경우에 비해 법정대리인 권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법정대리인 권한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0〉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권한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고 생각함	필요성 못 느낌	계(수)
전체	79.9	20.1	100.0(179)
위탁아동 연령			
영아	77.1	22.9	100.0(35)
유아	80.0	20.0	100.0(45)
초등학생	80.0	20.0	100.0(50)
중·고등	81.6	18.4	100.0(49)
$\chi^2(df)$	0.26(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61.8	38.2	100.0(34)
친인척	69.6	30.4	100.0(23)
비혈연	86.9	13.1	100.0(122)
$\chi^2(df)$	11.39(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7.1	42.9	100.0(42)
200~400만원 미만	88.3	11.7	100.0(60)
400~600만원 미만	86.0	14.0	100.0(57)
600만원 이상	85.0	15.0	100.0(20)
$\chi^2(df)$	15.96(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법정대리인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5개의 보기 문항 중에서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먼저 1순위로 응답하였던 문항 중에서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이 4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33.5%,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9.4%,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 8.6%,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 연령과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는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으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11〉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순위

단위: %(명)

구분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	수술, 입원·퇴원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계(수)
전체	45.3	8.6	33.5	9.4	3.2	100.0(278)
위탁아동 연령						
영아	33.9	5.4	41.1	14.3	5.4	100.0(56)
유아	43.2	2.7	43.2	5.4	5.4	100.0(74)
초등학생	47.4	15.4	24.4	10.3	2.6	100.0(78)
중·고등	54.3	10.0	27.1	8.6	0.0	100.0(70)
$\chi^2(df)$	23.86(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2.7	7.3	34.5	1.8	3.6	100.0(55)
친인척	55.3	2.6	34.2	7.9	0.0	100.0(38)
비혈연	41.1	10.3	33.0	11.9	3.8	100.0(185)
$\chi^2(df)$	13.98(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법정대리인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5개의 보기 문항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과, 2순위로 응답하였던 문항 중에서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이 27.0%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25.5%,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이 22.5%,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21.0%, 기타 4.1%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선택의 경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4개의 보기 문항을 선택한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유아의 경우에는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을 해주기 위해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2〉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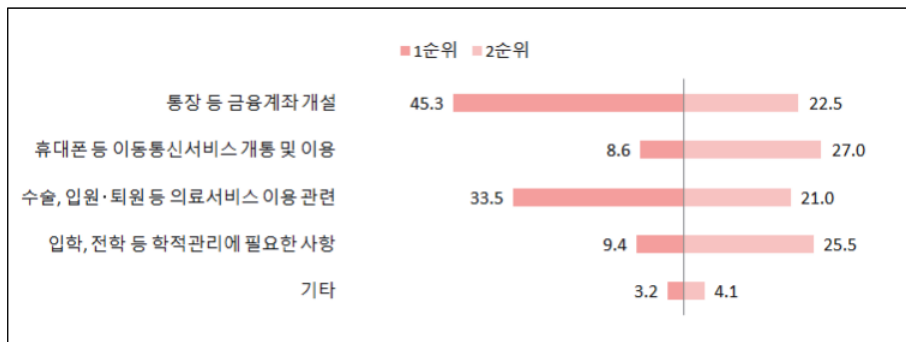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등 이용	수술, 입원·퇴원 입학, 전학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계(수)
전체	22.5	27.0	21.0	25.5	4.1	100.0(267)
위탁아동 연령						
영아	20.8	18.9	24.5	28.3	7.5	100.0(53)
유아	21.7	15.9	20.3	36.2	5.8	100.0(69)
초등학생	30.3	30.3	21.1	15.8	2.6	100.0(76)
중·고등	15.9	40.6	18.8	23.2	1.4	100.0(69)
$\chi^2(df)$			23.21(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5.4	32.7	17.3	32.7	1.9	100.0(52)
친인척	25.7	28.6	20.0	25.7	0.0	100.0(35)
비혈연	23.9	25.0	22.2	23.3	5.6	100.0(180)
$\chi^2(df)$			8.78(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그림 III-4-9〕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지금까지 위탁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32.0%,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15.7%,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음 13.9%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입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본 비율이나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인 경우 비혈연 위탁부모보다 입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거나 입양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조부모나 친인척에 비해 비혈연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에서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거나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거나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3〉 위탁아동 보호 시 입양 고려 유무

단위: %(명)

구분	입양 전혀 생각하지 않음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봄	가정위탁 중 입양 희망	추후 입양 희망하여 가정위탁 시작	기타	계(수)
전체	32.0	35.9	15.7	13.9	2.5	100.0 (281)
위탁아동 연령						
영아	19.3	43.9	19.3	17.5	0.0	100.0 (57)
유아	29.3	36.0	16.0	17.3	1.3	100.0 (75)
초등학생	32.9	35.4	8.9	15.2	7.6	100.0 (79)
중·고등	44.3	30.0	20.0	5.7	0.0	100.0 (70)
$\chi^2(df)$			28.19(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1.9	17.5	3.5	7.0	0.0	100.0 (57)
친인척	48.7	33.3	10.3	7.7	0.0	100.0 (39)
비혈연	16.2	42.2	20.5	17.3	3.8	100.0 (185)
$\chi^2(df)$			72.24(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8.8	23.4	4.7	3.1	0.0	100.0 (64)
200~400만원 미만	23.7	38.7	19.4	15.1	3.2	100.0 (93)
400~600만원 미만	21.4	40.5	15.5	19.0	3.6	100.0 (84)
600만원 이상	15.0	40.0	25.0	17.5	2.5	100.0 (40)
$\chi^2(df)$			57.18(1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5. 소결

이상 위탁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특성, 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그리고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부모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위탁아동 연령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게 보고하였다.

둘째,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애착은 3.77점, 신체발달 및 성장 2.28점, 언어 발달 2.27점, 인지발달 2.31점, 사회정서발달 2.30점이었다(이상 4점 척도). 위탁아동의 건강상태는 평균 4.15점으로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5점 척도).

위탁이후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3개월 미만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6개월 미만 18.4%, 1년 이상 17.0%, 6~12개월 미만 9.9%, 아직도 적응 중 4.3% 순이었다. 위탁아동이 영아일 때 적응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 연령일수록 위탁가정에 적응이 빨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위탁아동이 현재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는 부모의 학대/방임이 1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19.1%, 미혼모·부/혼외출생 1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위탁부모가 조부모나 친인척인 경우 부모의 이혼, 부나 모의 사망과 같은 친부모가 한부모가 된 이유로 인한 가정위탁이 많았다.

셋째, 영유아 위탁부모의 경우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상호작용 역량 4.38점, 인지적 역량 4.18점, 정서적 역량 4.07점, 양육효능감 3.75점이었다. 5점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이지만 양육효능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편이다.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상호작용 역량 4.08점, 인지적 역량 4.04점, 정서적 역량 3.90점, 양육효능감 3.58점으로 영유아기 위탁부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의 위탁부모로서의 정체감과 효능감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아동이 현재 유아인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의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보고하였다. 이는 위탁아동 연령 등 위탁가정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다른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보다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부모는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선택하였을 때,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부모는 ‘위탁보호 종료 후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육아지침서에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및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탁부모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1.6%),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32.5%가 응답하였다.

넷째, 위탁가정의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은 각각 평균 4.18점, 3.90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가족의 유연성은 응집성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친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에는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아 이상인 경우에는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는 경우의 순으로 응답하여 위탁가정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탁아동의 친부모 만남 시 지원 방법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24.7%, ‘직접 친권자에

게 연락' 23.9%,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7.3% 순이었다. 영아에 비해 유아 이상의 연령에서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정도가 높았고,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교이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친부모를 원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다섯째, 일반가정위탁의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응답은 68.8%이었고, 길다는 응답은 21.1%, 짧다는 응답은 10.0%이었다.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25.7%),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20.9%), 자녀양육 방법(16.4%),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12.3%) 등의 순이었으며,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녀양육 방법(28.3%),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21.0%),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12.1%)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결과이다.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에 대해 평균 3.66점 이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4점 척도), 그 중에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3.83점), 자립정착금 지원(3.82점), 자립수당(3.81점), 생계비 지원(3.80점), 양육보조금 지원(3.79점), 아동용품 구입비(3.76점) 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3.29점), 심리치료비 지원(3.27점), 아동용품 구입비(3.24점), 상해보험료 지원(3.23점), 생계비 지원(3.21점)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자녀양육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에 참여한 위탁부모는 54.4%, 위탁가정 대상 행사 참여는 52.5%로 과반수이었고, 친목도모 모임 45.2%, 아동상담·심리치료 41.7%,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3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4점 척도에서 모두 3.1점 이상으로 도움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위탁가정 대상 행사(3.51점), 자녀양육정보 교류 모임(3.46점),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3.45점), 아동상담·심리치료(3.44점) 등의 순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현재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9.98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비현원 위탁부모인 경우에는 12.71개월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와 차이를 보였다.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79.9%가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권한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이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33.5%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위탁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음 35.9%,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32.0%,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15.7%,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음 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았거나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IV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위탁부모의 경험 및 요구 분석

- 01 실증적 분석을 위한 위탁가정 부모 심층면담 운영
- 02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 03 소결

IV.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위탁부모의 경험 및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일반가정위탁 및 전문가정위탁에 초점을 두고, 위탁아동과 비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위탁부모의 양육경험 및 요구를 고찰하였다.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위탁 결정 및 준비과정의 특성, 위탁 후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쟁점, 그리고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구성원의 긍정적 적응을 위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실증적 분석을 위한 위탁가정 부모 심층면담 운영

가. 심층면담 구성

가정위탁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기, 초등학교령기,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인지적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료수집 방식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 사고의 흐름, 저변의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 부모 33명(위탁모 30명, 위탁부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은 모두 비혈연이면서 일부는 전문가정위탁의 특성을 지닌다.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동이 위탁 시점에 36개월 미만인 경우,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면담에 참여한 총 33가구에는 위탁아동 중 가장 어린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 17가구(51.5%), 초등학교생 가구 12가구(36.4%), 중·고등학생 가구 4가구(12.1%)가 포함되었으며, 일반가정위탁이 20가구(58.8%)이고 전문가정위탁은 13가구(39.3%)였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실제 위탁부모 FGI 참여자 명단

번호	위탁아동과의 관계	면담자 연령	위탁 아동 수	면담 시점 위탁아동 연령	위탁 시점 위탁아동 연령	위탁 유형	위탁아동 장애 여부
1	모	40대	1명	영아기(1세)	7개월	전문가정위탁	
2	모	40대	1명	영아기(1세)	3개월	전문가정위탁	
3	모	40대	1명	영아기(1세)	2주	전문가정위탁	
4	모	50대	1명	유아기(5세)	3세	일반가정위탁	경증
5	모	30대	1명	유아기(3세)	2세	전문가정위탁	
6	모	50대	1명	초등학생(9세)	4세	일반가정위탁	중증
7	모	40대	1명	초등학생(9세)	3세	전문가정위탁	
8	모	50대	2명	유아기(3세) 유아기(4세)	2세 3세	전문가정위탁	
9	모	50대	1명	영아기(1세)	10개월	전문가정위탁	
10	모	40대	1명	초등학생(7세)	3개월	일반가정위탁	
11	모	50대	2명	초등학생(8세) 초등학생(8세)	7개월 7개월	전문가정위탁	경계성지능장애
12	모	50대	1명	초등학생(9세)	8세	일반가정위탁	경계성지능장애
13	모	60대	2명	영아기(2세) 초등학생(11세)	4주 6주	일반가정위탁	
14	모	40대	2명	영아기(2세) 유아기(3세)	6주 11개월	전문가정위탁	
15	모	50대	2명	유아기(3세) 유아기(5세)	20개월 15개월	일반가정위탁	
16	모	60대	1명	영아기(2세)	1개월	전문가정위탁	
17	모	50대	3명	영아기(2세) 유아기(4세) 중학생(14세)	1세 3세 1세	전문가정위탁	
18	부	50대	3명	영아기(1세) 유아기(3세) 유아기(6세)	2개월 2세 1개월	전문가정위탁	
19	모	40대	3명	유아기(3세) 유아기(3세) 기타(19세) 기타(19세)	1세 1세 18세 18세	일반가정위탁	
20	모	50대	1명	유아기(5세)	1세	일반가정위탁	
21	모	60대	2명	중학생(13세) 대학생(20세)	1세 5개월	일반가정위탁	
22	모	50대	2명	초등학생(8세) 초등학생(9세)	2세 4세	일반가정위탁	
23	모	60대	3명	초등학생(7세) 초등학생(9세) 초등학생(12세)	7세 8세 4세	일반가정위탁	
24	모	60대	1명	초등학생(11세)	3세	일반가정위탁	
25	부	50대	1명	초등학생(9세)	1세	일반가정위탁	
26	모	50대	1명	유아기(6세)	5세	일반가정위탁	
27	모	60대	1명	유아기(4세)	3세	일반가정위탁	
28	부	30대	1명	고등학생(16세)	16세	일반가정위탁	

번호	위탁아동과의 관계	면담자 연령	위탁 아동 수	면담 시점 위탁아동 연령	위탁 시점 위탁아동 연령	위탁 유형	위탁아동 장애 여부
29	모	60대	1명	고등학생(18세)	1세	일반가정위탁	
30	모	50대	1명	초등학생(10세)	1세	일반가정위탁	
31	모	50대	1명	고등학생(16세)	1세	전문가정위탁	중증
32	모	50대	2명	초등학생(7세)	4세	일반가정위탁	
				중학생(13세)	5세		
33	모	50대	1명	초등학생(7세)	1세	일반가정위탁	

〈표 IV-1-2〉 면담 대상 위탁가정의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위탁가정 전체	100.0 (33)	위탁아동 중 가장 어린 연령	
위탁아동과의 관계		영유아	51.5 (17)
위탁부	9.1 (3)	초등학생	36.4 (12)
위탁모	90.9 (30)	중·고등학생	12.1 (4)
위탁아동과의 관계		전체 위탁 기간	
조부모	-	1~2년 미만	24.2 (8)
친인척	-	2~4년 미만	15.2 (5)
비혈연	100.0 (33)	4~6년 미만	12.1 (4)
면담 아동 위탁유형		6년 이상	48.5 (16)
전문가정위탁	41.2 (14)	전체 자녀 수	
일반가정위탁	58.8 (20)	1명	3.0 (1)
일시가정위탁	-	2명	15.2 (5)
위탁가정 부모 결혼상태		3명	51.5 (17)
배우자 있음	97.0 (32)	4명 이상	30.3 (10)
배우자 없음(사별/이혼 등)	3.0 (1)	자녀 중 위탁아동 수	
미혼	-	1명	63.6 (21)
월 가구소득		2명 이상	36.4 (12)
300만원 미만	12.0 (4)	동거 가구원 수	
300~400만원 미만	21.2 (7)	2명	3.0 (1)
400~600만원 미만	33.3 (11)	3명	21.2 (7)
600만원 이상	33.3 (11)	4명	36.4 (12)
전체 위탁경험 횟수		5명 이상	39.4 (13)
1회	57.6 (19)	동거 가구원	
2회	15.1 (5)	위탁부	93.9 (31)
3회	15.1 (5)	위탁모	100.0 (33)
4회 이상	9.1 (3)	위탁아동	100.0 (33)
무응답	3.0 (1)	친자녀	60.6 (20)
		친인척	3.0 (1)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부모 대상 면담조사' 결과임.

〈표 IV-1-3〉 면담 대상 위탁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위탁가정 내 자녀 전체	100.0 (107)		
위탁여부			
위탁자녀	45.8 (49)	전체 자녀 연령	
친자녀	54.2 (58)	영아(36개월 미만)	9.3 (10)
위탁아동 위탁기간		유아(3~5세)	12.1 (13)
2년 미만	38.8 (19)	초등(6~11세)	20.6 (22)
2~4년 미만	16.3 (8)	중·고등(12~17세)	12.1 (13)
4~10년 미만	34.7 (17)	18세 이상	45.8 (49)
10년 이상	10.2 (5)	평균 연령	16.2세(총 107명)
친자녀 연령		위탁아동 연령	
영아(36개월 미만)	1.7 (1)	영아(36개월 미만)	18.4 (9)
유아(3~5세)	1.7 (1)	유아(3~5세)	24.5 (12)
초등(6~11세)	6.9 (4)	초등(6~11세)	36.7 (18)
중·고등(12~17세)	12.1 (7)	중·고등(12~17세)	12.2 (6)
18세 이상	77.6 (45)	18세 이상	8.2 (4)
평균 연령	23.6세(총 58명)	평균 연령	7.5세(총 49명)
전체 자녀 성별		위탁아동 성별	
남	55.1 (59)	남	57.1 (28)
여	43.9 (47)	여	42.9 (21)
무응답	0.9 (1)		
전체 자녀 장애 여부		위탁아동 장애 여부	
중증	1.9 (2)	중증	4.1 (2)
경증	0.9 (1)	경증	2.0 (1)
경계선지능	1.9 (2)	경계선지능	4.1 (2)
해당없음	95.3 (102)	해당없음	89.8 (44)
전체 자녀 현재 다니는 기관		위탁아동 현재 다니는 기관	
가정보육	5.6 (6)	가정보육	10.2 (5)
유치원	5.6 (6)	유치원	8.2 (4)
어린이집	13.1 (14)	어린이집	28.6 (14)
초등학교	19.6 (21)	초등학교	34.7 (17)
중학교	6.5 (7)	중학교	6.1 (3)
고등학교	2.8 (3)	고등학교	2.0 (1)
대안학교	.9 (1)	기타(대학생, 직장인 포함)	10.2 (5)
기타(대학생, 직장인 포함)	43.0 (46)		
무응답	2.8 (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부모 대상 면담조사' 결과임.

나. 심층면담 자료수집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 경험과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거주지인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 또는 2-4인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면접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이들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에 의거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위탁 동기와 의사결정, 위탁을 위한 준비, 위탁 후 아동과 가족원의 적응, 위탁가정에서의 양육경험, 위탁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한 요구,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표 IV-1-4 참조).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된 질문 외에 추적 질문을 실시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였다. 실시된 심층면담은 모두 녹음되었고,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표 IV-1-4〉 심층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위탁 결정과 준비 과정	위탁 동기, 위탁 결정 과정, 부모교육 및 상담 경험, 양육을 위해 제공받기를 원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 등
2. 위탁 후 자녀양육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 위탁 후 가정의 변화, 양육 경험, 친부모와의 관계 등
3. 위탁가정 양육 지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추가 보완될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요구 등

다. 심층면담 자료분석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는 프레임워크분석법(framework analysis method)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프레임워크분석법은 영국 Social and Community Planning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연구를 위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Ritche & Spencer, 1994: 176). 프레임워크분석법은 전체 자료

에 대한 개괄적 이해(familiarization), 잠정적 주제들에 대한 파악(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 잠정적 주제들에 의한 원자료 재분석(indexing), 범주화(charting), 구조화 및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으로 진행된다 (Srivastava & Thomson, 2009: 75).

먼저, 연구자는 위탁가정 부모의 면접 전사본을 개괄하면서 위탁 결정과 준비과정, 위탁 후 자녀양육, 위탁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였다. 이후,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초기 분석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잠정적 주제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이때 위탁 양육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중요성을 띠는 내용, 참여자들 간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 등에 유의하여 코드화하였다. 주요 의미 단위들이 도출된 후 이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범주화를 실시하고, 범주 간의 논리적 연계를 통해 구조화하면서 정책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2.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위탁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위탁 결정 및 준비, 위탁 후 적응, 그리고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위한 지원 요구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IV-2-1>로 요약되며, 각 결과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상술하였다.

[그림 IV-2-1] 위탁가정 부모의 심층면담 결과

중심주제	내용
위탁 결정 및 준비과정	1) 위탁 결정의 동기 2)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 3) 위탁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위탁 후 자녀양육	1)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 2) 위탁가정 구성원의 적응 과정 3)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원가족과의 관계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요구	1) 법적 역할수행의 범위 확대 2) 행정 실무 처리의 일관성 강화 3) 양육 지원의 안정성 확보 4) 위탁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 5)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가. 위탁 결정 및 준비 과정

1) 위탁 결정의 동기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개인적 배경과 위기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였다. 먼저, 개인적 배경으로 직업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종교시설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아동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위탁을 결정하였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없더라도 자원봉사나 후원을 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이미 아동을 입양했거나 친인척의 입양을 간접 체험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비혈연 아동을 돌본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은 위탁 결정에 핵심적 요소로 여겨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일하다가 수술 때문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를 보는 일도 못 하고, 넋다운이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TV에서 위탁 엄마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 내가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정위탁센터에] 전화했어요. (#4)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를 만났어요. 출퇴근할 때 이 아이를 한 번씩 데리고 왔었어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집에 데려와서 싹 씻기고, 이유식 해서 먹이고, 재우고 나면 하루 만에 아토피가 다 들어가고 보해지는거예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위탁을 시작하게 됐어요. (#33)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에 대해 막연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위기 아동 관련 사건의 촉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보다 정확하게는 위기 아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이들을 지원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가 촉매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인이 사건”이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위기 상황의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의 역할을 알게 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위탁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가정 확산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홍보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인이 사건” 이후 영아들은 시설 대신 가정위탁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정인이 같은 영아를 키워보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요. (#3)

우연히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그때 “정인이 사건”이 붙겨졌을 때인데 우리 딸이 위탁가정을 신청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저도 아기 좋아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신청을 바로 하게 됐어요. (#2)

본격적으로 위탁을 생각하게 된 것은 “창녕 소녀 사건” 때문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때 이 아이가 간 곳이 위탁가정이라고 해서 그 때 위탁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18)

2)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

아동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위탁가정 부모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의 이수 시간은 5시간이며, 내용은 위탁가정 사업소개, 부모의 자기 인식과 양육 코칭, 부모의 감성코칭 및 스트레스 관리, 전문 및 일시가정위탁 부모의 경험 나눔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양성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위탁가정의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된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기존 위탁가정 부모들이 나누는 경험은 위탁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의 동기를 강화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시키는데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을 통해 위탁을 하면 어떤 지원 체계가 있는가를 알게 된 것이 유익했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8)

선배님들[기존 위탁가정 부모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고, 가슴 뭉클한 어떤 감동적인 것도 있었어요. 선배님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지금은 애들이 다 예뻐 보이지만 어려움의 단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마음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14)

한편,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은 위탁받는 아동의 연령에 맞춘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위탁가정 부모는 본 양성교육을 마친 이후 위탁아동을 배치받게 되는데, 위탁아동이 영아인지 유아인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인지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부모 양성교육이 포괄적인 일반론에 그치지 않고,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를 반영한 내용으로 세분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위탁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개별 정보가 부족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으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온 경우는 친부모가 남겨 놓은 이름 및 출생일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같은 생활 시설의 경우는 친부모의 상황이나 시설 거주 동안의 일상 적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위탁아동에 대해 미리 제공받은 정보는 아이 이름, 나이, 사진! 딱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5)

A4 용지 한 장에 아이의 배변이 어떨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도를 적어줬어요. 하지만, 아이의 불안 상태나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은 모르고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아이와 융화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이 아쉬웠어요. (#14)

연구참여자들은 위탁가정 부모가 아동을 이해하고, 적응을 돕도록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기질, 심리적 특성, 기초생활습관, 장애 유형 및 정도, 학대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연구참여자들도 위탁아동 관련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이 지닌 장애나 학대로 인한 부적응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은 이후 위탁가정 부모를 당혹스럽게 하여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위탁후 자녀양육

1)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 중 주요한 요인은 위탁 시점의 아동 연령이다. 아동이 원가족에서 언제 분리되어 위탁이 되는지에 따라 친부모에 대한 기억, 학대 경험의 기간과 강도, 생활시설에서의 경험, 장애 및 행동문제 고착의 위험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위탁 시점이 영아기인 경우,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영아

는 위탁가정 부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애착을 구축하기가 용이하다. 영아기 아동을 위탁한 부모들도 위탁영아의 초기 적응에 대해 “수월하다, 특별한 건 없다, 적응에 힘든 건 없다” 등으로 표현했다. 영아기에 위탁된 아동은 초기에 어려움을 보이더라도 다른 연령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응 기간이 짧고, 행동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위탁가정이라는 안정적 환경에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아주 아주 힘든 아기라도 영아는 한 달이면 폭삭 안기거든요. “아, 여기가 살 곳이다”라는 듯이... (#3)

어릴 때 왔으니까 그냥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25)

위탁 시점이 유아기가 되면 아동은 친부모를 기억하고, 위탁가정 부모를 받아들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위탁가정 부모들은 유아기에 위탁된 아동이 초기 적응 단계에서 나타내는 심리적 어려움을 반복해서 지적하였다. 빈번히 언급된 것이 위탁아동이 보이는 우울, 위축, 충동성, 분리불안 등의 정서반응이나 퇴행, 자해, 거짓말 등의 행동 문제 등이다. 이는 원가족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의 기간이 길고, 시설에서의 부적응, 잦은 이동으로 야기된 불안정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동이 초인종 같은 일상 소음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분리불안을 보이거나 타인에 대한 공포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이러한 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지원 방법을 몰라 난감했다는 고백도 하였다.

아이가 집에 왔는데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어디로 숨어버려요. 그거 적응하는데 한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새 옷을 사서 입히려는데 아이가 파랗게 자지러지더라고요. 딱 생각났어요. 쉼터 선생님들이 어디 다른 데로 옮길 때 옷을 한 벌씩 사서 입혀 보내거든요. 아이가 말은 못해도 새 옷을 사주면 또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거죠. 새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한동안은 새 옷을 사서 택을 얹고 빨아서 옷장에 넣어놨다가 입혔어요. (#7)

걸로 보기에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활달했지만 그런 교육[배변훈련]은 전혀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배변훈련]부터 하나하나 하게 하고. 과잉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32)

초등학령기에 위탁된 아동은 학교라는 형식 교육의 장에서 자신이 위탁가정 아동이라는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맞서야 할 사회적 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다룰 방법을 알려주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친구들이 위탁인 것을 알게 되도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너 숨길 필요 없다. 네가 움츠러들 필요 없다. 네가 잘못해서 위탁이나 입양이 된 것도 아닌데 숨길 필요 없다”고 말해요. (#12)

위탁 시점의 연령과 관계없이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초기 적응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조건적 수용, 사랑, 애착 등을 언급하면서 위탁 아동과의 관계성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 OO가 처음 왔을 때, 목욕을 시키려고 욕조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를 딱 잡고 아가 흥내를 내면서 젖을 빠는 거예요. 치아가 다 있는데도 아가처럼 세 달 동안 내 젖을 빨았어요. (#4)

부모가 아이를 낳고 밖에 나가버리고 방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랑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었지요. 그냥 살 비비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매일 나가서 놀고... 이것만 했어요. (#5)

아이가 떼도 쓰고, 울고...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수용했어요. 애착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게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조그마한 애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기의 어린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19)

한편,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동의 적응 과정 중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한다. 온정적인 위탁가정 부모로서 위탁아동과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아동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훈육은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친자녀였으면 자신의 신념대로 훈육할 수 있지만 위탁아동이기에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탁가정 부모는 위탁아동을 대할 때 친자녀와 동일하게 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혼란을 고백하였다.

내 자식 같으면 어떻게든지 아이한테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는데, 이런 경우는 조심성이 생겨요. (#21)

우리가 위탁받은 애들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백 번 잘 해주다가 어쩌다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상처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야단칠 때도 내 애들한테 했던 것보다는 더 조심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27)

내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죠. 내가 이 아이의 친부모도 아닌데, 너무 내 주도로 키우고 욕심을 부리나 하는 부분이... (#12)

2) 위탁가정 구성원의 적응 과정

위탁 초기에는 위탁아동 뿐 아니라 위탁가정 구성원들도 새로운 적응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아동이 위탁되면서 돌봄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친자녀가 위탁아동을 질투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섭섭함을 느끼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들[친자녀]이 아직도 OO를 약간 경계해요. OO가 저한테 와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밀쳐내려고 하니깐 OO는 항상 치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OO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거[위탁]를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5)

우리 큰 딸이 “우리 엄마 안 같고 아기들[위탁아동들] 엄마 같다”고 그러고, 남편도 “우리 아내보다 애네들[위탁아동들]의 엄마 같다”고 하면서 불만이 좀 많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기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제 손이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도 질투라든지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8)

하지만, 위탁 초기 적응을 거치면서 가족구성원들은 점차 위탁아동을 가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위탁가정 구성원들이 열악한 가족 상황에 놓였던 위탁아동의 취약성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점차 위탁가정 구성원들은 평범한 가족이 공유하는 일상, 소속감, 안전감 등을 위탁아동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수용하며,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위탁아동이 경험하도록 노력한다.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여긴 내 집이야, 내 거야, 내 부모야, 내 형제야. 내가 여기서 뭐를 해도 괜찮아”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위탁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7)

아이가 식구들을 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다가 “엄마, 안 먹어” 이러면서 뺄으려

니가 나, 아빠, 건너편에 앉은 아들까지 세 명의 손이 아이 입 앞으로 대기하는거야. 아이가 그걸 편한게 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기가 이제 괜찮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7)

위탁 초기 적응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가족원들이 위탁아동을 구심점으로 응집하고, 긍정적 가족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나아가 친자녀가 위탁가정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위탁아동의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지지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위탁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완전 이 시대의 테레사야”라고 자랑하더라고요. (#15)

OO이 때문에 우리 큰딸이 연차를 내고 맨날 와요. 둘째는 꼬맹이 보고 싶다는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진짜 다 뭉치게 됐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나는 그래서 OO이한테 감사해요. (#4)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면서 위탁가정 부모라는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아동을 자신의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식하며, 가능하면 입양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이 지닌 임시성과 일시성을 인식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다가 “잘 보내는” 역할로 스스로를 설명하였다.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아동에 대해 “내 아기, 우리 아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애정 없이 위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저는 “아이가 잘 돼서 갔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가정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내 아기가 밖에 나가서 그런[열악한] 대접받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3)

저는 우리 OO를 위해 피부과, 호르몬 검사, 심리센터 언어치료도 막 뛰어다녔어요. 우리 OO가 호르몬제 투여를 엇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오로지 혼자 다 나서서 했어요.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싹 하게 됐어요. (#4)

위탁가정 부모들은 가족 외부의 주요 타자들에게도 위탁아동을 소개하며 적응한다. 친인척 모임에 위탁아동을 데려가거나 교회 등 사회적 모임에 노출시켜 교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위탁아동이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을 경험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형제들이 “너 혼자 키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키우자. 인디언 숙담에 ‘아이 하나는 동네가 키운다’고 하더라. 걱정 마”라고 해줬어요. 이래서 OO이 디딤씨앗통장에 후원도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이모들이 나한테 이렇게 후원해줬고, 이게 가족이라는 것을 사춘기 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4)

3)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원가족과의 관계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복귀에 있다. 위탁 관련 기관에서는 원가족의 소재를 아는 경우 주기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아동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위탁가정 부모들도 아동의 원가족 복귀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한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원가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동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원가족이 아동에 대해 애정을 갖고 위탁가정 부모를 협력자로 인식하는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OO 엄마는 되게 고마워하고 있고... 친모가 다 사인해서 전입도 저희한테 바로 하고, 이렇게 협력이 되어서 [행정 처리를] 했거든요. (#2)

이게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가정에 노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애기도 알고 받아들여야 사춘기 때 덜 힘들 것 같아요. (#3)

위탁가정과 원가족이 교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들의 협력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원가족 복귀라는 필연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위탁가정 부모들이 원가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자신을 확대한 원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경험하는 혼란, 불안, 트라우마의 재현 등을 걱정했다. 또한 원가족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동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서 그동안 위탁가정 부모가 노력했던 규칙 준수나 기초생활습관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때로는 원가족이 아동에게 보이는 냉담함과 무책임한 태도 역시 위탁가정 부모를 실망시킨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친가족 만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이곳[위탁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아이가 집에서 생활패턴을 지키다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친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 흐트러져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서 너무 힘들고... (#1)

외출[친부모 만남]을 한 번 갔다 와서는 애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동안 안 만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 낳아준 엄마다”라고 하니깐 애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엄청 오줌 싸고 막 이랬어요. (#16)

그 엄마를 한 번 만났는데 우리를 딱 쳐다보면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참 고생이겠어요”라고 남 이야기 하듯이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남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친부모하고는 절대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18)

위탁가정 부모에게는 애착을 형성한 위탁아동을 갑자기 원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과의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박탈감, 우울감, 공허감, 친부모에 대한 원망 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이후 위탁아동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할머니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OO를 달라”고 하면 어찌지 이러면서 꿈에도 나와요. (#1)

저도 그런 준비를 항상 해야되요. 애네들이 갑자기 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그러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8)

다.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요구

위탁가정 부모들은 위탁을 결정하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면서 다양한 현실적 쟁점에 부딪히게 된다.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을 통해 도출된 주요 요구 사항은 위탁가정 부모의 법적 역할수행의 범위 확대, 행정 실무 처리의 일관성 강화, 양육 지원의 안정성 확보, 위탁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의 제공, 그리고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법적 역할수행의 범위 확대

대부분의 위탁가정 부모들은 애정과 책임을 갖고 위탁아동을 양육한다. 하지만, 아동을 돌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위탁가정 부모가 지닌 법적 역할 수행의 한계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서류발급 및 수당지원 요청 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탁아동을 위한 보험 가입, 통장 개설, 여권발급 등

의 행정 처리가 필요할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 위탁가정 부모는 좌절을 경험한다.

위탁아동 관련 법적 업무는 친부모를 대동해야하거나 위탁가정 부모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우면 업무 처리가 불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역할 수행의 제약에 대처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이것이 과도해지면 위탁아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가 애 앞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보험도 들을 수가 없대요. 엄마여야 된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6)

중학교를 갈 때 친모가 아니라서 저는 학교 원서를 못 쓴대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얘기하고, 시에서 면으로, 면에서 시로, 또 담당자끼리 연결을 해가면서 그 서류 한 장 떼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위탁가정 아동은 친모 사인이 없으면 학교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17)

아이가 놀다가 툭 떨어지면서 살짝 찢어졌어요. 야간이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고 치료를 안 해주고, 위탁아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몰라요. 결국 담당 복지사님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 와서야 치료를 진행했어요. (#22)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위탁아동을 입양해서 온전히 법적 부모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원가족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견인 신청을 시도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웠다. 설령 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후견인 신청도 해보고, 법정 대리인도 신청해봤어요. 하지만 아빠[친부]가 승낙을 안 해주더라고요. (#21)

내가 후견인을 해 놓았어요. 꼬매[위탁아동]가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갈 때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인 처리를 못하거든요. 친부모를 오라가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친모한테 이야기해서 친권을 포기했고, 이제 다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후견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동사무소 가면 또 후견인에 대한 증명을 해오라고 해요. (#20)

위탁가정 부모는 위탁아동의 친부모를 대신하여 실제 양육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친권을 대신할 수 있는 양육대리권이 부재하여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

다.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양육대리권은 위탁아동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양육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양육대리권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2) 행정 실무 처리의 일관성 강화

위탁가정 관련 행정업무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행정복지센터는 위탁가정의 등록 및 환경조사, 위탁가정의 수급 책정, 양육보조금 지원 등의 사후조치, 위탁아동 관리 및 위탁가정 부모 지원 등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위탁부모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과의 실무 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 부모 대부분은 행정 실무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토로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를 표시했다.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나 급여 처리의 비일관성이나 담당자의 부적절한 태도가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양육보조금 수급을 위한 영수증 증빙 처리가 빈번히 언급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부담스러운 양의 증빙서류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담당자가 위탁가정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위탁아동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문제로 여겨진다.

처음 위탁아동 수급비 받을 때 담당했던 주무관님은 이거[영수증 증빙서류 제출]는 형식적인 거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무관이 오셔가지고 “나라에서 어머니 가정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아이 옷 사 입힐 때도 탈의한 사진까지 프린터 해 가지고 증빙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누구 기준에 따라야 됩니까? (#6)

자조모임의 어떤 분이 위탁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안 된다고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서류 몇 개만 더 들어가면 된대요.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는 못 받는 거예요. (#17)

위탁가정 부모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의 부당한 태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은 양육보조금이나 의료 수급비 사용 신청 등의 과정에서 “횡령한 사람 취급, 범죄자 취급, [위탁가정] 부모를 양육보조금 받는 노동자 취급, 감시받는 기

분” 등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이가 입원했을 때 1인실 병동을 신청했어요. 그때 주무관한테 “어머니가 편하려고 1인실을 쓰신 거잖아요”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왜 [가정위탁 사업]을 한다고 했을까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6)

저는 00이 양육을 위해 수급비를 받는 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 돈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28)

위탁가정 부모들은 행정 담당자의 비일관적 업무처리나 부적절한 태도 등은 위탁가정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위탁가정 부모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며, 부모역할 수행에서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 위탁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실무 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무원들조차도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뭐 하나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가도 “베이비박스는 뭐예요?”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4)

3) 양육 지원의 안정성 확보

위탁아동에 대한 적절한 국가 지원 없이 위탁가정 부모가 양육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전문아동 보호비, 일시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심리 검사 및 치료비,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자립 지원 보조금, 사례관리 등을 권고한다. 하지만, 양육보조금 및 관련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며, 각 보조금 지급 기준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불안정성이 높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급 기준과 지자체 예산 확보에 좌우되는 지원금에 혼란을 느낀다. 특히 위기가동가정보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아동 보호비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기준보다 하향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전문위탁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아직 3개월째 수당이 안 나와요 (#7)

[위탁]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위탁가정] 부모님의 카드를 쓰시면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심하기도 하고... 전문위탁 아이들이 둘인데 예산이 없다고 한 아이만 전문위탁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18)

위탁가정 부모들이 공적 보조금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충분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감사를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물품 구입비가 초과되고, 초등학교 시기 이후에는 교육비와 여가비가 추가 지출되기도 한다. 특히 위탁가정 부모들은 초등학교 아동에게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개별 가정의 사교육비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은 야기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을 위탁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에 대한 요청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기저귀와 분유를 사니까 [지원금] 모자라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미숙아여서 산양 분유를 먹였거든요. 영양제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3)

사교육비를 좀 지원받고 싶거든요. 인강[인터넷 강의]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예체능은 직접 학원에 가야만 되잖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배우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원비를 지원받고 싶어요. (#32)

4) 위탁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

위탁가정 부모는 위탁 이후 매년 5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위탁가정 양성교육에 비해 다소 간과되었던 보수교육의 효용성에 주목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위탁받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면서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제공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위탁아동이 성장하면서 각 발달단계의 과업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부모들은 세분화된 월령별로 영유아가 보이는 신체운동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등의 특징을 배우고 싶어했다. 친자녀를 양육했더라도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기는 어렵고, 또한 새로운 양육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가정 부모들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이들은 영유아기 위탁아동과 놀이를 통한 긍정적 경험이 애착 형성과 적응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절감하고 있었다.

막상 신생아가 오니까 이 애한테 어떠한 예방접종을 해야되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권의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어떤 발달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부모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6)

아이와 놀이하는 법이나 교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아이와 풍선을 가지고 놀이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이랑 놀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19)

위탁아동이 초등학교령기에 진입하면 부모들은 위탁아동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위탁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위탁가정 부모가 어떻게 다루고, 초등학교령기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이후 자아존중감 형성,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 발달과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위탁가정에 대한 긍정적 개념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아동이 원가족 부모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초등학교령기 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학교생활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나는 광주 엄마고, 친엄마는 어디 엄마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가 친구들한테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친구들이 너는 왜 둘씩 있냐고 하는데, 아이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두 명씩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만 말을 해줬어요. (#6)

최소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지 않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들려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애한테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1)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중요성을 더해가는 또래관계, 새롭게 시작된 이성관계, 미디어 사용 등이 부모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주제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아동이 왕따, 학교폭력, “그루밍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위탁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래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위탁가정 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학교 올라가서 파란 만장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자기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학교도 많이 옮겼죠. 아이가 중학교에서 위탁아동인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을 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21)

사춘기가 되니까 성적 피해가 제일 염려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성을 사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채팅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 행복해진대요. 아이가 “나는 위탁 가정 아이야. 나는 부모가 버린 아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귄다 수 있다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31)

한편, 위탁가정의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들이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발달단계의 고유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아동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로 낙인화하여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겪은 부정적 경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부모의 역량을 높이는 내용도 부모교육에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방임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족해서 아동의 적응을 지원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방임은 아동에게 덜 부정적일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실제로 방임되었던 아동을 양육하면서 이들이 보이는 발달지연 등의 손상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동이 겪은 구체적 학대의 영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저는 방임에 대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방임을 당했던 큰 애는 완전히 규칙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분란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8)

방임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애들의 기능이 전혀 자라지 않고, 발달이 하나도 안 돼요. 장

난감을 만지면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해요.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혼자 열고 닫고 다 하거든요. (#17)

결국 위탁 부모한테 온 애들은 상처를 받을 만큼 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더 필요해요. (#27)

5)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위탁가정 부모들은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친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사회정서적 어려움과 행동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위탁가정 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의 효과를 경험하고, 이것이 위탁아동의 공허함이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가 사랑을 준다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공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지원 같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받는 게 좋아요. 우리도 아이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심리정서 지원은 확대 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7)

지원을 받아서 [아동]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였어요. 이런 아이들[위탁아동들] 같은 경우는 평생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계속 지원을 받아서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을 풀어내면 좋겠어요. (#19)

한편으로는 심리상담 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검증된 아동상담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상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탁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운영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많긴 한데,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동사무소에 괜찮은 센터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공무원이라서 특정한 곳을 소개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4)

아이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으로 바로 전화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5)

위탁가정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자조모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위탁가정만이 느끼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위탁아동의 적응을 돕다 보면 본인도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탁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위탁부모 간의 아동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조율해주고, 적절한 양육코칭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위탁가정] 부모 심리치료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힘들게 하면 엄마들도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4)

위탁부모를 같이 상담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방법을 조언해주거나 하면 좋겠어요. (#19)

3. 소결

본 장에서는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위탁가정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탁 결정 및 준비과정의 특성, 위탁 후 적응 및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쟁점, 그리고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 요구가 분석되었다.

먼저, 위탁부모들은 위탁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및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는 질 높은 위탁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탁 후에는 위탁아동 뿐 아니라 위탁가정 구성원들도 상호 적응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점차 안정이 되면 가족원들이 위탁아동을 구심점으로 응집하고,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도 증가한다. 한편,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 원가족과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양가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위탁부모들은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의 양성교육과 이후 보수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를 구체화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양육 지식 및 기술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위탁시점의 아동 연령에 따라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과 위탁가정이 대비해야 할 준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가정 양성 및 보수교육이 단순히 행정적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발달단계에 따른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탁부모들은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법적, 행정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탁부모의 법적 역할수행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관련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경제적 양육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위탁가정 아동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심리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위탁부모를 위한 전문적 양육코칭 지원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V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

- 01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 02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및 과정
- 03육아지침서 구성

V.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¹⁸⁾

1.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가정위탁 보호는 가족해체, 부모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며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22: 65). 따라서 가정위탁보호는 위탁보호아동과 친생부모, 위탁가정의 삼자로 구성되지만(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21), 위탁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탁부모의 역할과 양육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인 위탁아동은 발달과정 중 부모의 이혼, 사망과 학대 등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친가족과의 분리 등 낮은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일반아동보다 불안, 공격성, 비행 등의 정서·행동문제와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보이게 된다(김경민·정익중, 2009; 장혜림·정익중·강현아·신지현·이화조, 2021; Pecora et al., 2018). 이에 위탁부모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고, 위탁부모는 아동 돌봄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가정위탁제도 유형은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전문가정위탁부모는 20시간, 일반가정위탁부모는 5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위탁부모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훈련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의 경우 양성교육을 이수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18) V장은 본 연구에서 위탁연구로 수행 중인 '위탁가정을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의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담았음.

비록 전문가정위탁 교육이 신설되어 점차 확대되겠지만, 이와 같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으로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위탁부모 중 1인만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는 규정은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에서는 대부분 아동양육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탁부모권리와 정체성에 초점을 둔 지침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위탁부모가 위탁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적·외적 자원의 부재는 아동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위탁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정익중 외, 2019). 따라서 부모의 권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정기 교육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의 개발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만나고 헤어지는 위탁의 전 과정에서 경험할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위탁부모로서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위탁부모의 양육 방법과 기술 습득,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둔 기존 부모교육 지침서에 더해서 위탁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위탁부모의 권리보장까지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및 과정

가.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1) 이론적 근거

가) 긍정적 훈육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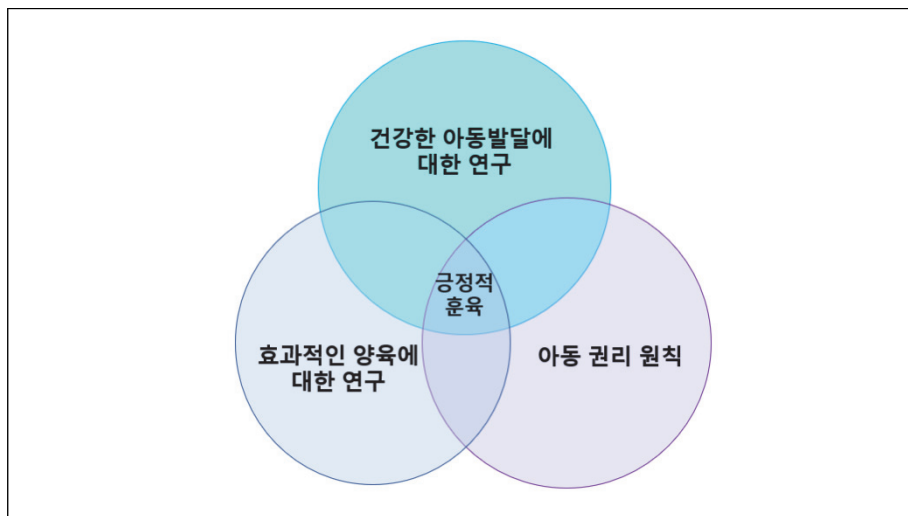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의 권익 향상과 아동을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이 협약은 아동들이 존중받을 권리와 자존감에 대한 권리 역시 인정한다. 긍정적 훈육은 학습자로서의 아동을 존중하면서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

19) 'Durrant(2016).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는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긍정적 훈육은 아동발달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접근법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이해에 근간하는 것이다.

긍정적 훈육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원칙들로 구성되며, 모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긍정적 훈육은 주양육자가 양육을 시작하면서 양육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Durrant(2016: 4)가 제시한 긍정적 훈육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근거이다. 아동권리 원칙과 효과적인 양육에 관한 연구, 그리고 건강한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에 따라 긍정적 훈육의 원리와 내용이 제시된다.

[그림 V-2-1] Durrant(2016)의 긍정적 훈육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근거



자료: Durrant, J. E. (2016).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p. 4.

Durrant(2016: 8)가 제시한 긍정적 훈육에서의 네 가지 기본원리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긍정적 훈육의 장기목표는 부모들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달성하기 원하는 목표를 말한다. 장기목표는 양육의 실제적 목표이자 긍정적 훈육의 바탕이 된다. 이 때, 단기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장기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둘째, 따뜻함과 구조화를 제공하는 것: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가 안전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말과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뜻함은 단기적 협력을 장려하고 장기적 가치를 가르친다. 구조화를 제공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 성공하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 아이의 생각과 방안을 독려하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구조화는 아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는 것: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는 것은 아동 발달단계별 특징 및 욕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따뜻함과 구조화를 제공하면 아동은 애착, 신뢰, 존중하는 의사소통능력, 비폭력적 갈등해결, 자주성, 감정조절, 정보탐색, 자신감, 정체성이라는 건강한 아동발달 구성요소를 갖추게 되고, 양육자는 양육의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넷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 해결하기는 긍정적인 훈육의 요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부모의 스트레스를 조절한 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발달단계, 기질,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며,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따뜻함과 구조화를 이용한다.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문제해결을 배우게 되고, 아동이 성장할수록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도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나)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관점이자 부모역할 프로그램에도 활용되면서 부모-자녀 관계개선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연수, 2015: 12). 강점 관점은 당사자의 타고난 잠재력과 가능성 및 자원들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현존하는 강점들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자원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이룬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Miley et al., 1995, 김연수, 2015: 12에서 재인용). 특히 개인의 문제와 병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변화하고 성장하는 잠재력을 믿으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법으로 당사자의 삶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욕구와 열망을 존중하고, 당사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전문가로 보는 것 등을 주요 실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Saleebey, 1996, 김연수, 2015: 12에서 재인용).

따라서 강점 관점은 누구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둔다. 누구나 지식, 능력, 기술이 있으며, 누구나 자원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당사자가 잘하는 것을 찾고, 이를 지지해주며, 당사자가 보이는 작은 변화와 발전을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실천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족프로그램이나 부모역할 프로그램 등에 접목될 때 참여자들의 강점이 발견되고 강화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및 이를 위한 실천적 개입 기술의 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김연수, 2015: 12).

강점 관점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부모는 학습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자원과 재능 및 그들의 성취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흥미와 꿈과 포부가 무엇인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발견한 작은 변화는 부모와 자녀의 큰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며, 부모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이재현, 2008: 12). 실제로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 실행 결과, 프로그램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강화하고 양육효능감 및 자신감을 증진하며,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양옥경·김연수·권자영, 2006: 168). 특히 위탁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근간할 때 강점 관점은 위탁아동 양육이라는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위탁가정 부모를 지원하는 지침서 제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긍정적 훈육 개념 및 강점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육아지침서에서 담고 있는 개념은 <표 V-2-1>에서 제시하였다. 아동권리, 문제행동 등에 대한 관점은 특별히 드러내지 않아도 중요한 기본 전제로 하여 지침서에 담고자 하며, 위탁부모의 권리, 긍정적 훈육, 강점 관점 등의 개념은 지침서 전반에서 드러내어 다루고자 한다.

〈표 V-2-1〉 육아지침서에 담긴 주요 개념

구분	지침서에 담긴 주요 개념
육아지침서에 숨긴 개념	▶ 아동권리: 이론적 근거인 긍정적 훈육에 아동권리를 포함 ▶ 문제행동: 문제행동과 아동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아동의 성장의 증거로 이해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는 학대피해아동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이해
육아지침서에 드러난 개념	▶ 부모 권리: 위탁부모의 권리와 책임 ▶ 긍정적 훈육 ▶ 강점 관점 ▶ 가정위탁 전 과정에서 육아의 힘 키우기 ▶ 가정위탁유형(일반, 전문, 일시) 구분 없이 필요한 아동 이해

2) 위탁부모교육 프로그램 사례

가) 국내 위탁부모교육 내용

최근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실시되면서 부모교육 표준교재가 개발되는 등 부모교육의 중요성만큼 교육 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발달특성 이해, 문제행동 혹은 장애 등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처방법, 의사소통 코칭, 아동인권기반 양육, 양육스트레스 대처방법 등 위탁부모의 양육기술과 방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V-2-2〉 국내 위탁부모교육 내용

발행기관	부모교육 내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일반가정위탁)	▶ 가정위탁부모 되기 ▶ 위탁아동 양육하기 ▶ 새 출발 돕기 ▶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가정위탁)	▶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위탁 제도, 위탁 동기) ▶ 가정위탁센터 및 사업 소개 ▶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아동이 겪는 어려움
아동권리보장원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제도의 이해 - 전문가정 위탁제도의 차별성, 전문가정 위탁부모의 역할 ▶ 위탁아동 친가정 이해, 전문가정위탁 가족의 특수성 ▶ 위탁아동 발달과 특수육구 - 위탁아동 특수육구 이해 및 대처기술 ▶ 위탁아동 양육코칭 - 아동의 안전과 친화적 환경, 아동인권 기반 양육

발행기관	부모교육 내용
	- 부모·자녀 의사소통 코칭, 전문위탁 부모양육 스트레스 ▶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 자원 활용 기술,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이 지향하는 바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관계 ▶ 전문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결핍된 욕구 -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 건강 문제 등 ▶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와의 관계 ▶ 이들이 만남과 이별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 및 초래하는 결과 ▶ 전문가정위탁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 전문가정위탁과 관련한 정책, 제도와 법률적인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 방안
세이브더칠드런 (양육취약계층)	▶ 훈육, 너무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어요. ▶ 버릇없이 제멋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 아이가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하고 싶어요. ▶ 마음먹은 대로 계속 잘 할 수 있을까요?

자료: 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b).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2022).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자료.
 3)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2. 12. 15. 인출).
 4) 정익중 외(2019). 전문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5) 세이브더칠드런(2022). 양육취약계층 부모 프로그램 자료.

〈표 V-2-2〉에서는 국내 위탁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들 중 현재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교육의 교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가정위탁 대상 교육자료: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소개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를 제작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b: 1). 이 책자는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반가정위탁부모 대상 예비위탁부모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의 경우,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원 서비스 활용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양육을 위한 지침으로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지속적인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위탁부모 양성 교육에서는 본 안내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에서는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주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어서, 위탁아동 양육에 관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표 V-2-3〉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가정위탁부모 되기	- 가정위탁의 정의, 유형, 위탁가정의 기준, 위탁가정 교육,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안내함. - 특히 위탁부모의 역할로는 양육, 훈육, 사회·정서적 지원, 재결합 지원, 아동의 생활 기록, 위탁부모교육 참여, 사례관리 협조 등 7가지를 주요 역할로 제시함.
제2장 위탁아동 양육하기	- 가정위탁아동의 마음 헤아리기, 위탁아동 맞이하기, 친부모와 관계 맺기,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관계 맺기,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침해 및 아동 학대, 아동의 발달단계별 주요 특성, 건강한 훈육 방법, 부모 되기 십계명 등으로 구성됨. - 즉, 위탁가정 내에서 위탁아동의 적응을 돕고 위탁부모가 아동의 발달특성이나 훈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제시함.
제3장 새 출발 돕기	자립 지원, 가정위탁보호 연장, 가정위탁보호 종료에 대해 설명함.
제4장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양육 지원, 자립 지원, 생활법률 지원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위탁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함.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b).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2) 전문가정위탁 대상 교육자료: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

전문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위탁부모는 2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020년 12월,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을 발간하였다. 해당 교안(강현주·도미향·홍나미·백현주, 2020)에는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이해, 위탁아동의 발달과 특수욕구, 위탁부모 양육코칭, 가족 및 지역체계 파트너십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정위탁은 202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정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탁부모가 잘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V-2-4〉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전문가정위탁보호 제도의 이해	▶ 전문가정위탁 동기를 성찰하고, 전문가정위탁 부모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이 무엇 인지 생각하게 하며, 전문가정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의 개관으로서 전문가정위탁 부모양성체계 및 교육체계를 이해하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제2장 위탁아동 발달과 특수육구	▶ 위탁아동의 발달과 특수육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①영유아, ②학대피해아동, ③경계성 지능 아동의 특성과 양육기술을 설명함. ▶ 특수육구 아동의 발달 특성, 특수육구 아동의 생육사적 경험 고려 필요성, 아동의 문제행동 대처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제3장 위탁아동 양육코칭	▶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 아동인권에 대한 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코칭(실제 사례 바탕), 양육 스트레스 대처법 등을 다루고 있음.
제4장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 위탁아동의 친가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정위탁 가족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함. ▶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필요성 및 방법, 가정위탁 자조모임 등 다른 전문가팀에 대해 이해하고 활동하는 방법을 제시함.

자료: 강현주 외(2020).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나) 국외 위탁부모교육 내용

국외 위탁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왔다. 미국과 캐나다 각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탁부모교육의 주요 내용은 〈표 V-2-5〉에 정리하였다.

〈표 V-2-5〉 국외 위탁부모교육 내용

발행기관	지침서 주요 내용
미국 아칸소 주	▶ 위탁가정 관리팀의 책임 ▶ 위탁가정의 승인 절차, 위탁가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위탁가정의 배치(위탁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와의 협력) ▶ 경제적 지원(보조금, 아동 수당, 아동 교육·의복·급식·의료비 지원). ▶ 위탁부모 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안(임시 돌봄 제공, 지역사회 자원) ▶ 위탁아동과 친부모와의 교류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 위탁부모의 권리 ▶ 위탁가정 관리팀의 역할과 책임 ▶ 가정위탁의 종류 및 가정위탁의 과정 ▶ 위탁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 위탁아동의 건강, 의료, 교육 관리 ▶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을 떠날 때
미국 오리건 주	▶ 응급상황 시 대처방안(911, 211-지역사회 자원 연계) ▶ 위탁가정을 위한 지원(멘토링, 위탁부모 포럼, 돌봄 지원, 보조금, 서비스 등) ▶ 위탁가정 관리팀(위탁부모, 위탁가정 관리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 청소년기 위탁 자녀를 위한 안내 사항(범죄, 알코올, 마약, 자살위험 등)

발행기관	지침서 주요 내용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州	▶ 위탁가정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 위탁가정 관리팀(사례관리자, 슈퍼바이저, 치료사, 위탁부모, 친부모, 협회 등) ▶ 위탁부모의 역할, 책임, 권리 ▶ 위탁아동과의 생활(1일차, 1주차) ▶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 ▶ 위탁가정의 중단 또는 종결
미국 위스콘신 州	▶ 가정위탁의 전반 ▶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 ▶ 위탁아동 양육에서의 다양한 상황 -학대 및 방임을 겪은 위탁아동, 위탁아동의 발달과 욕구, 청소년기 위탁자녀 ▶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 ▶ 위탁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미국 헤네피 카운티	▶ 위탁부모를 위한 비상연락망 ▶ 위탁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 휴식 지원 제도 ▶ 양육에 관한 정보(영유아기, 취학 아동의 학교생활, 성교육, 생활안전 등) ▶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 ▶ 위탁아동을 위한 지원(수당, 침구,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Children's Bureau (미국 가정위탁센터)	▶ 위탁가정을 위한 지원(아동 돌봄, 베이비시터, 보조금, 여행 경비 지원 등) ▶ 위탁아동의 의복 관리, 개인정보 관리 ▶ 응급상황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법 ▶ 위탁아동을 훈육할 때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행동 ▶ 위탁아동의 건강관리, 학업관리 ▶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가정의 종류 ▶ 위탁아동을 만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위탁아동이 배치된 후 주의해야 할 사항 ▶ 위탁부모의 권리 및 위탁가정을 위한 지원(수당, 보조금, 서비스, 지역 자원 등)
캐나다 앨버타 州	▶ 가정위탁 근거 법안, 가정위탁의 종류 및 승인 절차 ▶ 가정위탁관리의 이론적 근거(가족 기반, 강점 관점, 협업, 사례연구 등) ▶ 위탁아동에 대해 파악해야 할 사항(발달, 트라우마, 학대, 건강 등) ▶ 위탁가정 관리 팀의 역할(사례관리자, 평가자, 자격관리자 등) ▶ 가정위탁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상황 ▶ 위탁가정의 승인요건 및 책임 ▶ 위탁부모를 위한 지원(양육 보조금, 협회, 교육 등) ▶ 위탁아동의 행동 관리(분노와 슬픔, 자살, 자해 등)

자료: Arkans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3). Foster parent handbook; South Dakot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South Dakota foster parent handbook; Oregon Youth Authority. (2019). Foster parent handbook;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Foster family handbook: Advanced and encouragement for foster parents, from start to finish; Wisconsin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 Foster parent handbook; Hennepin County. (2018). Hennepin County foster parent A to Z; Children's Bureau. (2020). Foster parent handbook;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2001). Foster family handbook (5th ed.); Alberta Government. (2017). The foster care handbook: a guide for caregivers.

또한 영국의 가정위탁기관 Foster Care UK²⁰⁾는 단기위탁, 장기위탁, 긴급위탁, 위탁부모의 휴식을 위한 위탁, 구금으로 인한 위탁, 치료적 위탁 등으로 위탁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위탁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양육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위탁기관에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위탁가정 평가과정 전반에 협력한다. 위탁을 신청한 가정의 18세 이상 가구원은 영국의 범죄경력조회(Disclosure and Barring; DBS)를 거쳐야 하며, 위탁부모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 위원회가 구성한 패널회의에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위탁가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 위탁부모들은 위탁가정 승인 과정에서 위탁부모로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가정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3월 연간 위탁 교육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4월부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이다. 교육의 일부는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때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핵심 교육과정으로는 응급처치(First Aid), 치료적 양육에서의 애착 이론의 역할(The Role of Attachment Theory in Therapeutic Fostering), 아동 보호, 안전한 양육, 기록, 전문위탁가정 교육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위탁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매월 진행되는 그룹회의를 통해 개별적인 교육 계획을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의 가정위탁 기관 Fostering Network²¹⁾는 가정위탁의 유형을 단기위탁,

20) Foster care UK 홈페이지a, About Fostering-Type of foster care: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types-of-fostering> (2022. 10. 4. 인출),

Foster care UK 홈페이지b, About Fostering-How to apply to become a foster care: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apply-for-foster-care> (2022. 10. 4. 인출),

Foster care UK 홈페이지c, Transfer to Us-Foster care training and support: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foster-care-training-and-support> (2022. 10. 4. 인출).

21)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a, Advice&Information-Could you foster?-Types of fostering: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advice-information/could-you-foster/types-fostering> (2022. 9. 30. 인출),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b, Advice&Information-Could you foster?-The journey to approval: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advice-information/could-you-foster/journey-approval> (2022. 9. 30. 인출),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c, Advice&Information-Training & consultancy-Training cour

영구위탁, 입양을 위한 위탁, 긴급위탁, 일시위탁 등으로 구분하며, 전문적·집중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게는 장애아동 위탁, 난민 아동·청소년위탁, 다면적 치료 위탁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탁가정 승인 절차는 앞서 살펴본 Foster Care UK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 기관도 마찬가지로 위탁부모들은 승인 이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매년 평가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지원(Assistance),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애착 이해(Understanding Attachment), 안전한 보호(Safer Caring), 위탁을 위한 기록관리(Record Keeping for Foster Cares) 등 5개의 사항은 필수 교육으로 포함되어 있다. 모든 위탁부모는 1년에 5번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5가지의 필수 교육은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위탁부모 지원의 중요성

부모의 유기 및 학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유리된 아동들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입양,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정위탁은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아동과 연계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2017: 3).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2019년 24.78%, 2020년 25.92%, 2021년에는 29.9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위탁가정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1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비율이 63.5%인 것을 감안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정보공표, 2022. 8. 2.). 또한 2021년 공표된 가정위탁 현황에 따르면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총 9,535명이고, 이 중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은 64%(6,107명), 친인척 위탁가정은 25%(2,344명), 일반위탁가정은 11%(1,084명)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정보공표, 2022. 6. 28.). 정리해보면, 친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체제로 편입한 아동의 대다수가 시설에 입소하며,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더라도 약 90%는 조부모를 비롯한 혈족의 가정이므로 일반위탁가정에 연계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ses: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get-involved/training-consultancy/training> (2022. 9. 30. 인출).

아동보호체제로 편입된 아동들은 부모의 학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친가정의 불안정한 환경에 처했을 뿐 아니라, 시설입소, 입양 및 가정위탁 등 낯선 환경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중고를 경험할 수 있다(정익중 외, 2019). 따라서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 상실감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경민·정익중, 2009; 이현숙,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그늘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곧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행동문제는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지성 외, 2012; 장혜림 외, 2021).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위탁가정의 아동은 무기력, 꿈과 희망의 부재, 수동적인 성격으로의 변화 등 ‘시설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성 외, 2012, 정익중 외, 2019: 26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강현아 외(2015)의 연구를 고찰해보면, 아동이 위탁가정에 연계된 이후에도 위탁가정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초기에는 양육자 애착, 학교적응, 공격성 등의 발달성에서 변화폭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되는 양상을 띠다고 보고하였다. 친가정과 비교했을 때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이 보다 안정적이므로 초기에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위탁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위탁부모 역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게 될 경우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위탁부모는 소진 등의 사유로 위탁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권지성 외, 2012, 정익중 외, 2019: 27에서 재인용). 위탁가정에서의 중도 포기와 다른 가정으로의 재배치 경험은 친가정에서 분리되었던 아동이 다시금 분리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므로 위탁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보다 높다(정익중 외, 2019: 38). 특히,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의 경우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문화를 함께 공유하므로 위탁가정의 양육자와 아동 사이의 애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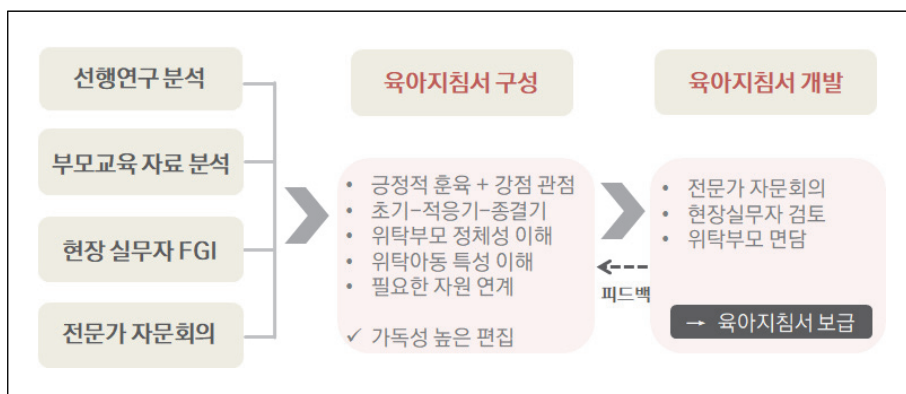
신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장점이겠으나, 비혈연 위탁부모와 비교했을 때 양육환경이 열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Hegar & Scannapieco, 1999). 게다가 비혈연 위탁부모에 비해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들은 보호자의 연령이 높아 건강이 좋지 않고 물리적 환경 등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강향숙 외, 2021: 37; 장정은·전종철, 2019: 69).

그러므로 가정위탁의 장점을 강화하고, 아동이 친가정이 아닌 또 다른 보금자리를 만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와 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양육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육아지침서의 개발은 [그림 V-2-2]와 같이 이루어진다. 문헌연구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육아지침서의 방향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필진은 지침서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실무자 검토, 위탁부모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서 내용을 완성하였다. 개발된 지침서는 위탁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가정위탁센터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보급하고자 한다.

[그림 V-2-2]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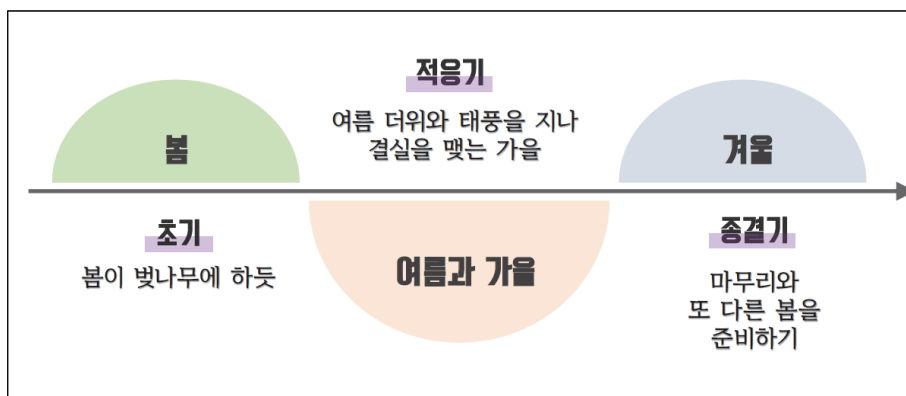
3. 육아지침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위탁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위탁부모는 아동에게 가족과 안전감을 구축하고 재건해주고 자립을 준비시켜주는 형성자(builder)이자, 위탁아동의 양육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학습자(learner), 자기 이해와 적극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한 자기 돌봄자(self-carer)이다. 이에 따라 위탁아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생존자(survivor)이자 헌신적이고 자신을 사랑해 줄 주양육자를 찾는 탐색자(challenger)로 바라보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육아지침서는 가정위탁유형(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에 구분 두지 않고 공통으로 해당하는 아동양육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위탁부모의 권리와 역량 강화(힘 키우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위탁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 힘 키우기 (Parenting Guide Empowering Foster Parents)’라는 제목 하에 [그림 V-3-1]과 같이 가정위탁의 과정을 4계절에 비유하여 초기(봄) - 적응기(여름과 가을) - 종결기(겨울)로 구성하였다.

[그림 V-3-1] 육아지침서 구성



〈표 V-3-1〉 육아지침서 목차

과정	소제목	내용
초기 (봄)	가. 위탁부모 되어가기	1) 위탁부모 정체성 형성하기 가) 위탁부모의 역할 나) 위탁부모 자기이해 2) 위탁부모 육아 토대 형성하기 가) 긍정적 훈육에 대해 이해하기 나) 강점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다) 신뢰관계 맺기 3) 위탁부모 권리 찾기 가) 위탁부모의 권리를 알고 자기 옹호하기 나) 위탁부모의 책임 다) 위탁부모 한 팀 만들기
	나. 위탁아동과 만남	1) 아동과 초기 관계 형성하기 가) 애착관계 형성하기 나) 규칙을 정할 때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 라) 아동을 이해하기 2) 아동과 가족 관계 형성하기 가) 다양한 가족유형을 알려주기 나) 위탁부모로서 위탁가정을 소개할 하나의 문장 만들기 다) 친부모와 관련한 위탁아동의 정서 이해하고 다루기 라) 위탁배치 후 아동에게 나타나는 상실감, 위축감 알아주기
초기 (봄)	나. 위탁아동과 만남	
적응기 (여름과 가을)	가.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1)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 증거 찾기 가) 때를 써요 나) 내개! 내개! 다)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 라) 왜? 왜? 왜? 마) 때리거나, 깨물거나, 소리치거나, 숨거나, 울거나, 말 안하고 눈치를 봐요 바) 자주 거짓말을 해요 2) 아동기 자녀의 성장 증거 찾기 가) 반항을 해요 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다) 위축된 모습을 보여요 3)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 증거 찾기 가) 나 좀 내버려둬! 나)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과정	소제목	내용
적응기 (여름과 가을)	가.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4) 위탁부모가 잘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가) 위탁부모의 성장 증거 찾기
	나. 넘어진 아동과 같이 일어서기	1) 해님과 바람 가)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밀당(밀고 당기기)을 중단하기 나) 위탁부모의 역할은 바람이 아닌 해님의 역할 다) 위탁부모 혼자 해결하기보다 한 팀을 활용하기 2)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정보 알기
	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1) 우리 아이가 또래와 달라요 2) 다름을 확인하면 빠른 개입이 필요해요
종결기 (겨울)	가. 헤어짐을 준비하기	1) 마음 돌보기 가) 위탁부모의 마음 살피기 나) 위탁아동과 자립의 의미 나누기 다) 중도 종결과 관련한 감정, 위로와 회복
종결기 (겨울)	나. 네가 낳고 싶은 때를 위해	1) 위탁아동이 자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가) 정부 지원 정보 나) 힘이 나는 관계를 만들기

[그림 V-3-2] 육아지침서 내용 예시

나 자신을 돌보기



- 1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님
- 2 활짝 열린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게 됨. 위탁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돌볼 때 위탁부모 마음의 창문도 활짝 열리게 되고, 자신에게도, 아동에게도 시원한 바람을 전할 수 있음
- 3 나 자신을 돌보면서 지낼 때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알게 됨
- 4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두고 활용해야 함

신체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영양은 체력인. 적절한 운동하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충분한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 확보하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영양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 인정하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기

추천 도서



엄마 마음 살명서
• 저자 나옴이 스테플런
• 역자 김진주
• 월복출판



세상의 모든 엄마는 예쁘다
• 저자 김은혜
• 예문이카이브



마음행진의 시
• 저자 류시화
• 수오서재

친부모와 관련한 위탁아동의 정서 이해하고 다루기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면 위탁부모로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한 것과 무관하게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원망, 분노, 상실감 등의 감정이 생길 수 있음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나고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도 아동이 잘하면 약속한 날짜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위탁가정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안함. 아동은 친부모에게 느끼는 그리움과 위탁부모에게 느끼는 고마움이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 그리움과 원망, 분노, 상실감 등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고 이해해주기



자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탁부모 힘 키우기'의 일부 페이지를 예시로 제시함.

VI

결론 및 정책제언

- 01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 02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 0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VI.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종합하여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위탁가정(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관점, 지원체계나 운영체계 관점, 그리고 법적·제도적 관점이다.

1.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물리적 환경 지원, 양육지침서 활용을 제안한다.

가.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위탁부모는 자원하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아동의 상황에 의해서든지, 위탁아동을 만나고, 생활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일부는 위탁아동과의 헤어짐을 경험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위탁부모라는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연결된다.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체계이다.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은 곧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아동과 더불어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위탁부모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보호요인인지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위탁아동의 심리치료만큼이나 위탁부모의 심리치료 혹은 가족상담의 유용성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가정 사례 관리를 통해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위탁부모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집단상담, 심리치료, 자조모임, 가족여행(휴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또한 위탁가정 중에서도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고령의 조부모 위탁부모인 경우 등에는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알맞은 시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나.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위탁유형이나 위탁부모의 위탁경험보다는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보고되었다. 즉, 양육역량은 양육을 하는 부모의 특성이기는 하나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의 경우 양육에 대한 인지적 역량이 비혈연 위탁부모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연령이 높아서 최근의 양육경험이 없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도 중·고등학생 위탁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교육에서 청소년 문화를 알려주길 희망한다는 위탁부모가 있었다. 또한 아동의 진로나 대학 생활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탁아동 연령, 성별, 위탁아동과의 관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방법들이 다르게 마련된다면 양육역량 강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다.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위탁부모들은 설문조사에서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자녀양육 방법,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는 자녀양육 방법,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시기마다 그 시기에 맞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혈연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달라진다.

한편, 위탁아동이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지내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있으며, 위탁아동에게 어떻게 자신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위탁부모들도

다수 있었다(위탁부모 면담결과). 이것이 위탁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 발달 등 위탁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탁부모의 역할이나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와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교육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필수교육내용과 선택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필수교육내용은 모든 위탁부모가 이수하도록 하고, 선택교육내용은 심화된 내용으로 위탁아동의 특징이나 위탁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 내용체계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시수가 늘어나는 등 좀 더 부모교육이 강화된다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모두 맡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본 연구에서 양육을 위해 도움을 받는 곳을 조사하였을 때,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는 비혈연 위탁부모에 비해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조모임에는 참석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자조모임은 양육 사례를 들으며 양육 정보를 얻거나 훈육방법 등을 배우는 유익한 장이 되며, 서로 대화와 교제를 통해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도 위탁부모 간의 사례 공유는 위탁아동을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위탁부모의 특성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구별된 모임이 형성되도록 하고, 서로 유사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위탁아동 양육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간담회에서 SNS가 양육정보 교류나 육아물품 교환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경험담이 보고되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뿐만 아니라 위탁부모 간의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동시에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위탁부모가 폐쇄적인 가정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탁부모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양육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자조모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자조모임은 위탁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도움이 된다. 위탁부모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단체의 후원으로 다녀온 가족여행이 아동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가족관계나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위탁부모 뿐만 아니라 위탁(종결)아동들도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이나 문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위탁아동과의 만남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에 다른 위탁아동을 만났다면 정체감 형성이나 정보 교류에 유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만을 위한 모임도 있겠지만,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전체를 위한 모임도 기획될 필요가 있다.

마. 물리적 환경 지원

위탁아동이 생활하는 위탁가정의 가정환경은 중요하다.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발달자극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환경 조사 시 아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비용 지원 이외에도 위탁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바. 육아지침서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육아지침서를 활용함으로써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육아지침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부모 보수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위탁부모 대상 교육이나 집단상담 시 초기적응팀, 아동연령에 따라 영유아기팀, 초등학령기팀, 청소년기팀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각 위탁부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육아지침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셋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육아지침서의 목차에 따라 각 회기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센터 담당자 혹은 전문가와 함께 다루어볼 수 있다. 넷째, 육아지침서는 위탁부모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므로 위탁가정에 비치해 두고, 양육 중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혹은 행동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내용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연령층의 위탁부모도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연령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또 다른 형태로 재보급함으로써 위탁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육아지원을 통한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행정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제안한다.

가. 육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은 모두 위탁부모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은 부모자녀가 아닌 동거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의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가정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은 당연히 위탁아동을 돌봄 중인 위탁부모에게도 유용하며, 이는 위탁아동 양육에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에 있어 위탁부모가 육아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 위탁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이 길고 일반 영아기 부모가 겪는 어려

움을 동일하게 겪으므로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여러 육아지원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를 제안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3절의 입법적 개선 방안에서도 다루었다.

나.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위탁아동 즉, 보호대상아동의 친부모와의 분리 경험, 주양육자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위탁아동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준다. 이 문제는 위탁아동만의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위탁아동이면 누구나 심리치료에 접근하고 필요한 만큼 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의 확대를 제안한다. 특히 확대를 경험한 경우에는 심리치료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려서 위탁아동이 충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장애아동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으로 일컬어진다. 그만큼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를 향한 지원들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에게 방과후활동비 지원, 학원비 지원 등이 제공되어도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어느 영역으로 제한하여 지원비를 사용하도록 할 때, 아동이 지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습 지원 보다 재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제한된 문화 활동이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장애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위탁부모에게만 지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라.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력

다수의 위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가정위탁에서 장기적으로 보호 받거나 다른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원가정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또 다른 지원기관들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가정위탁 현황의 위탁 사유에 따르면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한 부모(이혼, 부나 모 사망 등)로 추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 경우 부나 모 중 한 명은 양육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친부모를 지원하여 위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마.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가 사망(1.4%)하였거나 부모 질병(3.2%), 부모의 학대/방임(19.4%), 미혼모부/혼외출생(17%) 등 사실상 원가정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2-9 참조). 다른 한편, 원가정 복귀가 어렵다는 것은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위탁아동의 긴급한 수술, 각종 증명서류나 통장 개설 등에 대해서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복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위탁기간에 따라 무기한 가정위탁과 단기 가정위탁으로 구분한다. 무기한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여 교육과 돌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만18세가 될 때까지 머무는 것이다. 이에 무기한 가정위탁을 맡게 된 위탁부모는 장기적인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에 단기 가정위탁은 3~6개월 간 보호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잠시 보호하는 것인데, 비교적 긴급하게 아동을 맡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짧은 기간 동안 아동청(Jugendamt),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육

기관 등과 함께 많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²²⁾

우리의 경우 가정위탁을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가정 위탁, 친·외조부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위탁, 8촌 이내의 혈족이 양육하는 친인척 위탁으로 구분하다가, 2021년 법을 개정하여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위탁가정 유형의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위탁을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 목표와 설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아동의 위탁이 단기인 경우 해당 아동의 원가정 지원과 빠른 복귀, 원가정과의 면접교섭지원이 중요하지만, 장기화될 예정이라면 이보다는 해당 아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위탁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아동이 장기간 가정위탁보호에 있을 때에는 위탁부모가 일상적 사무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고, 해당 사무에서 친권자를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위탁부모는 아동의 근로소득을 관리하고, 아동의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그 밖에 지체하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대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위탁부모가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고, 이를 위해 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홍윤선, 2020: 100).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정위탁을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위탁부모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여 필요한 지원과 정책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바.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일부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는 위탁 종결을 경험한다. 위탁 종결이란 위탁아동에게는 주양육자의 변화와 거주지나 학교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적응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위탁아동이 위탁부모와 분리될 수 있다. 유아기 위탁아동이 조부모가 희망

22) 성지혜(2022. 6. 13.). [세제] 요보호 아동 복리를 위한 독일 가정위탁보호제도,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2> (2022. 10. 18. 인출)

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원가정과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위탁부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갑자기 단절시켰고,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큰 불안증상을 보였다는 사례도 있었다(위탁부모 면담결과). 이는 위탁부모는 물론이고 위탁아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이며, 가정처럼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위탁의 장점을 소용없게 하는, 위탁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위탁가정의 사정에 의해 가정위탁이 종료되어야 한다면, 위탁아동의 알 권리를 인정하여 아동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한다. 그 후 원가정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다가, 서서히 이동할 수 있는 몇 개월간의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 결정 시 위탁아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위탁부모가 위원 또는 관계자로 참여하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종료 이후에도 가정위탁센터를 매개하여 위탁부모와 아동이 안부를 나누거나 행사를 통해 만난다면, 위탁아동은 자신을 지지하는 어른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사회적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성년이 되었어도 아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위탁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례도 가능하여야 하겠다.

사.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서 한 가족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아동의 수급비를 영수증 처리하는 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급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으나 가정위탁의 취지나 구성원이 생활을 함께하는 가정의 구조상 1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 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영수증 처리가 아닌 가정방문, 자조모임 형태의 간담회,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다른 형태를 통해 가정위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한다.

아. 행정적 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위탁가정 관련 행정업무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 방식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었으며,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위탁부모 면담결과). 어느 곳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위탁부모 면담결과).

따라서 공무원용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a)를 개편하거나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의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가정위탁으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는데, ‘보호대상아동’을 맡아 양육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자.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가정위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변인들로 인해, 혹은 위탁아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위탁가정이 있다. 위탁부모도 위탁아동도 그 피해자가 된다. 이들을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라디오 광고를 듣거나 센터 앞 홍보물을 보고 가정위탁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본 연구의 면담결과를 통해 가정위탁 홍보가 위탁부모 모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가정위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는 위탁부모(가정위탁보호자)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장기 위탁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를 제안한다.

가.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에 관한 정의규정만 있을 뿐, 위탁부모 내지 위탁가정에 대한 정의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탁가정의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정위탁과 일반·일시가정위탁 두 가지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위탁부모는 아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1항), 아동청은 허가를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해 거주지를 방문하여 공간상황이나 위탁부모의 인적 적합성(예비지식, 경험, 아동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아동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조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가(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2항)한다(홍운선, 2020: 104).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비록 가정위탁 보호 책정 절차에서 아동 및 위탁가정의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는 있으나, 법에서는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일정 소득기준과 범죄경력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위탁부모 중 1인만이 아동배치 이전 5시간의 교육 이수와 연 1회 5시간의 보수교육만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가정위탁의 경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으로 아동을 보내게 되는 만큼, 위탁부모의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격 요건에 있어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³⁾

이에 현행법상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가정위탁 및 위탁부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23) 독일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거나 3촌 이내의 친족, 입양전제위탁(시험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의 허가를 면한다(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9항 이하에서 위탁부모에 대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확인과 가정환경조사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해석상 위탁아동에 대해서만 가정환경조사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고, 해당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동거인에 대해서도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확인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현장에서는 “위탁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정위탁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이와 동일하게 법률에서도 “가정위탁보호자”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²⁴⁾

〈표 VI-3-1〉 위탁부모(가정위탁보호자) 정의규정 및 자격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별로 한다. 가.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나. 일반가정위탁: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다.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신 설〉	6의2. “가정위탁보호자”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4) 실제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도 “보호자”의 정의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부모”라는 용어보다는 “보호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가정위탁교육을 이수할 것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제00조(가정위탁 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자가 되려는 사람 및 해당 가정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원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가정위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위탁부모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안내서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자료만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22: 73)에서 발간하는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부모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한다는 위탁부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내용별로 필수 이수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양친이 될 사람을 위한 소정의 교육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 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서 위탁부모 양성교육의 대해서도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b)에 따른 주요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위탁부모 중 1인만 교육을 받아도 가정위탁이 가능하지만,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가족구성원 중 1인만 위탁아동을 돌보는 것은 아니기에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위탁부와 모가 각각 얼마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성인자녀가 있다면 함께 교육대상에 포함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함으로써 주양육자 1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가정위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VI-3-2〉 위탁부모 교육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신 설〉	제00조(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조제6조의2호마목에 따른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가정위탁교육</u>”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가정위탁의 정의, 유형, 위탁가정의 기준 2. 가정위탁보호자의 역할, 권리와 의무 3.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및 양육방법 4. 위탁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가정위탁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6. 가정위탁보호 연장, 종료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자와 해당가정에 동거하는 구성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모두가 이수하여야 한다.

다. 장기 위탁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12월 기준, 5년 이상의 장기위탁 비중이 약 52.1%이며, 특히, 아동 시기의 대부분인 10년 이상 위탁된 경우도 전체의 19.4%에 달한다(표 II-2-4 참조). 위탁부모 면담에서도 아동이 성년이 되어 보호가 종결되기 전까지 맡고 있을 생각을 하고 가정위탁을 시작한다고 하였고, 위탁 시작 시에는 1년 후쯤이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입양을 갈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지내다보니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하며, 장기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아동을 위해서 그들을 단순히 동거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탁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1) 동거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현행법상 가족은 그 범위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법은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의 범위에 두고 있다(민법 제779조).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1호), “가정”을 이러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제3조 제2호).

만약 가정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면, 위탁가정과 같이 위탁가족과 위탁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도 일반적인 가정과 다름없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기본공제의 대상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독일에서는 산재보험법에서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가정위탁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주거지원비법률에서도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가정위탁자녀, 가정위탁부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²⁵⁾ 이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위탁아동을 위탁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반적인 가족으로 간주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위탁아동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거인으로서 1인 가구로 처리되어 제대로 된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는데(위탁부모 면담결과), 제도 설계에 있어서 위탁아동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면 좀 더 세심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육아휴직 대상자로

독일의 경우 위탁아동은 위탁부모가 가입한 공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만약 따로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연 176유로(약 24만원), 위탁부모를 위한 노후 보험료 월 39.8유로(약 5만3천원)와 상해보험비 연 176유로(약 24만원)를 아동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8세 이하인 경우 위탁부모는 3년간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²⁵⁾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계가 독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에는 입양아동만 있을 뿐, 가정위탁아동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위탁부모가 육아휴직을 통해 위탁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다면 그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형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장기적으로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부모도 위탁아동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5) 독일 사회법전 제7편 산재보험법 제2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① 3촌 이내의 혈족, ② 2촌 이내의 인척, ③ 가정위탁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비법률 제5조에서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① 별거 중에 있지 않은 배우자, ② 별거 중에 있지 않은 생활동반자, ③ 생활공동체의 의사가 있는 동거인, ④ 직계혈족 및 인척, 2촌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인척, ⑤ 가정위탁자녀, ⑥ 가정위탁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운선(2020).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 법학논총 제44권 제2호. p. 126 각주 139 참조.

26) 성지혜(2022. 6. 13.). [세계] 요보호 아동 복리를 위한 독일 가정위탁보호제도,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2> (2022. 10. 18. 인출)

〈표 VI-3-3〉 가정위탁 시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0조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위탁 중 입양을 희망하거나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시작한 경우가 약 30%에 달하며,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5.9%를 나타내고 있는데(표 III-4-13 참조), 현재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입양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위탁부모 중에는 양육 중이던 위탁아동이 입양대상아동이 되었을 때 자신과 결연이 될지 알지 못해 위탁아동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입양을 포기하고 추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년입양을 추진할 생각을 갖기도 한다(위탁부모 면담결과).

반면 독일의 경우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모두 입양에 동의할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입양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 친생부모나 아동청이 갖고 있었던 친권 내지 양육권이 입양부모에게 귀속된다. 이는 이미 위탁부모 지원 과정에서 아동청의 평가를 거쳤고, 아동도 위탁가정에 적응해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성지혜, 2022. 6. 13.).

우리도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불가한 상황이고, 친부모가 지속적으로 아동과의 면접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부모와 아동이 모두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입양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을 통해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양친 가정조사 과정은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결연위원회에서는 해당 아동과 어느 부모를 결연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탁부모와의 결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된다.

다만, 가정위탁이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위탁 보호 결정과 위탁부모 연계 과정에서부터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간소화된 입양 절차에서도 법원허가제의 원칙은 고수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신중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 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중인 아동은 친가정 조기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친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사전 교감을 통한 결합의지 향상이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의 주요 목적은 조속한 원가정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와 연락하고 있다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며(표 III-3-13 참조), 위탁아동이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는 비율도 23%에 달하여(표 III-3-14 참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7%에 달한다(표 III-3-17 참조).

실제 아동복지법상 면접교섭 지원 방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위탁부모가 면접교섭 시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을 무조건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규정하기보다는 학대피해 등 위탁 아동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아동을 우선으로 한 면접교섭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시행이 요구된다.

〈표 VI-3-4〉 면접교섭 지원방법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 아동의 원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이나 위탁아동의 친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친부모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위탁아동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 설〉	

마.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위탁부모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45.3%)’,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33.5%)’ 등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표 III-4-11 참조). 구체적으로는 당장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방과후 학습이나 돌봄교실 등에 내야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이 어렵고, 휴대전화, 통장 개설은 물론 유사시 수술동의 같은 필수적인 동의조차 어렵다. 심지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친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 위탁부모에게는 아무런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다(박연선, 2020. 11. 23.).

이러한 논란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²⁷⁾ 즉, 아동복지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동 법안의 경우에도 후견인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위의 권한 중에서도 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및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등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와 같이 임시후견인이 되어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VI-3-5〉 위탁부모의 후견인 권한 강화 관련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7)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2022. 6.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보장원의 장 및 가정위탁보호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위탁가정

한편,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은 위탁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어 가정위탁제도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선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몇 가지(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등)에 불과한데 이를 위

해 위탁부모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전적인 법적·경제적 책임과 부담을 동시에 떠맡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나 법인 등의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제철웅 외, 2017: 54 이하 참조).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후견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단순히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에 갈음하여 아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대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양육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향숙·강현아·정익중·오세현(2021). 여러 번 가정위탁 양육을 진행한 일반 위탁 부모의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70(2), 35-66.
- 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강현아·정익중·강향숙·오세현·박성희(2019). 2019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보건 복지부·중앙가정위탁센터·세이브더칠드런·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강현아·정익중·강현주·이화조·오세현(2020). 2020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보건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강현아·정익중·양경해(2015).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일반 위탁과 친족위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0, 1-26.
-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2022. 6.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지성·정익중(2013). 가정위탁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37(2), 35-77.
- 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2012). 위탁아동 입양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73-107.
- 권혜진·전숙영(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79-96.
- 김경민·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93-119.
- 김경은·한유진(2018).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 예비연구. *육아정책연구*, 12(2), 29-53.
- 김경임·황윤세(2020). 유아기 부모양육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133-152.
- 김민정(2008).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3(4), 145-159.

- 김민정(2009). 위탁부모 양육행동이 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97-110.
- 김민정(2010). 가정위탁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위탁유지. *한국가족복지학*, 15(3), 149-161.
- 김선숙·박호준(2020). 가정밖 보호체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비교: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10(1), 1-18.
- 김연수(2015). 청소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9, 7-37.
- 김정화·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우석진(2014).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또래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2), 313-335.
- 김진숙(2008). 일반 위탁가정 부모의 역할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35-164.
- 김형태·이수천(2019). 가정 외 보호아동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의 비교. *보건과 복지*, 21(1), 51-73.
- 김혜원(2022).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의 이중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 238-264.
- 노혜련·김미원·조소연(2021).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독일 사회법전 제8권.
- 박선영·이선희·김태선·김형연·박수연(2019). 일반위탁가정 부모의 역할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2), 119-147.
- 박성의·도미향(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모교육연구*, 16(1), 45-67.
- 박연선(2020. 11. 23.). [취재 후] '가정위탁'의 한계...법적·제도적 보완 절실,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4673> (2022. 10. 18. 인출).

- 배나래·박충선(2013).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18(3), 333-352.
- 배인경(2019).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 정보공표(2022. 6. 28.).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2021. 12. 31.기준).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3&page=1&CONT_SEQ=371935&PAR_CONT_SEQ=356050 (2022. 10. 4. 인출).
- 보건복지부 정보공표(2022. 8. 2.).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시도별, 연도별).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page=1&CONT_SEQ=372481&PAR_CONT_SEQ=356036 (2022. 10. 4.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208 (2022. 3. 10.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12.).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9668 (2022. 3. 10. 인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a). [공무원용]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b).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성지혜(2022. 6. 13.). [세계] 요보호 아동 복리를 위한 독일 가정위탁보호제도,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_xno=32692 (2022. 10. 18. 인출)
- 세이브더칠드런(2022). 양육취약계층 부모 프로그램 자료.

- 안은미·이정애·정익중(2019).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 외보호 여부와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209-230.
- 안은미·정익중(2019).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낙인감 발달궤적이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1), 229-244.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양심영(2009). 친족위탁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6, 193-224.
- 양옥경·김연수·권자영(2006).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143-173.
- 양은별·김태우·박은혜·이소연·정익중(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 이수현·이강아·이재림·김영선·유예진(2018).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양육 역량의 매개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25(3), 181-202.
- 이재현(2008). 빈곤부모를 위한 강점관점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 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숙(2005).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은·전종철(2019). 가정위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일반가정위탁모의 장·단기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67-102.
- 장혜림·정익중·강현아·신지현·이화조(2021). 전문가정위탁 부모의 양육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70(2), 133-166.
- 정계숙(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양육불안이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79-206.

- 정계숙·최은실(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미라·차기주·주연진·김민정(2015). 취업모의 직장 내 분위기의 융통성,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433-454.
- 정익중·강현아·장혜림·이화조·신지현(2019). 전문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제철웅·김원태·박명숙·안재진·장영인·송지은(2017).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수민·김정화·노충래(2015). 가정외보호아동의 친부모 애착이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Ping의 2단계 접근방식을 적용한 긍정적 대리양육자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1, 189-217.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2022).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자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2017). 2016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보고서.
- 최영(2007).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61-90.
- 최은희·윤혜미(2014).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위탁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143-170.
- 허남순(2008).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9, 207-233.
- 홍운선(2020).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 *법학논총*, 44(3), 93-133.
- Alberta Government. (2017). The foster care handbook: a guide for caregivers.
- Arkans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3). Foster parent handbook.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2001). Foster family handbook (5th ed.).

- Children's Bureau. (2020). Foster parent handbook.
- Durrant, J. E. (2016).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 Hegar, R. L., & Scannapieco, M. (1999). Kinship foster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Hennepin County. (2018). Hennepin County foster parent A to Z.
- Mancinelli, E. Dell'Arciprete, G., & Salcuni, S. (2021). A systematic review on foster par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arenting style: An evaluation of foster parents and foster children variables.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 10916.
- Miley, K. K., O'Melia, M & Dubois, B. L. (1995).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Pennsylvania: Allyn & Bacon.
- Oregon Youth Authority. (2019). Foster parent handbook.
- Pecora, P. J., Whittaker, J. K., Barth, R. P., Borja, S., & Vesneski, W. (2018).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Ritchie, J. & Spencer, 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Bryman, A., Burgess, R. G., Eds., *Analyzing qualitative data*, Routledge, New York, 173-194.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xtensions and cautions. *Social work*, 41(3), 296-305.
-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Foster family handbook: Advanced and encouragement for foster parents, from start to finish.
- South Dakot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South Dakota foster parent handbook.
- Srivastava, A. & Thomson, S. B. (2009). Framework analysis: A qualitative methodology for applied policy research. *Journal of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4, 72-79.

Strijker, J., & Knorth, E. J.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foster children in Netherla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 421-42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sconsin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 Foster parent handbook.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undefined> (2022. 10.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민법,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F%BC%EB%B2%95#liBgcolor0> (2022. 10.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0> (2022. 6. 10.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득세법,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liBgcolor6> (2022. 10.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 (2022. 6. 10.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https://law.go.kr/LSW/trtyMInfoP.do?trtySeq=188> (2022. 10.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6%91%EC%9C%A1%EB%B9%84+%EC%9D%B4%ED%96%89%ED%99%95%EB%B3%B4+%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2022. 10.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85%EC%96%91%ED%8A%B9%EB%A1%80%EB%B2%95#undefined> (2022. 10. 1.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권리-가정위탁지원: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2&PAGE=2&topTitle=가정위탁지원 (2022. 3. 16.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a, 가정위탁 안내 및 절차: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280&cntntsId=1247> (2022. 3. 16.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b,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추진체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8> (2022. 10. 1.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c,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2. 12. 15. 인출).

Foster care UK 홈페이지a, About Fostering-Type of foster care: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types-of-fostering> (2022. 10. 4. 인출).

Foster care UK 홈페이지b, About Fostering-How to apply to become a foster care: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apply-for-foster-care> (2022. 10. 4. 인출).

Foster care UK 홈페이지c, Transfer to Us-Foster care training and support: <https://www.fostercareuk.co.uk/about-fostering/foster-care-training-and-support> (2022. 10. 4. 인출).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a, Advice&Information-Could you foster?-Types of fostering: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advice-information/could-you-foster/types-fostering> (2022. 9. 30. 인출).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b, Advice&Information-Could you foster?-The journey to approval: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advice-information/could-you-foster/journey-approval> (2022. 9. 30. 인출).

The Fostering Network 홈페이지c, Advice&Information-Training & consultancy-Training courses: <https://www.thefosteringnetwork.org.uk/get-involved/training-consultancy/training> (2022. 9. 30. 인출).



Abstract

Study on the Ways to Support Vulnerable Family's Parenting Capabilities (1) : Supporting Plans for Foster Families

Yun-Jin Bae, Jeongrim Lee, Ahreum Kim, Hyemin Lee, Sungeun Yang,
Hae-lim Chang, Yurim Cha

The 'Study on the Ways to Support Vulnerable Family's Parenting Capabilities' is a five-year project to seek way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and develop parenting guide books, focusing on strengthening parenting capabilities. In 2022, the study targets foster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needs.

Foster children need a deeper understanding, more attention, and affection from caregivers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biological parents (original families) and have had a lot of changes in their home environment including social and physical contex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sistently support the parenting capabilities of foster families so that foster children can be protected safely and raised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healthy in their foster h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seek ways to improve foster family support systems that can lighten parenting burden of foster parents and solve difficulties in their parenting. Second, it is to develop parenting guide books that are helpful in building their parenting capabilities up and caring foste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r this study,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us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urvey, discussion meetings,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policy forum. In particular, 1) 283 foster parents were survey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st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ir parenting style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ster children's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 and experiences and needs of support programs. 2)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33 non-related foster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urvey Study: The parenting capabilities of foste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ere a little lower than those of foster parents of younger children. Foster parents said that caring for infants is physically demanding where caring for older children is financially demanding. They go through more economic burden as their children gets older.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djustment to foster care, of which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is the children's age at the time of entering foster care.

Second, they answered 'characteristics of foster children and foster families' as the most necessary contents for preliminary education, and 'how to raise children' as the most necessary content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for foster parents. The adaptation of the foster children and the preparations of the foster families differ depending on the children's age at the time of entering foster care, so this should be reflected in educational contents.

Third, most foster parents said that they need the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ves for their children.

2) Developing Parenting Guide books: Parenting guides are theoretically based on 'positive discipline' and 'strengths perspective'. Under the title of "Parenting Guide Empowering Foster Parents", the parenting guide books contain the initial period (spring) – adaptation period (summer and fall) – final period (winter) by comparing the process of the foster care to four seas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plans to strengthen the parenting capabilities of foster families, the ways to improve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foster care,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foster care system were proposed.

First, as a way to strengthen foster family's parenting capabilities, it is suggested to enhance foster parents' psychological health,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taking their situation into account, to develop the content system of parent education, to activate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self-help groups, to support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o use parenting guide book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he foster family support system,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for foster children through childcare support, to expand psychotherapy for foster children, to prepare various support programs to meet handicapped children's needs, to cooperate between organizations for foster children to return to their original families, to keep long-term/ short-term foster care separate and dualize the policies, to change the termination process of foster care placement,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ster families, to provide coherent administrative support, to secure a stable budget,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foster care, and promote foster care system.

Third,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definition and qualifications of foster parents, legislate the programs for training foster parents, improve the systems for caring long-term foster children, work out the details for the visitation right, and strengthen the guardianship of foster parents.

Keyword: Foster family, Parenting-Capabilities, Foster parent handbook (parenting guide book), Children



부록 1.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영유아기/초등학령기 이상)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 영유아기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위탁가정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응답하신 후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답례품(모바일 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일반적 특성

선문1.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위탁아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 ① 위탁부

☐ ② 위탁모

선문2. 위탁아동의 연령은 해당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어린 위탁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영아(36개월 미만)

☐ ② 유아(36개월 이상)

선문3. 귀하와 위탁아동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조부모 ☐ ② 친인척 () ☐ ③ 비혈연

선문4. 귀하와 귀하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 주세요.

구분	위탁부	위탁모
1.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 (※ 결혼상태에서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으로 응답한 경우 이하 배우자쪽 2~5번 응답은 응답하지 않음)	
2.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3.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4. 취업상태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5. 종교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세후(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7. 위탁 유형	① 전문가정위탁 ② 일반가정위탁 ③ 일시가정위탁 (친인척, 조부모 포함)	
8. 위탁경험 횟수/기간	총 _____회 / 총 _____년 동안	
9. 현재 자녀 수	총 _____명 (위탁아동 _____명, 친자녀 _____명) ※ 친자녀의 경우, 성인자녀도 포함	
10. 가구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 _____명	
10-1. 가구 구성 (모두 선택)	① 위탁부 ② 위탁모 ③ 위탁아동 ④ 친자녀 ⑤ 친인척 () ⑥ 기타 ()	

선문5. 여러분의 자녀(위탁아동, 친자녀 포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형제 순위	성별	출생년도	위탁여부 (위탁시작년도)	장애/ 경계선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1	☐ 남 ☐ 여	_____년	☐ 위탁 (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_____
2	☐ 남 ☐ 여	_____년	☐ 위탁 (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_____

형제 순위	성별	출생년도	위탁여부 (위탁시작년도)	장애/ 경계선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3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기타:
4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기타:
5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기타:

위탁부모(주양육자) 특성

문1.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1) 전반적으로 나는...	①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② 불행하다	③ 불행한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행복한 편이다	⑥ 행복하다	⑦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불행하다	③ 불행한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행복한 편이다	⑥ 행복하다	⑦ 매우 행복하다

문2.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3.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1주 동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간)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간)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6)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4. 귀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①	②	③	④
2)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①	②	③	④
3)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의 도움	①	②	③	④
4) 자녀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문5.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①	②	③	④	⑤

위탁아동 특성

◇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문1.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는 나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 아이는 나와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아이와 나는 서로 눈 맞춤을 한다.	①	②	③	④
4) 아이와 나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①	②	③	④

문2. 현재 ○○의 발달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항	느린 편임	보통	빠른 편임	모르겠음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3) 인지발달(기억, 학습, 지능발달 등)	①	②	③	④
4) 사회·정서발달(애착, 정서표현·조절, 대인관계 등)	①	②	③	④

문3. ○○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①	②	③	④	⑤

문4. ○○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문5. 위탁보호 이후 지금까지 ○○가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2)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3) 주양육자와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①	②	③	④

문6. ○○을 양육하게 된 이후부터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3개월 미만 ☐ ② 3~6개월 미만
☐ ③ 6~12개월 미만 ☐ ④ 1년 이상
☐ ⑤ 아직 적응 중

문7. ○○이 귀하의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

- ☐ ① 부모의 별거/가출 ☐ ② 부모의 이혼
☐ ③ 부나 모의 사망 ☐ ④ 부모 모두 사망
☐ ⑤ 부모 수감 ☐ ⑥ 부모 실직/빈곤
☐ ⑦ 부모 질병 ☐ ⑧ 부모의 학대/방임
☐ ⑨ 미혼모·부/혼외출생 ☐ ⑩ 부모 장애
☐ ⑪ 시설 의뢰 ☐ ⑫ 기타 _____
☐ ⑬ 모름

문8. 귀하의 가정에서 ○○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는 어떠한가요?

- ☐ ① 위탁가정이 되려고 자원하여서
☐ ② ○○의 사정을 알고 자원하여서
☐ ③ 준비되지 않았으나 혈연관계인 ○○의 사정에 의해서
☐ ④ ○○와 함께 살다가 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됨.
☐ ⑤ 기타 _____

양육 특성

◇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다음 문항을 읽고 ○○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에게 “너는 소중하다. 특별하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의 입장에서 그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며,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바빠도 ○○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고 ○○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 나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장난감이 ○○의 연령에 적절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공놀이, 계단 오르기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의 일반적인 식단과 식사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의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의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지역사회에서 나와 ○○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사람들(예: 또래 아이 부모들,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치료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는 관찰은 모델 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 아이의 짜증, 아이와 규칙변경 등)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부모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잘 안되리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 기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은 자녀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입니다. 현재 ○○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
담은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 스럽지 않다	부담 스럽다	매우 부담 스럽다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지인·이웃과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	①	②	③	④

문3. 다음은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을 양육하면서
어떠하셨는지(혹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위탁가정 응답	1) ○○의 문제행동이 위탁 때문인 것 같아 걱정이 됨	①	②	③	④
	2) ○○와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미안함, 어색함 등)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인척, 비혈연 위탁가정만 응답 (조부모 제외)	3) ○○와 ○○의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4) 위탁보호 종료 후 ○○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5)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①	②	③	④
	6) 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7)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①	②	③	④
	8) ○○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①	②	③	④
	9) 가족들이 ○○와 가까워지지 못함	①	②	③	④
	10) ○○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11) 친자녀와 ○○을 (역)차별하게 됨	①	②	③	④
	12) ○○을 신경 쓰느라 친자녀에게 미안함	①	②	③	④
	13) 친자녀와 ○○이 사이가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14)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①	②	③	④
	15) (○○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①	②	③	④
	16) (○○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위탁사실로 뻘뻘해질까봐 두려움	①	②	③	④

문3-1. 위의 어려움 중에서 경험했던(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1)~16) 중에 하나의 보기를 골라주세요)

가장 큰 어려움 ()

문3-2. 위의 어려움 이외에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문3-3. 위탁아동을 양육하며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입니까?

--

문4.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 ② 위탁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 ③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 ④ 위탁아동의 기관(학교) 적응, 또래 관계 등 지원
- ⑤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⑥ 기타 (_____)

문5. ○○의 양육은 주로 누가 맡고 있습니까? 또한 주양육자와 함께 양육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양육자: _____ 양육 도와주는 사람: _____

- ① 위탁모 ② 위탁부 ③ 위탁아동의 순위 형제자매
- ④ 위탁부모의 친자녀 ⑤ 친인척 ⑥ 기타(_____)
- ⑦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없음

문6. 주중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귀하께서 ○○과 함께 지낸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나요?

※ 방학이 아닌 학기 중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

최근 평일(하루)	_____ 시간 _____ 분
최근 주말(하루)	_____ 시간 _____ 분

문7. ○○이 하루 중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나요?

평일	_____ 시간 _____ 분
주말	_____ 시간 _____ 분

가족관계

문1.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 간에 상의나 질문 없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도, 가족 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 위탁부모가 한부모인 경우, 4) 문항은 응답하지 않음.

문2. 귀하는 현재 ○○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 ② 근황은 알지만 연락은 하지 않음.
☐ ③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문3. ○○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 ② 근황은 알지만 연락은 하지 않음.
☐ ③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 ④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문3-1. (3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간 ○○이 친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있습니까?

- ☐ ① 연락만 주고받음 ☐ ② 실제 만남 ☐ ③ 위탁부모를 통해 정보만 들음

정책 관련

문1. 가장 최근에 참여한 위탁부모교육의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위탁부모교육’이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예비위탁부모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 ☐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 ☐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 ☐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 ☐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 ☐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 ☐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관계 등)
- ☐ ⑦ 위탁아동 친부모(원가정)와의 관계
- ☐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 ☐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 ☐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 ☐ ⑪ 기타 _____

문1-1. 위의 부모교육은 실제 자녀양육 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대체로 도움이 안됨 ③ 대체로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문2. 예비위탁부모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예비교육: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문2-2. 보수교육: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 ☐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 ☐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 ☐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 ☐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 ☐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등)

- ☐ ⑦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
- ☐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 ☐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 ☐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 ☐ ⑪ 기타 _____

문3.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짧다 ☐ ② 적정하다 ☐ ③ 길다

문4.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육아관련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 ☐ ① 집안 어른이나 형제자매(친인척)
- ☐ ② 친구, 동료, 이웃 등 가까운 지인
- ☐ ③ 육아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 ☐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 ☐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 ⑥ 주변 위탁가정, 자조모임
- ☐ ⑦ 기타 _____

문5.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관련 지원 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의 위탁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각 질문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양육보조금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문아동 보호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일시위탁 보호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아동용품 구입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자립수당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기타 지원 ()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 지원정책 용어 설명

사업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지방이양)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만원 이상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일시위탁보호비(지방이양)	- 일시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으로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최초 1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교통비 월2만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아동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지급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자립수당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원칙/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문7.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행사나 자조모임(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해당 활동은 위탁아동과의 생활이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문항	경험 여부	도움이 된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에서의 활동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2)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3)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4) 위탁아동 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5) 위탁부모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6) 위탁아동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7) 캠프, 공연, 야유회 등 위탁가정 대상 행사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8) 기타()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문8. 귀하는 현재 ○○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까?

☐ ① 법정대리인임. ☐ ② 현재 준비 중임. ☐ ③ 해당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위탁아동)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위탁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에 해당함.

문8-1. (①에 응답한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 준비기간 포함)

()개월

문8-2. (③에 응답한 경우) 법정대리인 권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필요하다고 생각함. ☐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문9.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법정대리인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 답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①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 ②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
☐ ③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 ④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⑤ 기타 _____

문10. 지금까지 위탁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 ②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음
☐ ③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 ④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시작하였음
☐ ⑤ 기타 _____

※ 응답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3만원) 지급을 위해 응답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여 주세요	
1) 응답자 이름	
2) 응답자 휴대전화 번호	010 - ()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① 위탁부

선문2. 위탁아동의 연령은 해당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위탁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 ① 초등학생

선문3. 귀하와 위탁아동은 어떤 관계입니까?

- ☐ ① 조부모 ☐ ② 친인척 () ☐ ③ 비혈연

선문4. 귀하와 귀하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 주세요.

구분	위탁부	위탁모
1.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 (※ 결혼상태에서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으로 응답한 경우 이하 배우자쪽 2~5번 응답은 응답하지 않음)	
2.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3.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4. 취업상태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5. 종교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세후(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7. 위탁 유형	① 전문가정위탁 ② 일반가정위탁 ③ 일시가정위탁 (친인척, 조부모 포함)	
8. 위탁경험 횟수/기간	총 _____회 / 총 _____년 동안	
9. 현재 자녀 수	총 _____명 (위탁아동 _____명, 친자녀 _____명) ※ 친자녀의 경우, 성인자녀도 포함	
10. 가구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 _____명	
10-1. 가구 구성 (모두 선택)	① 위탁부 ② 위탁모 ③ 위탁아동 ④ 친자녀 ⑤ 친인척 (_____) ⑥ 기타 (_____)	

선문5. 여러분의 자녀(위탁아동, 친자녀 포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형제 순위	성별	출생년도	위탁여부 (위탁시작년도)	장애/경계선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1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_____
2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_____
3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_____

형제 순위	성별	출생년도	위탁여부 (위탁시작년도)	장애/경계선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4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기타:
5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기타:

위탁부모(주양육자) 특성

문1.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1) 전반적으로 나는...	①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② 불행하다	③ 불행한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행복한 편이다	⑥ 행복하다	⑦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불행하다	③ 불행한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행복한 편이다	⑥ 행복하다	⑦ 매우 행복하다

문2.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3.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1주 동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간)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간)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6)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4. 귀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①	②	③	④
2)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①	②	③	④
3)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의 도움	①	②	③	④
4) 자녀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문5.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①	②	③	④	⑤

위탁아동 특성

◇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문1. 현재 ○○의 발달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항	느린 편임	보통	빠른 편임	모르겠음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3) 인지발달(기억, 학습, 지능발달 등)	①	②	③	④
4) 사회·정서발달(정서표현·조절, 대인관계 등)	①	②	③	④

문2. ○○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①	②	③	④	⑤

문3. ○○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문4. 위탁보호 이후 지금까지 ○○가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2)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공부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문5. ○○을 양육하게 된 이후부터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3개월 미만 ☐ ② 3~6개월 미만
☐ ③ 6~12개월 미만 ☐ ④ 1년 이상
☐ ⑤ 아직 적응 중

문6. ○○이 귀하의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

- ☐ ① 부모의 별거/가출 ☐ ② 부모의 이혼
☐ ③ 부나 모의 사망 ☐ ④ 부모 모두 사망
☐ ⑤ 부모 수감 ☐ ⑥ 부모 실직/빈곤
☐ ⑦ 부모 질병 ☐ ⑧ 부모의 학대/방임
☐ ⑨ 미혼모·부/혼외출생 ☐ ⑩ 부모 장애
☐ ⑪ 시설 의뢰 ☐ ⑫ 기타 _____
☐ ⑬ 모름

문7. 귀하의 가정에서 ○○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는 어떠합니까?

- ☐ ① 위탁가정이 되려고 자원하여서
☐ ② ○○의 사정을 알고 자원하여서
☐ ③ 준비되지 않았으나 혈연관계인 ○○의 사정에 의해서
☐ ④ ○○와 함께 살다가 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됨.
☐ ⑤ 기타 _____

양육 특성

◇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가정에 위탁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문1. 다음 문항을 읽고 ○○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에게 “너는 소중하다. 특별하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의 입장에서 그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며,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바빠도 ○○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고 ○○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 나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에게 맞는 진로와 소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의 바른 성장을 위해 어떤 교육적, 물질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의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역사회에서 나와 ○○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사람들(예: 또래 아이 부모들, 학원, 심리치료실 등)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는 괜찮은 모델 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부모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잘 안되리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 기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 ○○와 대화 시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생각을 거리낌 없이 ○○와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 나에게 하는 말을 믿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는 항상 내 말에 귀담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에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가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와 대화를 하면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에게 아무 말도 못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에게 모두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와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마음 놓고 ○○에게 애정을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와 대화를 나눌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질문에 대해 ○○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는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속을 썩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는 나 때문에 화가 나면, 나에게 창피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기분을 ○○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에게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자녀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입니다. 현재 ○○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 스럽지 않다	부담 스럽다	매우 부담 스럽다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지인·이웃과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문4-3. 위탁아동을 양육하며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입니까?

--

문5.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 ② 위탁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③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④ 위탁아동의 기관(학교) 적응, 또래 관계 등 지원
⑤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⑥ 기타 ()

문6. 위탁아동의 양육은 주로 누가 맡고 있습니까? 또한 주양육자와 함께 양육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양육자: _____ 양육 도와주는 사람: _____

- ① 위탁모 ② 위탁부 ③ 위탁아동의 손위 형제자매
④ 위탁부모의 친자녀 ⑤ 친인척 ⑥ 기타()
⑦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없음

문7. 주중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귀하께서 ○○과 함께 지낸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나요?

※ 방학이 아닌 학기 중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

최근 평일(하루)	_____ 시간 _____ 분
최근 주말(하루)	_____ 시간 _____ 분

문8. ○○이 하루 중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나요?

평일	_____ 시간 _____ 분
주말	_____ 시간 _____ 분

가족관계

문1.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 간에 상의나 질문 없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도, 가족 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 위탁부모가 한부모인 경우, 4) 문항은 응답하지 않음.

문2. 위탁부모님은 현재 ○○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 ② 근황은 알지만 연락은 하지 않음.
☐ ③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문3. ○○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 ② 근황은 알지만 연락은 하지 않음.
☐ ③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 ④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문3-1. (3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간 ○○이 친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있습니까?

- ☐ ① 연락만 주고받음 ☐ ② 실제 만남 ☐ ③ 위탁부모를 통해 정보만 들음

정책 관련

문1. 가장 최근에 참여한 위탁부모교육의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위탁부모교육’이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예비위탁부모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 ☐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 ☐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 ☐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 ☐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 ☐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 ☐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관계 등)
- ☐ ⑦ 위탁아동 친부모(원가정)와의 관계
- ☐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 ☐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 ☐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 ☐ ⑪ 기타 _____

문1-1. 위의 부모교육은 실제 자녀양육 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대체로 도움이 안됨 ③ 대체로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문2. 예비위탁부모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예비교육: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문2-2. 보수교육: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①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 ☐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 ☐ ③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양육기술)
- ☐ ④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 ☐ 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초기 적응
- ☐ ⑥ 가족관계(위탁부모-위탁아동, 위탁아동-자녀들 등)

- ☐ ⑦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
- ☐ ⑧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및 학습지도 방법
- ☐ ⑨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 ☐ ⑩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 ☐ ⑪ 기타 _____

문3.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짧다 ☐ ② 적절하다 ☐ ③ 길다

문4.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육아관련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습니까?

- ☐ ① 집안 어른이나 형제자매(친인척)
- ☐ ② 친구, 동료, 이웃 등 가까운 지인
- ☐ ③ 육아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 ☐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 ☐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 ⑥ 주변 위탁가정, 자조모임
- ☐ ⑦ 기타 _____

문5.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관련 지원 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의 위탁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각 질문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양육보조금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문아동 보호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일시위탁 보호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아동용품 구입비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가정위탁아동 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자립수당	① 알고 있음 →2)번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모름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구분	1) 인지 여부	2) 제도의 필요성				3) 지원 받은 경험	4)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기타 지원 ()		①	②	③	④	① 경험있음→4)번	①	②	③	④
						② 경험없음				
						☐ 지원대상 아님				

※ 지원정책 용어 설명

사업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지방이양)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만원 이상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일시위탁보호비(지방이양)	- 일시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으로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최초 1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교통비 월2만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아동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지급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자립수당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원칙/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문7.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행사나 자조모임(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해당 활동은 위탁아동과의 생활이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문항	경험 여부	도움이 된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에서의 활동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2)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3)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4) 위탁아동 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5) 위탁부모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6) 위탁아동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7) 캠프, 공연, 야유회 등 위탁가정 대상 행사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8) 기타()	① 경험 있음	①	②	③	④
	② 경험 없음				

문8. 귀하는 현재 ○○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까?

☐ ① 법정대리인임. ☐ ② 현재 준비 중임. ☐ ③ 해당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위탁아동)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위탁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에 해당함.

문8-1. (①에 응답한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 준비기간 포함)
()개월

문8-2. (③에 응답한 경우) 법정대리인 권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필요하다고 생각함. ☐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문9.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법정대리인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 답해주시요.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①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 ②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
☐ ③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 ④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⑤ 기타 _____

문10. 지금까지 위탁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 ②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음
☐ ③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 ④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음
☐ ⑤ 기타 _____

※ 응답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3만원) 지급을 위해 응답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여 주세요	
1) 응답자 이름	
2) 응답자 휴대전화 번호	010 - ()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추가 표

〈부록 표 1〉 위탁부모-아동 관계별 위탁유형 및 위탁보호 사유 비율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수)
전체	20.1	14.1	65.7	100.0(283)
위탁유형				
전문가정위탁	0.0	0.0	100.0	100.0(70)
일반가정위탁	27.5	19.3	53.1	100.0(207)
일시가정위탁	0.0	0.0	100.0	100.0(6)
위탁보호 사유				
자원	3.5	2.3	94.2	100.0(172)
혈연관계/동거 후 지원	45.9	32.4	21.6	100.0(111)

〈부록 표 2〉 위탁가정 자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자원경험 및 만족도: 1) 양육보조금 자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여부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98.2	3.79	(273)	97.5	3.15	(265)
위탁아동 연령						
영아	98.2	3.73	(56)	100.0	3.23	(56)
유아	100.0	3.79	(73)	94.6	3.12	(69)
초등학생	97.5	3.84	(74)	97.3	3.01	(72)
중·고등	97.2	3.79	(70)	98.6	3.26	(68)
$\chi^2(df)/F$	2.04(3)	0.55		6.16(6)	1.47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98.2	3.84	(55)	100.0	3.34 _a	(56)
친인척	100.0	3.80	(40)	100.0	3.59 _a	(39)
비혈연	97.8	3.78	(178)	96.1	2.99 _b	(170)
$\chi^2(df)/F$	1.57(2)	0.37		6.03(4)	12.3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8.4	3.83	(63)	100.0	3.32	(63)
200~400만원 미만	100.0	3.78	(93)	96.7	3.16	(89)
400~600만원 미만	97.6	3.82	(78)	95.1	3.06	(77)
600만원 이상	95.1	3.69	(39)	100.0	3.03	(36)
$\chi^2(df)/F$	5.04(3)	0.80		7.00(6)	1.57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3〉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2) 전문아동 보호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58.8	3.67	(160)	66.9	3.15	(97)
위탁아동 연령						
영아	76.8	3.65	(43)	78.0	3.31	(32)
유아	53.3	3.62	(39)	68.6	2.96	(24)
초등학생	59.2	3.84	(43)	61.5	3.00	(24)
중·고등	50.0	3.54	(35)	56.7	3.35	(17)
$\chi^2(df)/F$	10.71(3)*	2.27		4.66(6)	1.5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5.7	3.53	(19)	60.0	3.25	(12)
친인척	30.0	3.58	(12)	54.5	3.33	(6)
비혈연	72.1	3.70	(129)	69.3	3.13	(79)
$\chi^2(df)/F$	39.69(2)***	1.02		3.09(4)	0.2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3.3	3.62	(21)	66.7	3.08	(12)
200~400만원 미만	65.2	3.61	(59)	60.7	3.03	(34)
400~600만원 미만	66.7	3.77	(53)	71.4	3.29	(35)
600만원 이상	67.5	3.63	(27)	72.7	3.19	(16)
$\chi^2(df)/F$	21.66(3)***	1.02		4.02(6)	0.6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록 표 4〉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3) 일시위탁 보호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47.3	3.66	(128)	52.2	2.98	(61)
위탁아동 연령						
영아	64.3	3.64	(36)	55.2	3.25	(16)
유아	40.5	3.61	(28)	53.6	2.88	(16)
초등학생	50.0	3.81	(36)	50.0	2.81	(16)
중·고등	38.0	3.57	(28)	50.0	3.00	(13)
$\chi^2(df)/F$	10.51(3)*	1.25		2.14(6)	0.8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0.4	3.41	(17)	41.2	3.29	(7)
친인척	27.5	3.64	(11)	60.0	3.33	(6)
비혈연	56.9	3.71	(100)	53.4	2.90	(48)
$\chi^2(df)/F$	19.93(2)***	2.31		5.56(4)	1.2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4	3.41	(17)	40.0	3.17	(6)
200~400만원 미만	56.7	3.65	(51)	51.1	3.13	(24)
400~600만원 미만	50.6	3.74	(39)	62.2	2.92	(24)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자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600만원 이상	53.8	3.76	(21)	43.8	2.57	(7)
$\chi^2(df)/F$	16.97(3)***	1.82		13.94(6)*	2.25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록 표 5〉 위탁가정 자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자원경험 및 만족도: 4) 아동용품 구입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자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65.7	3.76	(181)	87.0	3.24	(154)
위탁아동 연령						
영아	78.9	3.80	(45)	95.6	3.30	(43)
유아	56.0	3.80	(40)	85.4	3.23	(35)
초등학생	70.1	3.75	(53)	80.0	3.13	(40)
중·고등	60.6	3.70	(43)	87.8	3.31	(36)
$\chi^2(df)/F$	9.07(3)*	0.47		9.00(6)	0.44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4.6	3.72	(25)	84.0	3.62 _a	(21)
친인척	45.0	3.67	(18)	83.3	3.47 _a	(15)
비혈연	76.6	3.78	(138)	88.1	3.14 _a	(118)
$\chi^2(df)/F$	27.91(2)***	0.62		1.27(4)	3.95 ^c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0	3.69	(29)	89.7	3.54	(26)
200~400만원 미만	72.5	3.76	(66)	81.5	3.21	(53)
400~600만원 미만	71.8	3.78	(58)	89.7	3.25	(52)
600만원 이상	68.3	3.82	(28)	92.0	2.96	(23)
$\chi^2(df)/F$	13.70(3)**	1.28		4.09(6)	2.25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6〉 위탁가정 자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자원경험 및 만족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자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자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98.6	3.80	(273)	96.0	3.21	(258)
위탁아동 연령						
영아	98.2	3.71	(56)	92.9	3.31	(52)
유아	97.3	3.84	(70)	98.6	3.22	(67)
초등학생	98.7	3.79	(76)	93.5	3.00	(70)
중·고등	100.0	3.83	(71)	98.6	3.32	(69)
$\chi^2(df)/F$	1.92(3)	0.85		6.03(6)	2.10	
위탁아동 관계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조부모	98.2	3.85	(55)	96.4	3.34 _{ab}	(53)
친인척	97.5	3.74	(39)	92.1	3.65 _a	(34)
비혈연	98.9	3.79	(179)	96.6	3.08 _b	(171)
$\chi^2(df)/F$	0.48(2)	0.61		4.37(4)	7.76 ^{***}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0.0	3.88	(64)	98.4	3.32	(62)
200~400만원 미만	97.8	3.73	(90)	95.5	3.20	(84)
400~600만원 미만	97.6	3.83	(78)	93.9	3.13	(75)
600만원 이상	100.0	3.76	(41)	97.4	3.16	(37)
$\chi^2(df)/F$	3.77(3)	1.28		5.50(6)	0.61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7〉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88.3	3.73	(241)	57.1	3.23	(136)
위탁아동 연령						
영아	91.2	3.73	(52)	56.9	3.21	(29)
유아	86.7	3.69	(62)	52.5	3.16	(32)
초등학생	89.7	3.73	(66)	61.5	3.25	(40)
중·고등	86.1	3.77	(61)	57.4	3.29	(35)
$\chi^2(df)/F$	1.16(3)	0.21		3.17(6)	0.17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0.2	3.77	(39)	59.0	3.48	(23)
친인척	87.5	3.63	(35)	44.1	3.40	(15)
비혈연	94.1	3.74	(167)	59.4	3.14	(98)
$\chi^2(df)/F$	20.54(2) ^{***}	0.77		4.42(4)	2.2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3	3.75	(44)	56.8	3.36	(25)
200~400만원 미만	91.3	3.69	(83)	59.8	3.33	(49)
400~600만원 미만	95.3	3.77	(75)	57.9	3.14	(44)
600만원 이상	95.1	3.72	(39)	50.0	3.00	(18)
$\chi^2(df)/F$	23.12(3) ^{***}	0.36		2.82(6)	1.25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8〉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7)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85.9	3.71	(236)	56.7	3.27	(131)
위탁아동 연령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영아	93.0	3.70	(53)	27.5	3.29	(14)
유아	85.3	3.70	(61)	57.4	3.26	(34)
초등학생	89.9	3.81	(67)	67.6	3.17	(46)
중·고등	76.4	3.62	(55)	69.8	3.41	(37)
$\chi^2(df)/F$	8.77(3)*	1.21		25.83(6)***	0.58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5.4	3.71	(42)	42.9	3.44	(18)
친인척	75.0	3.63	(30)	60.7	3.59	(17)
비혈연	91.4	3.73	(164)	59.5	3.19	(96)
$\chi^2(df)/F$	12.96(2)**	0.36		6.87(4)	2.3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1.9	3.67	(46)	50.0	3.32	(22)
200~400만원 미만	86.0	3.70	(79)	60.3	3.38	(47)
400~600만원 미만	94.1	3.77	(74)	57.9	3.16	(43)
600만원 이상	90.2	3.68	(37)	54.3	3.21	(19)
$\chi^2(df)/F$	15.04(3)**	0.43		8.19(6)	0.4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9〉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8)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84.4	3.82	(232)	29.7	3.13	(63)
위탁아동 연령						
영아	86.0	3.76	(49)	14.0	3.17	(6)
유아	82.7	3.85	(60)	33.9	3.16	(19)
초등학생	84.6	3.89	(62)	36.4	2.85	(20)
중·고등	84.7	3.79	(61)	31.0	3.39	(18)
$\chi^2(df)/F$	0.29(3)	0.93		11.97(6)	1.1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7.2	3.83	(42)	26.2	3.36	(11)
친인척	80.0	3.78	(32)	24.1	3.29	(7)
비혈연	87.6	3.83	(158)	31.9	3.04	(45)
$\chi^2(df)/F$	4.07(2)	0.15		5.85(4)	0.6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3	3.80	(44)	29.3	3.25	(12)
200~400만원 미만	91.3	3.83	(83)	29.9	3.30	(23)
400~600만원 미만	84.7	3.87	(68)	34.9	2.91	(22)
600만원 이상	90.2	3.76	(37)	19.4	3.00	(6)
$\chi^2(df)/F$	13.08(3)**	0.52		6.60(6)	0.8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부록 표 10〉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9)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자금 등 지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79.2	3.83	(217)	22.5	3.29	(45)
위탁아동 연령						
영아	84.2	3.75	(48)	7.1	3.33	(3)
유아	73.3	3.83	(53)	26.0	3.46	(13)
초등학생	82.3	3.90	(61)	29.1	2.88	(16)
중·고등	77.8	3.82	(55)	24.5	3.62	(13)
$\chi^2(df)/F$	2.97(3)	0.93		18.09(6)**	2.15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8.9	3.80	(44)	16.3	3.71	(7)
친인척	75.0	3.83	(29)	17.9	3.40	(5)
비혈연	80.1	3.84	(144)	25.6	3.18	(33)
$\chi^2(df)/F$	0.50(2)	0.15		6.24(4)	1.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1.9	3.82	(44)	19.0	3.38	(8)
200~400만원 미만	84.9	3.87	(78)	23.0	3.53	(17)
400~600만원 미만	76.5	3.87	(61)	29.6	3.13	(16)
600만원 이상	82.9	3.68	(34)	13.3	2.75	(4)
$\chi^2(df)/F$	4.68(3)	1.54		10.95(6)	1.1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부록 표 11〉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0)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지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74.8	3.70	(205)	27.5	3.13	(52)
위탁아동 연령						
영아	77.2	3.61	(44)	15.0	3.00	(6)
유아	73.3	3.77	(53)	31.3	3.27	(15)
초등학생	75.6	3.68	(56)	28.3	2.80	(15)
중·고등	73.6	3.71	(52)	33.3	3.38	(16)
$\chi^2(df)/F$	0.34(3)	0.60		8.19(6)	1.1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64.9	3.75	(36)	33.3	3.42	(12)
친인척	80.0	3.74	(31)	31.0	3.44	(9)
비혈연	76.8	3.67	(138)	25.0	2.94	(31)
$\chi^2(df)/F$	3.73(2)	0.33		1.51(4)	1.8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3	3.77	(43)	29.3	3.17	(12)
200~400만원 미만	77.2	3.67	(70)	27.7	3.22	(18)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자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400~600만원 미만	71.8	3.76	(59)	29.6	3.13	(16)
600만원 이상	82.9	3.55	(33)	20.7	2.83	(6)
$\chi^2(df)/F$	2.91(3)	1.18		6.35(6)	0.2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록 표 12〉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자원경험 및 만족도: 11) 자립수당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필요성 4점 평균	(수)	자원경험	만족도 4점 평균	(수)
전체	75.6	3.81	(206)	23.8	3.07	(45)
위탁아동 연령						
영아	82.5	3.77	(47)	7.3	3.00	(3)
유아	70.7	3.90	(51)	25.0	2.92	(12)
초등학생	77.2	3.78	(55)	32.0	3.13	(16)
중·고등	73.6	3.77	(53)	28.0	3.14	(14)
$\chi^2(df)/F$	2.71(3)	0.77		14.12(6)*	0.11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68.4	3.79	(38)	18.9	3.71	(7)
친인척	67.5	3.78	(27)	20.8	3.40	(5)
비혈연	79.6	3.82	(141)	25.8	2.88	(33)
$\chi^2(df)/F$	4.49(2)	0.08		4.96(4)	2.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9	3.87	(38)	20.6	3.29	(7)
200~400만원 미만	80.6	3.81	(73)	22.2	3.13	(16)
400~600만원 미만	76.5	3.80	(61)	32.7	3.00	(18)
600만원 이상	85.4	3.74	(34)	14.3	2.75	(4)
$\chi^2(df)/F$	10.47(3)*	0.38		9.30(6)	0.2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록 표 13〉 위탁부모 대상 모의 행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1) 인터넷사이트 (카페 등에서의 활동)		2)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3)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4) 위탁아동 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5) 위탁부모 상담·심리치료프로그램		6) 위탁아동 상담·심리치료프로그램		7) 캠프, 공연, 야유회 등 위탁가정 대상 행사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전체	26.7	3.13	(76)	45.2	3.40	(126)	35.7	3.45	(99)	25.8	3.41	(73)	41.7	3.44	(117)	52.5	3.51	(146)
위탁아동 연령																		
영아	36.8	3.29	(21)	38.6	3.50	(22)	19.3	3.64	(11)	14.0	3.50	(8)	17.5	3.40	(10)	35.7	3.45	(20)
유아	24.0	3.11	(18)	36.0	3.33	(27)	33.3	3.29	(24)	26.7	3.60	(20)	34.7	3.40	(25)	46.7	3.50	(34)
초등학생	23.1	3.17	(18)	57.0	3.51	(43)	43.0	3.45	(33)	30.4	3.46	(24)	60.8	3.48	(48)	68.4	3.62	(53)
중·고등	25.4	2.95	(19)	47.2	3.26	(34)	56.9	3.39	(41)	29.2	3.14	(21)	47.2	3.44	(34)	54.2	3.38	(39)
$\chi^2(df)/F$	3.87 (3)	0.71		8.10 (3)	1.42		10.42 (3)	0.90		5.44 (3)	1.37		27.92 (3)	0.10		15.39 (3)	1.31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4.0	2.88	(8)	19.3	3.36	(11)	31.6	3.33	(18)	26.3	3.33	(15)	33.3	3.53	(19)	43.9	3.28	(25)
친인척	7.5	2.33	(3)	10.0	2.75	(4)	22.5	3.11	(9)	25.0	3.60	(10)	32.5	3.38	(13)	20.0	3.63	(8)
비혈연	34.8	3.20	(65)	60.8	3.43	(111)	39.8	3.53	(72)	25.8	3.40	(48)	46.2	3.44	(85)	62.2	3.55	(113)
$\chi^2(df)/F$	20.74 (2)	2.64		58.63 (2)	2.63		5.03 (2)	2.12		0.02 (2)	0.39		4.67 (2)	0.22		26.64 (2)	2.33	
위탁기간																		
1년~2년 미만	25.0	3.44	(16)	26.6	3.41	(17)	17.2	3.73 _a	(11)	14.1	3.44	(9)	25.0	3.67	(15)	32.8	3.50	(20)
2년~4년 미만	24.2	3.00	(15)	38.7	3.29	(24)	25.8	3.33 _{ab}	(15)	24.2	3.40	(15)	29.0	3.33	(18)	31.1	3.58	(19)
4년~10년 미만	25.7	2.95	(20)	51.4	3.46	(37)	39.2	3.14 _b	(29)	29.7	3.41	(22)	52.7	3.38	(39)	67.6	3.48	(50)
10년 이상	30.9	3.16	(25)	59.0	3.42	(48)	54.2	3.64 _{ab}	(44)	32.5	3.41	(27)	54.2	3.47	(45)	69.9	3.51	(57)
$\chi^2(df)/F$	1.04 (3)	0.35		18.02 (3)	0.39		25.70 (3)	4.87 ^{**}		7.76 (3)	0.01		20.96 (3)	0.93		38.74 (3)	0.1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1	2.78	(9)	20.3	3.62	(13)	37.5	3.33	(24)	29.7	3.32	(19)	32.8	3.52	(21)	39.1	3.16 _b	(25)

단위: %, 점(명)

구분	1) 인터넷사이트 (카페 등에서의 활동)		2)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3)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4) 우탁이동 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		5) 우탁부모 상담·심리치료프로그램		6) 우탁이동 상담·심리치료프로그램		7) 캠프, 공연, 야유회 등 우탁기정 대상 행사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경험 여부	도움 평균 (수)							
200~400만원 미만	30.8	3.10	(29)	51.6	3.33	(48)	54.8	3.43	(51)	37.6	3.56	(34)	28.0	3.38	(26)	47.3	3.41	(44)	60.2	3.63 _a	(56)
400~600만원 미만	35.3	3.20	(30)	55.3	3.31	(45)	65.9	3.44	(55)	36.5	3.33	(30)	23.5	3.35	(20)	43.5	3.43	(37)	60.7	3.50 _{ab}	(50)
600만원 이상	19.5	3.38	(8)	48.8	3.65	(20)	51.2	3.62	(21)	26.8	3.73	(11)	19.5	3.88	(8)	39.0	3.47	(15)	39.0	3.67 _a	(15)
$\chi^2(df)/F$	10.88 (3)*	1.09		22.62 (3)***	2.35		9.68 (3)*	0.58		1.73 (3)	1.63		1.84 (3)	1.15		3.57 (3)	0.16		12.18 (3)**	4.2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우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도움 정도 평균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3. 위탁부모 면담 질문지

I. 위탁 결정과 준비(부모교육 등)

1. 위탁 동기 및 결정 과정은 어떠하셨습니까?
2. 위탁을 준비하면서 예비위탁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신 경험은 어떠하셨습니까?
 - 2-1. 예비위탁부모 대상 교육/상담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나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3. 위탁아동에 대해 미리 제공 받은 정보는 어떤 것이었고, 어떤 내용이 더 제공되면 도움이 될까요?

II. 위탁 후 자녀양육

1.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1-1. 위탁아동이 귀하의 가정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2. 위탁부모로서 위탁아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 1-3.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2. 위탁아동의 양육경험은 어떠하십니까?
 - 2-1.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2-2. 위탁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배우기 원하는 정보나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요?
 - 2-3. 위탁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정위탁 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

3-1. 가정 내 의사결정시 위탁아동으로 인해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3-2. 부부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3. 부모-친자녀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4-1. 친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교류하시나요?

4-2. 친부모에 대해 위탁아동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4-3. 위탁아동을 위해 친부모와 위탁부모가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위탁가정 양육 지원

1. 가정위탁으로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1-1.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2-1.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2-2. 위탁가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요.

■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부	모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2.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	
3.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4. 취업상태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5. 종교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7. 위탁 유형 / 위탁자녀와의 관계	① 일반가정위탁 ② 전문가정위탁 ③ 일시가정위탁	
8. 위탁경험 회수/기간	총 _____회 / 총 _____년 동안	
9. 자녀 수	총 _____명 (위탁자녀 _____명, 친자녀 _____명)	
10. 가구원 (모두 선택하세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 _____명	
	① 위탁부 ② 위탁모 ③ 위탁아동 ④ 친자녀 ⑤ 친인척 (_____) ⑥ 기타 (_____)	

■ 자녀 특성

형제 순위	성별	출생년도	위탁여부 (위탁시작년도)	장애/ 경계선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1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2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3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4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5	☐ 남 ☐ 여	_____년	☐ 위탁 (_____년부터) ☐ 친자녀	☐ 중증 ☐ 경증 ☐ 경계선지능 ☐ 해당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기타:

부록 4. 정책토론회 초청장



프로그램

사회 : 이정림 |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4:20~14:30	등록	
14:30~14:40	개회 및 인사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0~15:20	발표 1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운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장해림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15:20~16:10	종합토론	좌 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토 론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남궁제정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회장
16:10~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	폐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회의원 고민정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